

현안분석 2007-

비교법제 연구 07-09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Ⅲ)

- 영국 -

박 영 철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Ⅲ)

- 영국 -

A Study on Educational Legislations of EU(Ⅲ)

- United Kingdom -

연구자 : 박영철(용인송담대학 교수)
Park, Young Chul

2007. 10.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국문 요약

영국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통제’와 ‘자유’이라는 양측에서 국가의 발전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만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오면서 각종 제도를 완비하여 왔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엘리트층 중심으로 하층계급과 분리된 학문지향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문제점만 드러났을 뿐 모두 실패하였다. 1980년대 이후부터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개혁하기 위하여 수많은 정책들이 입안되고 법률이 제정·개정되었다. 그 결과 정부주도의 교육 및 훈련이 ‘시장의 원리’에 맡겨졌고, ‘중앙통제형 교육체제’를 채택하였으며,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영국의 교육법제는 3번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1944년의 교육법, 1988년의 교육개혁법, 1998년의 학교기준 및 구조법이 그것이다.

1944년의 ‘교육법’은 의무교육학령을 확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지방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탄생시켰다. 1988년의 ‘교육개혁법’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생간, 학교간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통제강화, 그리고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와 국가교육과정의 도입에 그 특징이 있다. 1998년의 ‘학교기준 및 구조법’은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기준을 증대하고, 교육활동영역을 설정하며, 학교감사제를 채택하였다.

키워드 : 교육법, 지방교육청, 계속교육, 학교감사제도, 국가교육과정, 교육개혁

Abstracts

In tradition education acts was primary concerned with the duties and powers of local education authorities and central government. The Education Act of 1944 established many aspects of English schools, for example, exte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age, free school fee, education services by local education authority, different types of schools and so on. Since 1980, the Government has legislated in the area of education on an unprecedented scale, to give effect to radical and far-reaching reforms. Those reform acts has been curtailed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domination. The Education Reform Act of 1988 was a major landmark in education reform. Of particular importance was the establishment of diversity within the schools,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 power in pupils and schools, and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curriculum. In 1997 schools White Paper, published shortly after the general election that returned Labour to power after 18 years, the new Government said it had placed education 'at the heart of government' and had ranked in its 'number one priority.' The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of 1998, founded on this White Paper, had as its central purpose the raising of standards of education for all pupils of school age. It also intended to adopt the school inspection system and to set up the area of school functions.

Key Words : Education Act, Local Education Authority, Further Education, School Inspection System, National Curriculum, Education Reform

목 차

국 문 요 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설	11
제 2 장 영국에서의 헌법개혁과 지방분권화	15
제 1 절 영국의 정치제도	15
제 2 절 헌법개혁과 지방분권	17
1. 헌법개혁의 주요 내용	17
2. 지방분권화	18
제 3 장 교육법제의 연혁	23
제 1 절 교육부분의 광범한 권한 이양	23
1. 교육제도의 다양성	23
2. 스코틀랜드의 교육제도	24
3. 북아일랜드의 교육제도	27
4.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교육제도	28
제 2 절 학교의 성장	29
제 3 절 1944년의 교육법	31
제 4 절 중등학교의 종합화	35
제 5 절 보수당정부 하의 교육법제의 발전(1979-1997)	38

1. 기본정책	38
2. 1988년의 교육개혁법	39
제 6 절 노동당정부 하의 교육법제의 발전(1997-2006)	46
1. 노동당정부의 과제	46
2. 1998년의 학교기준 및 구조법	49
제 7 절 2002년 교육법	59
1. 주요내용	59
2. 보육문제	62
제 8 절 2005년 교육법	64
1. 주요내용	64
2. 국가수석장학관	65
3. 학교 교육훈련 및 개발청	66
4. 학교출석의 강제	67
5. 재정지원	68
6. 재단설립학교	70
7. 2005년 교육법에 의한 학교 감사	72
제 9 절 2006년 교육 및 감사법	81
1. 주요내용	81
2. 위탁학교	83
3. 지방교육청	84
4. 학교의 설립	86
5. 재단설립학교 등	87
6. 학교입학	88
7. 학교통학 및 학교급식	89

제 4 장 영국의 교육법과 교육제도	91
제 1 절 학교시스템의 구조	91
1. 공립학교	91
2. 학생위탁단	93
3. 사립학교	94
4. 전문학교	94
5. 도시중등기술학교	94
제 2 절 학교의 교육과정과 기준	95
1. 학 제	95
2. 교육과정의 개관	97
제 3 절 학교감사	102
1. 국가수석장학관	102
2. 계속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감사	104
3. 지역감사	105
4. 잉글랜드 지방교육청에 대한 감사 및 심사	106
5. CAFCASS의 감사	107
제 4 절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	108
1. 계속교육	108
2. 고등교육	114
제 5 장 유럽연합과 교육정책	117
제 1 절 유럽연합조약	117
제 2 절 교육통합을 위한 소크라테스프로그램	119

1. 소크라테스 I 프로그램	119
2. 소크라테스 II 프로그램	121
제 3 절 고등교육	125
제 4 절 직업 및 평생 교육	126
1.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	126
2. 평생학습프로그램	130
제 5 절 유럽연합의 교육정책이 영국의 교육법제에 미친 영향...	137
제 6 장 종합정리 및 결론	139
참 고 문 헌	143

제 1 장 서 설

영국은 전통적으로 귀족정치를 기반으로 한 엘리트 중심의 하층계급과 분리된 학문지향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생산체제에 적합한 교육을 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교원의 질 및 교육제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을 뿐 모두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이러한 문제 상황을 개혁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입안되고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그 결과 정부 주도의 교육 및 훈련이 ‘시장의 원리’에 맡겨졌고, 교육기관의 능력에 따른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지방분권형 교육체제’를 ‘중앙통제형 교육체제’로 전환하였고, 각종 자격증과 수료증 제도를 도입하여 직업교육의 질을 개선하였으며, 평생학습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도록 장려하였다.

본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구별은 계급에 기초하고 있었다. 전자는 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읽고, 쓰며, 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학습을 목표로 한 반면에, 후자는 중간계급을 대상으로 보다 향상된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18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계중등학교(grammar school)가 설립되어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1904년 신교육과정이 도입되었지만 과학·기술이 아닌 인문과목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노동자계급도 대학에 입학하거나 전문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 서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18년 중등학교의 졸업연령이 12세에서 14세로 확대되면서 교육기회가 넓어졌고, 1922년 11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구분할 것이 제안되면서 중등교육의 3원체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의 확대를 목적으로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평등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1944년 교육법이 입안되었다. 이 법을 통하여 영국은 전후 교육제도의 새로운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중등교육의 3원체제가 확립되었고, 15-18세 사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이 실시되었으며, 의무교육학령이 15세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중앙통제형 교육체제의 부재로 인하여 그 개혁은 실패로 끝났고, '11+시험'에서 탈락한 학생을 사회낙오자로 양산한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교육에 대한 경시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자계급의 자녀들이 인문계중등학교의 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학교수준에서의 기술교육이 부적당하고, 11세에 평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당한 일이었다. 1960년대부터 '평등 및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등학교의 3원체제를 '종합(중등)학교화'하여야 한다는 많은 요구가 있었다. 1960년대 영국은 '교육의 민주화'를 목표로 아동중심의 교육, 지역중심의 교육행정체제의 확립 등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교육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통한 계급사회극복 및 학생의 자율적 성장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종 학교를 종합학교로 통합하고 계급적 편견을 지양하여 평등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배경에는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가정배경과 학연을 토대로 지도자 그룹의 양성소로 자리잡고, 인문계 중등학교가 11+시험에서 선발된 학생을 중심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형성해 가면서 평등사회의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1973년 의무교육학령이 16세까지 확대하였고, 1988년 대대적인 교육개혁이 이루어졌다. 우선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만을 대상으로 교육제도와 관련한 기본적 권력구조를 변경하였다. 즉,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반면에 지방교육청의 기능을 제한하였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통제를 인정하였으며, 대중교육을 지향하면서 교육에 대

한 책임과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교육과정을 마련하고, 16세까지의 학생과 그 이후의 연령층을 위한 직업교육을 도입하였으며, 학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체를 총괄하고 일관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질적 향상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웠다.

21세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국가가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에 개입하고 그 통제를 강화하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조하여 왔다. 영국의 교육개혁도 예외가 아니고 1988년 이후, 일련의 교육개혁조치는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통제에서 벗어나 교육체계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노동당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사회에 기반한 영국의 중흥을 위하여 학생의 학습수준 향상 및 사회적 일체성을 강조한다. 교육의 현대화를 위하여 영국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경직된 교육과정은 한계가 있음이 증명되었고, 기존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으며,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통제’의 조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유럽연합의 성립으로 인하여 ‘경제적 통합’이 아닌 ‘인적 통합’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교육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교육을 통한 인적 통합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은 물론 구성국가들의 정책 및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지식에 기반한 유럽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유럽연합은 학생, 교원 등의 이동 및 교류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은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 나아가 평생교육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참여국가의 법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체제하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중심의 성장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1장 서설

다도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교육정책과 이를 반영하고 있는 교육법제를 영국의 국내외적 환경과의 관계에 비추어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유럽연합의 구성국가로서 유럽연합의 교육프로그램 및 입법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며, 그 결과를 통하여 우리의 교육법제가 지향하여야 할 점과 교육법령의 제·개정 시 입법자들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영국에서의 헌법개혁과 지방분권화

제 1 절 영국의 정치제도

영국은 1801년 그레이트브리튼과 아일랜드가 연합하여 성립된 ‘연합왕국’(United Kingdom)으로 정식국호는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독자적 사법권을 보유하고 있는 4개의 지방 -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 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국이 오늘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1922년 아일랜드자유국(Irish Free State) - 현 아일랜드 공화국 - 이 독립하여 분리된 이후이다.

영국은 불문헌법국가로 여왕이 국가원수이지만 관행적으로 그 권한은 정부가 행사한다. 의회는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원은 5년마다 총선거에서 단순다수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된다.¹⁾ 의회는 색슨(Saxon)족 왕이 왕국의 행정 자문을 위하여 종교지도자 및 기타 고문을 소환하였던 국정심의회(Witenagemot)에서 기원한다. 14세기까지 양원제 의회로 발전되어 상하 양원은 별개로 구성되었는데, 상원은 주로 성직귀족(Lords Spiritual) 및 세속귀족(Lords Temporal),²⁾ 공작자, 그리고 고문 및 판사들로 구성되었다. 그 반면에 하원은 시(borough)와 주(shire)의 대표자로 구성되었다.

-
- 1) 2007년 7월 현재 하원은 64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노동당(Labour) 353명, 보수당(Conservative) 195명,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 63명, 민주통일당(Democratic Unionist) 9명,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6명, 신페인당(Sinn Fein) 5명, 의장 및 부의장(Speaker and Deputies) 4명, 웨일즈 민족주의 정당인 플레이드 콤리당(Plaid Cymru) 3명, 사회민주노동당(Social Democratic & Labour Party) 3명, 독립당(Independent) 2명, 독립노동당(Independent Labour) 1명, 얼스터통일당(Ulster Unionist, ‘얼스터’는 북아일랜드의 옛 이름) 1석, 존중당(Respect) 1석 등이다. 자세한 것은 <<http://www.parliament.uk/directories/hcio/party.cfm#Respect>> 참조.
- 2) 세속귀족은 남작(Baron), 자작(Viscount), 백작(Earl), 후작(Marquess), 공작(Duke) 등 5계급으로 구분된다.

18세기까지 하원은 정부의 정책을 결정할 책임을 지고 그 권한도 식민지가 확장되는 만큼 확대되었다. 그리고 정당이 발전하고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하원의 지위는 상원의 지위를 능가하게 되었다.³⁾ 상원은 영국의회의 제2원으로 성직귀족 및 세속귀족으로 구성된다. 세속귀족은 세습귀족, 일대귀족(Life Peers),⁴⁾ 그리고 상원의 사법권 행사를 위하여 임명되는 법률귀족(Law Lords)⁵⁾으로 구성된다.⁶⁾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있는 다수의 무소속의원(Crossbenchers)⁷⁾은 특정 정당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투표하지는 않는다. 상원의원의 의회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용도 지불되지 않지만, 상원출석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일정한 여행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노동당정부는 모든 세습귀족의 투표권을 폐지하기 위한 상원의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우선적으로 상원이 영국 사회를 대표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공표하였고, 이를 위하여 1999년에 세습귀족의 수를 축소하는 입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에는 상원인사위원회(House

3) *House of Lords: Reform*, Cm 7027 (The Stationery Office, 2007), p.10.

4) 일대귀족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 각 분야에서 국가에 크게 기여한 자를 수상의 제청에 따라 여왕이 임명하는데 그 지위가 후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5) 법률귀족은 2007년 11월 현재 12명의 ‘상임상소원판사’(Lords of Appeal in Ordinary)와 1876년의 ‘항소관할권법’(Appellate Jurisdiction Act)에 의하여 인정된 24인의 상소원판사(Lords of Appeal)로 구성되는데, 상소원판사 중 16인은 상임상소원판사를 역임하였다.

6) 2007년 11월 현재 상원은 성직귀족인 대주교(Archbishop) 및 주교(Bishop) 26명, 1876년의 항소관할권법에 의하여 인정된 법률귀족 24명(여성 1명), 세습귀족 89명(여성 3명), 일대귀족 609명(여성 143명) 등 총 75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http://www.parliament.uk/directories/house_of_lords_information_office/analysis_by_composition.cfm> 참조.

7) 무소속의원은 원내총무를 갖지 않는 상원의 귀족들로 무소속의원석(Crossbench)에 앉는다. 무소속의원의 수는 2007년 11월 현재 201명으로 이 가운데에는 29명의 선임세습귀족(elected hereditary peers)과 168명의 일대귀족(12명의 상임상소원판사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무소속의원은 독립적이고 무당파적 지위를 갖는데 이들 가운데 다수의원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무소속의원은 각자 독립성을 보장받으므로 집단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단지 개인 자격으로 토론을 하고 찬반투표를 할 뿐, 집단적으로 일방통행적 투표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http://213.52.137.147/who.html>>.

of Lords Appointments Commission)가 공직 후보자(public candidates) 가운데서 비정치적 귀족의 임명을 추천한 바 있고, 여왕은 15명을 비정치적 일대귀족으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과학, 사회정책, 건축, 고용, 교육, 사업 및 국제정세 등 광범한 영역에서 이용 가능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하여 상원의 권위를 증진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하여 선발되었다.

제 2 절 헌법개혁과 지방분권

1. 헌법개혁의 주요 내용

1997년 5월에 출범한 블레어정부는 광범한 헌법개혁을 단행한다. 헌법개혁은 4가지를 그 주요과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정치제도의 현대화’로 그 대상은 영국의회, 공무원 및 지방정부이다. 두 번째 과제는 ‘정치체계의 민주화’로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에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투표 및 국민발안과 같은 직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한다. 세 번째 과제는 ‘영국의회 및 정부 권력의 분산’으로 지방정부에 광범한 권한을 이양한다. 즉,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 의회 및 행정부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권력의 지방분권화를 꾀하고, 장기간에 걸쳐 잉글랜드에 지방 권력을 이양한다. 네 번째 과제는 ‘개인 및 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개선’으로 2000년 10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인권법(Human Rights Act)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여 스코틀랜드 의회(Scottish Parliament) 및 웨일즈 의회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영국의회로부터 분리하고, 북아일랜드도, 기능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립된 의회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의회와 관련하여 영국의회를 “웨스트민스

터”(Westminster)라고 부르고 있다.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된 이후 입법은 영국 전역에 적용되는 영국입법(United Kingdom legislation), 스코틀랜드 입법(Scottish legislation), 웨일즈입법(Welsh legislation), 북아일랜드 입법(Northern Irish legislation) 등 다양한 실체로 존재한다.

2. 지방분권화

가.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의 권한이양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 의회 및 행정부, 웨일즈 의회의 설치와 함께 잉글랜드에 지방 차원의 권한을 장기간에 걸쳐 이양함으로써 권력 분산을 실행하고 있다. 최우선 과제는 스코틀랜드에 의회(Parliament)를, 그리고 웨일즈에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를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 지방에서 분권 요구가 강력하였기 때문이다.

권한이양은 1969년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 권한이양을 위하여 노동당정부가 ‘크로더위원회’(Crowther Commission)⁸⁾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동 위원회는 1973년 권한이양을 위한 제안들을 공표하였고, 1974년 ‘민주주의와 권한이양: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를 위한 제안’이라는 백서(White Paper)를 출판하였다.⁹⁾ 1978년 스코틀랜드법과 웨일즈법이 통과되었지만, 주민투표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주민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제정될 수 있었다. 더욱이 스코틀랜드법은 주민투표에서 선거인 40% 이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법이 폐지된다고 규정한 ‘커닝

8) 이후 ‘킬브랜던위원회’(Kilbrandon Commission)로 불리웠다.

9) ‘녹서’(Green Papers)와 ‘백서’(White Papers) 양자 모두 명령문서의 유형으로 하원의 성명 또는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녹서는 최종 의결 전에 토론 및 심의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가 발간하는 협의문서이다. 녹서에는 종종 몇 가지 선택적 정책을 담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 정부는 백서에서 보다 확고한 추천안을 공표한다. 백서는 입법을 위하여 보다 자세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로 정부부처에서 발간하는데, 입법안의 형태로 의회에 제출하기 전의 마지막 단계이다. 백서가 발간되는 경우 제안을 한 부처의 장관은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녹서가 발간 후 협의과정을 거쳐 발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햄 수정안(Cunningham Amendment)'이 반영되어 있었다. 1979년 3월 1일 실시된 주민투표는 권한을 이양받은 행정부에 51.6%가 찬성하였지만, 선거인의 수가 32.9%에 불과하여 결국 이 법은 폐지되었다. 웨일즈에서는 79.7%가 권한을 이양받은 행정부에 반대하였다.

정부는 1997년 7월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 대한 상세한 제안을 공표하였고, 같은 해 9월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의 주민투표로 승인되었다. 1998년 스코틀랜드법(Scotland Act) 및 웨일즈정부법(Government of Wales Act)이 영국의회에서 제정되어 1999년 5월 6일 최초로 스코틀랜드의회 및 웨일즈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권한이양조치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2003년 6월의 '정부개혁기구'(Machinery of Government Changes)에 따르면, 영국 정부와 권한을 이양받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여야 할 책임은 '부수상부'(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ODPM')에서 '헌법문제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DCA')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2006년 5월부터 잉글랜드 지역은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epartment)가 부수상부를 대체하였다. 2002년 10월 블레어 수상은 더 이상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Scotland and Wales)'의 직이 다른 직위와 조화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청'을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정부차관'(Parliamentary Under-Secretary)과 함께 헌법문제부 산하에 두었다.

블레어 수상은 2002년 10월 14일 권한이양과 함께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Scotland and Wales)의 직위가 더 이상 영국에서 필요하지 않고 다른 직위와 결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게 된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청'은 헌법부 내에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정부차관'(Parliamentary Under-Secretaries of State for Scotland and Wales)직과 함께 재설치되었다.

나. 북아일랜드의 지방분권화

북아일랜드 장관은 2002년 10월 14일에 북아일랜드 의회 구성을 유예하고 영국의 직접통치를 받기로 하였다. 북아일랜드 의회는 1998년 4월의 ‘벨파스트협정’(Belfast Agreement)에 따라 설치되는 새로운 기구 중 하나로 10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스코틀랜드 의회의 입법권 및 행정권과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1999년 12월 2일 행정부와 그 기관이 우선적으로 구성되었지만, 2000년 2월 11일 북아일랜드장관에 의하여 직할통치(direct rule)가 다시 제안되자 유예되었다. 행정부와 그 기관은 2000년 5월 29일 모든 정당 사이의 절충에 따라 다시 구성되었고, 권한이양은 2001년 8월 10일 및 9월 21일 등 2일 간 정지된 바 있다.

다. 잉글랜드의 지방분권화

1998년 4월 북아일랜드에서 체결된 벨파스트협정은 그 다음 달인 5월 주민투표로 승인되었고, 영국의 헌법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잇따라 2003년 6월에는 ‘정부개혁의 기구’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행정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할 책임이 ‘부수상부’(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ODPM’)에서 ‘헌법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DCA’)로 이관되었다. 이후 2006년 5월 부수상부를 대신하는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는 잉글랜드 지역만을 관할한다.¹⁰⁾

영국정부는 잉글랜드에 대하여 통일된 시스템을 강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 지방정부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다양하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경우로 정부는 ‘지방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s’)과 ‘스코틀랜드개

10) <<http://www.communities.gov.uk/>>.

발공사'(Scottish Enterprise) 및 '웨일즈개발청'(Welsh Development Agency)을 신설할 것을 입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교통, 기획, 경제개발을 협조하기 위하여 지역 이해관계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관의 구성원으로 구성하는 지방회의소(regional chambers)의 구성도 규정하고 있다. 지방개발청과 중앙정부의 기관은 지방회의소와 공동으로 일하여야 한다.

1999년에 제정된 '광역런던관리청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은 전략적으로 도시정부를 부흥하기 위하여 런던시장 및 런던의회를 설치하였다. 정부는 지역 거버넌스에 관한 백서, 즉,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선택'(Your Region, Your Choice)을 2002년 5월 9일 출간하였다. 이 백서에 의하면 잉글랜드에서 현재 기능하고 있는 기관들을 강화하고 선임된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공약을 실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11월 14일 의회에 '지방의회법안'(Regional Assemblies Bill)이 제출되었고, 2003년 5월 8일 국왕의 승인을 얻었다. 이 법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승인을 얻는 경우 잉글랜드 지방의 의회가 선거를 통하여 구성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백서의 공약을 실천하고 있었다.

제 3 장 교육법제의 연혁

제 1 절 교육부분의 광범한 권한 이양

1. 교육제도의 다양성

전통적으로 4개 지역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웨일즈는 영어도 사용하지만 영어와는 다른 웨일즈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며, 스코틀랜드는 영국 내에서도 상당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다. 교육제도나 운영방식은 4개 지방이 각각 다른 방식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국의 교육제도를 말할 때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교육제도를 말한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상당히 다른 제도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스코틀랜드의 경우 기본학제나 입학자격고사 등에서 상당히 다른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는다. 또한 중등교육이 1년 일찍 끝나고 대학교육과정이 4년으로 1년 더 길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교육제도는 입법을 통하여 복잡한 구조를 개발하여 왔다. 1960년대 이후 교육문제는 정치문제화되어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었고, 학교 및 교육시설에 관한 기타 제도들이 변화되고 다양화되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스코틀랜드의 교육제도는 매우 독특하고 독립적인 것으로 자신들만의 구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영국 의회의 법이 이 지방에도 적용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98년의 스코틀랜드법(Scotland Act)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된 스코틀랜드 의회에 주요 입법권이 위임되었다.¹¹⁾ 스코틀랜드에서의 교육정책입안 및 그 집행은 스코틀랜드 행정부의 권한

11) 그러나 사회보장, 금융 및 경제에 관한 입법권만은 영국의회가 보유하고 있다.

으로 각부장관은 2차 입법을 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¹²⁾ 북아일랜드의 교육제도 역시 독립적으로 발전되었고, 1998년의 북아일랜드법(Northern Ireland Act) 이전부터 독립적 입법구조와 행정구조를 보유하고 있었다. 북아일랜드법은 다양한 정파와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벨파스트협정의 입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결과 새로운 권한을 이양받은 정부를 위한 새로운 헌법구조가 마련되었다.

2. 스코틀랜드의 교육제도

가. 의무교육과 표준학년과정

스코틀랜드의 의무교육연한은 1872년 5-13세, 1901년 14세로, 1947년 15세, 1972-73년 16세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 5-16세 사이의 학생은 연령, 능력, 그리고 재능에 적합한 전일제교육을 받는다. 초등교육 7년을 받은 후 중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연령상 대략 12세 전후이다. 많은 학생들이 계속 및 고등교육 수준의 의무교육을 받지만 일부학생은 16세에 학교를 졸업하여 취업한다.

5-14세 교육과정은 초등교육 및 2년의 중등교육과정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법적 교육과정은 없고 단지 지침만을 제공하지만, 지방교육청 및 교장은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스코틀랜드 교육부’(Scottish Executive Education Department: ‘SEED’)는 5-14세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규율한다. 스코틀랜드에는 중등교육에 대한 입학규제는 없다. 전기중등교육(Lower secondary

12) 2000년 ‘스코틀랜드학교 등 기준법’(Standards in Scotland's Schools etc. Act)은 “스코틀랜드 장관은 교육기관과의 협의 및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에게 그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 명령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제공되는 학교 교육의 우선적 교육목표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2차 입법권을 명백히 위임하고 있고(s 4(1)(a)), 그 결과 국가우선과제령(Education (National Priority) (Scotland) Order, SI 2000/443)이 제정되었다.

education)은 3단계로 나뉘는데, 최초 2년(S1, S2)은 일반교육을, 3차년도와 4차년도(S3, S4)는 전공 및 계속 교육을 한다.

14-16세 학생은 표준학년과정(Standard Grade Courses)을 이수하여야 한다. 표준학년과정의 평가는 ‘스코틀랜드 자격검정청’(Scottish Qualification Authority: ‘SQA’)이 주관하고 채점하는 국가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 과정은 3가지 수준을 제안하고 그 이행에 2년이 소요된다. 그 수준은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신뢰(credit), 일반(general), 그리고 기초(foundation) 등 3수준으로 나뉜다. 표준학년과정의 선택은 중등학교 2학년 말에 선택되고, 표준학년은 학교 내외에서의 계속적 평가 및 시험을 통하여 결정된다. 스코틀랜드에서의 계속교육은 5, 6학년에 선택하는 고등 및 최고등교육과정(Higher and Advanced Higher Education Courses)에서 이용되지만 의무적이지는 않다. 고등 및 최고등교육과정은 5가지 수준, 즉, ① 액세스(access), ② 중간(intermediate) 1, ③ 중간 2, ④ 고등, ⑤ 최고등 등으로 구분하며, 내부 및 자격검정청의 내·외부에서 평가된다.

나. 표준학년제

스코틀랜드의 표준학년제는 대체로 잉글랜드의 중등교육수료일반시험(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GCSE’)과 유사한 것으로 15-16세에 달한 학생을 위한 시험제도로, 그 과정은 2년 동안 - 중등학교 3-4학년 - 이루어지고, 시험은 4학년 말에 실시된다. 시험실시 결과 “기초수준”(Foundation Level), “일반수준”(General Level), “신뢰수준”(Credit Level)으로 평가되고, 기초수준 및 일반수준 평가서를 받은 학생과 일반수준 및 신뢰수준 평가서를 받은 학생들이 각각 함께 공부한다. 학생들은 1(최고)부터 7(최저)까지 ‘각 시험의 수적 등급’(numerical grade for each examination)을 받는다. 1-2등급은 신뢰수준, 3-4등급은 일반수준, 5-6등급은 기초수준, 7등급은 “과정 이수”(course completed)로 낙제

와 같은 의미이다.

표준학년은 1990년대 초의 “구 ‘O’ 등급자격시험”(the old ‘O’ Grade qualification)을 대체하는 것으로 스코틀랜드 자격검정청의 ‘하이어 스틸 시스템’(Higher Still system) 때문에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만 학생과 교원은 표준학년에서 ‘하이어 스틸’로의 도약 - 특히 영어과목 - 은 매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수준은 하이어 스틸의 3수준과 유사하며, 일반기준은 중간 1, 신되는 중간 2 수준과 유사하다. 대개 학생들은 3학년 말에 시험을 치러야 하고, 4학년 말에 중간 1 또는 2 수준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 후에 중간 2 또는 고등 수준의 5학년으로 진학한다.¹³⁾

다. 자격검정제도

‘하이어 스틸 시스템’은 1999년 8월부터 ‘스코틀랜드자격검정청’(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이 새로이 도입한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제도이다. 하이어 스틸 시스템은 학교와 전문학교에서 현재 제공되는 최선의 스코틀랜드교육을 한데 모으는 것으로 학술과목과 직업과목 사이의 인위적 장벽은 없다. 그 목표는 첫째,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증진하고, 둘째, 학생들이 보다 많은 기술과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평생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노동, 계속 및 고등 교육 기술을 개발하고, 넷째, 능력이야 어떻든 모든 학생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자격을 제공한다. 그 결과 ‘하이어 스틸 시스템’은 첫째, 보다 적절하고 다양한 자격을, 둘째, 교육을 통한 고용의 보다 나은 통로 및 방법을, 셋째,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 기회를, 넷째, 핵심기술의 증명서를, 다섯째, 직업 및 학술 자격검정을 위한 동등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이어 스틸 자격검정은 50개 이상의 과목에 대하여 행하여지는데

13) <http://www.wordiq.com/definition/Standard_Grade>.

5가지 수준, ‘악세스(Access)수준, 중간(Intermediate) 1 수준, 중간 2 수준, 고등(Higher) 수준, 최고등(Advanced Higher) 수준’으로 구분된다. 교육과정은 대개 40시간 또는 80시간 수업 단위로 구성하며, 악세스 수준은 기초수준이고, 중간 2수준은 S6수준의 하이어 스틸의 가교를 제공할 것이며, 새로운 하이어 스틸 시스템은 현재의 하이어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다. 반면에 최우등은 ‘6년 졸업자격’(Certificate of Sixth Year Studies)을 대체할 것이다.¹⁴⁾

3. 북아일랜드의 교육제도

북아일랜드에서 4-16세 사이의 모든 아동은 12년간의 전일제교육을 받아야 한다. 7월 1일 전에 4세가 되는 아동은 9월 1일에 입학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에 입학하여야 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와 같이 ‘교육·도서관위원회’(Education and Library Board)의 승인을 얻어 교육 대안시설을 만들 수 있다.

의무교육학령은 1923년 5-14세, 1947년 15세로, 1972-73년 16세까지 연장되었다. 북아일랜드에서 다수의 학생은 11세에 초등학교에서 중등(post-primary)학교로 진학하고, 입학시험(진학과정시험(Transfer Procedure test))에 합격한다면 인문계중등학교(grammar school)에 입학할 수 있다. 인문계중등학교는 19세까지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응하는 반면에, 중등학교는 16세까지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응한다. 북아일랜드의 의무교육은 4개의 키 스테이지(key stage), 즉, 키 스테이지 1은 4-8세, 키 스테이지 2는 8-11세, 키 스테이지 3은 11-14세, 키 스테이지 4는 14-16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시험은 각 키 스테이지 말에 실시된다.¹⁵⁾

14) <<http://www.scotland.gov.uk/library/documents-w2/hsl-00.htm?1;lp-main.htm>>.

15) <<http://www.teachernet.gov.uk/educationoverview/uksystem/structure/northernireland/>>.

4.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교육제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에는 웨일즈정부법(Government of Wales Act)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일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는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할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정책은 공동으로 입안하고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웨일즈 교육의 대부분은 2차 입법의 과제이다. 물론 웨일즈정부법은 웨일즈의회에 스코틀랜드의회와 필적할만한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고, 단지 2차 입법만을 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잉글랜드와 계속적인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웨일즈의 교육정책은 점차 잉글랜드와 분리되고 있다.¹⁶⁾

잉글랜드와 웨일즈가 현행 교육체계를 형성하기까지는 3차례의 개혁이 있었다. 첫 번째 개혁은 1944년의 교육법이다. 이 법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분리하고, 국가부문에서 중과학교를 수용하며, 지방교육청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후 ‘자유시장경제질서로의 이행 및 관리통제주의’(marketisation and managerialism), ‘경쟁 및 통제의 시대’로 돌입하면서 교육도 변화가 요구되었고, 그 결과 두 번째 개혁인 1988년의 교육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마지막 개혁은 1997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불평등과 ‘사회적 소외’(social exclus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된 이후이다. 1997년의 교육(학교)법에 의하여 정부는 그 동안 지원자의 지위로부터 벗어나 주도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핵심은 1998년의 학교기준 및 구조법(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이하 “학교기준법”)이다.

16) Neville Harris, *Education, Law and Diversity*(Hart Publishing, 2007), p.88.

제 2 절 학교의 성장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생각은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까지 학교는 일반적이지는 않았다. 당시 영국에서는 국교회와 비국교회 모두 다양한 학교교육을 제공하고 있었고, 자선기금 및 기부금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자선기금 및 기부금은 본래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 중산층의 초·중등학교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장애아동의 교육은 다양한 자선기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숙시설(boarding institutions)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귀족층은 그들의 자녀를 위해 가정교사를 고용하여 집에서 교육하고 있었다.

중앙정부가 교육시설에 관심을 둔 것은 비국교회와 관련된 “영국 및 외국 학교 협회”(British and Foreign School Society)와 국교회와 관련된 “전국협회”(National Society)가 지금은 임의기부제학교(voluntary school)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을 보수하고, 국교회 및 비국교회의 육영사업(educational work)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한 1833년부터이다. 이후 보조금은 매년 지원되었고 1856년까지 그 배분은 추밀원교육위원회(Committee for Education of the Privy Council)가 실행하였다. 1870년의 초등교육법(Elementary Education Act) 이후 구성된 학교위원회(school board)는 임의기부제학교의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방세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적은 수업료로 임의기부제학교 및 공립초등학교(board school)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

1870년의 초등교육법은 포스터(W. Forster)가 기초한 입법으로 교육

을 자유로이 할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초등교육의 대상을 5세부터 10세까지 - 13세까지 확대할 가능성은 있었음 - 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학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에 초등학교의 현존 시설의 보수 여부를 결정하고, 학교출석을 강제할 권한을 부여하였다.¹⁷⁾ 1880년 10세 이상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 되었지만 수업료를 지불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학교출석을 사실상 강제하기는 어려웠다. 1902년 교육법은 특별시(county borough) 및 주에 교육청(education authority)을, 그리고 공립초등학교 소재지에 주립학교(council schools)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18년의 교육법¹⁸⁾ 개정으로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수업료가 폐지됨으로써 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00년대 초부터 학교의 유형은 초등학교, 고등초등학교(higher elementary), 공업전문학교(junior technical), 4년제 대학교(senior) 등 다양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교는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인문계 중등학교(grammar school)¹⁹⁾와 경쟁하기 시작하였고, 공립 및 사립 영역 사이의 연계가 계속되었다. 공립중등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졸업연령(school leaving age)이 1918년 14세로 확대되면서 의

17) 학교위원회는 1902년의 교육법에 의하여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y)으로 통합되었다.

18) 이 법은 피셔(H. Fisher)의원이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흔히 ‘피셔법’(Fisher Act)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1917년의 루이스보고서(Lewis Report)에 기초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4세를 학교졸업연령으로 하고, 18세까지 ‘주간 보습반’(day continuation class)에 최소 주당 8시간 또는 연간 320시간을 출석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 결과 졸업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그 연령을 연장하고, 모든 젊은 노동자들에게 연수휴가교육(day release education)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졸업연령 연장은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1921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http://www.spartacus.schoolnet.co.uk/EDfisher.htm>>; <<http://www.dg.dial.pipex.com/history/text03.shtml>>.

19) 인문계 중등학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기부를 받거나 지방영주의 후원으로 설립·유지되어 왔으며 631년에 설립된 Thetford Grammar School이 가장 오래된 학교이다. <<http://www.thetgram.norfolk.sch.uk/>>.

무교육도 이 연령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1944년까지는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1926년 ‘보조금 및 무상교육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이후 사립학교 (independent school)는 중앙정부의 보조금²⁰⁾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야 했는데, 235개 학교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그 선택은 1997년의 교육(학교)법(Education (Schools) Act)에 따라 미래의 학생 (future pupil)을 대상으로 같은 해 9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왜냐하면 교육(학교)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98학년도 말부터 사립학교 아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따라 수업료 보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조 대상은 1997/98학년도 신입생부터이지만, 이 법은 경과조치를 두어 재학생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재학생의 경우 초등교육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장관이 특정학생과 관련하여 중등교육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원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초등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그 지원이 중단된다.²¹⁾ 그러나 일정한 연수입 미만 가정의 아동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다.

제 3 절 1944년의 교육법

1944년의 교육법은 전후 영국교육제도의 구조를 새로이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이 법의 주요한 내용은 학교졸업연령을 15세로 확대하여 5세부터 15세까지의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1880년 5세부터 12세까지 실시되었고, 1918년 14세까지로 확대한 이후 점차 그 연령이 확대되어 왔다. 이 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물론 중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었다.²²⁾

20) 보조금은 무상교육을 받는 아동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21) Education (School) Act 1997, s 2.

22) 이 법은 윈스턴 처칠에 의하여 구성된 연립정부의 교육부장관인 램 버틀러(Rab Butler)가 전후 영국교육제도의 구조를 새로이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고, 그래서

지방교육청은 학교가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 인물, 그리고 시설을 갖추고 - 충분한 학교 의무 (sufficient school duty) -,²³⁾ …서로 다른 연령, 능력 및 태도, 그리고 서로 다른 재학기간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것일 수 있는…다양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²⁴⁾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청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고통받는 학생에 대한 특별한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였고,²⁵⁾ 모든 장애아동을 확인할 의무 또한 규정하였다.²⁶⁾ 다양한 형태의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1981년 교육법 이후에 기능하였고,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데 1998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다수 공공부문 내의 특수학교²⁷⁾는 ‘지역특수학교’로 분류되었다. 그렇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점차 증대하면서 지금은 주류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다.

지방교육청은 의무교육학령 이상의 자를 위하여 전일제 및 시간제

‘버틀러법’(Butler Act)이라고도 한다. 본래 버틀러 장관은 중등학교는 아동의 서로 다른 교육수준 및 기타 능력을 충족시켜 주기를 희망하였는데, 그 결과 11세말에 실시되는 시험결과에 따라 입학할 수 있다.

23) ‘충분한 학교 의무’는 경제적 환경 또는 인구변화에 따라 학교의 설립, 변경 또는 폐쇄를 포함한 학교교육(schooling) 전체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Harris, *Education, Law and Diversity*, p.93.

24) Education Act(‘EA’) 1944, s 8. 이 규정은 1996년의 교육법까지 존속하였다(s 14). 이에 대하여 지방교육청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고(*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cience v. Tameside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1976] 3 All ER 665;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v. Birmingham City Council* [1989] 1 All ER 769), ‘충분한 학교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시설 및 기타 요소의 이용은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eade v. Haringey London Borough Council* [1979] 2 All ER 1016; *R. v. Inner London Education Authority ex parte Ali and Murshid* [1990] 2 Admin LR 822).

25) EA 1944, s 8(2).

26) EA 1944, ss 33-34.

27)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수요를 가진 학생을 위하여 특수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특별하게 조직되고 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를 의미한다(EA 1996, ss 6(1), 337(1), 342). 특수학교는 첫째, 지방교육청에 의하여 유지되는 ‘공립학교’(maintained school), 둘째,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경영되는 독립형 재정지원학교(grant-maintained school), 셋째, 공립학교도 독립형 재정지원학교도 아닌 특수학교(special school)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EA 1996, s 137(2)-(4)).

계속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학문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여가시간 활동을 포함한 성인교육을 제공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장관은 지방교육청 또는 운영위원회가 비합리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또는 법정교육을 불이행하는 경우에²⁸⁾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의 행사되지는 않았다.²⁹⁾ 점차 장관이 교육위원회의 장을 대신하였는데, 오랜 전쟁기간의 어려움을 보상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욱이 자발적 기관(voluntary authority) 및 종교기관이 점점 가난해지면서 지방교육청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재정지원의 정도에 따라 전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주립 또는 공립학교(county or maintained school)와 국가 및 종교단체 또는 자선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부보조학교(voluntary aided),³⁰⁾ 정부관리학교(voluntary controlled),³¹⁾ 그리고 특별협약학교(special agreement school) 등 4개 학교가 탄생하였다. 그밖에 직접보조학교(direct grant school), 공립학교(public school) 및 사립학교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교육수

28) EA 1944, ss 68, 99.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cience v. Tameside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1977] AC 1014; *Meade v. Haringey London Borough Council* [1979] 2 All ER 1016; *Watt v. Kesteven Country Council* [1955] 1 All ER 473 (CA); *Bradbury v. London Borough of Enfield* [1967] 3 All ER 434; *R. v. Inner London Education Authority ex parte Ali and Murshid* [1990] 2 Admin LR 822.

29) 법원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간섭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Bradbury v. London Borough of Enfield* [1967] 3 All ER 434;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cience v. Tameside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1976] 3 All ER 665).

30) ‘정부보조학교’는 가톨릭 교회가 설립한 학교에 적합한 형태로 학교재단(설립자 또는 그 상속자를 포함한다.)에 직원임명 및 종교교육의 내용에 대한 훨씬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 초등학교에서는 ‘관리인위원회’(board of managers), 중등학교에서는 ‘이사회’(board of governors)로 부른다. - 의 과반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다.

31) ‘정부관리학교’는 종교적 특성은 보유하지만 전적으로 지방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로 지방교육청은 직원임명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종교교육은 지역적으로 인정된 강의요목에 따라야 한다. 그 결과 지방교육청은 직원의 고용주(EA 2002, s 35)이지만, 이들을 임명할 책임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

요의 증대를 충족하기 위한 학교설립은 물론, 교육과정의 구성 및 지도,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교육에 관한 권한과 기구가 확장되고, 교육제도에 지방의 문화적, 정치적 특성이 반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1944년의 교육법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공교육제도 내에서 종파학교가 다른 학교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극단적인 재정곤란에 직면하여 더 이상 건물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잉글랜드교회 및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들이 공공부문(state sector)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역설한 이 법의 기초자인 버틀러 의원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1939년 당시 잉글랜드 및 웨일즈 학교의 절반은 교회가 운영하고 있었지만, 전체학생 중 3분의 1 이하의 아동만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³²⁾

1944년의 교육법은 교회에 대하여 ‘정부관리학교’ 및 ‘정부보조학교’로서의 지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자는 최대한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므로 대다수 학교가 이 지위를 선택하였다. 후자는 학교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려고 하는 가톨릭교회 학교에 적합한 형태인데, 학교재단이 재정의 일부를 조달하여야 한다.³³⁾ 지방교육청은 학교운영비를 충족하여야 하는 반면에 재단은 자본비용(capital costs)의 50%를 충당하여야 한다.³⁴⁾ 소수의 종파학교는 제3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정부보조학교와 유사한 지위를 갖지만 지방교육청과의 계약에

32) N. Timmins, *The Five Giants: A Biography of the Welfare State* (Harper Collins, 1995), p.79; Harris, *Education, Law and Diversity*, p.93.

33) 정부보조학교 중 일부 - 대부분 로마 가톨릭계 학교 - 는 半自治權(semi-autonomous)을 보유한 채 유지되고 있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종종 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학교를 개혁할 권한이 있었다. N. Harris, *The Law Relating to Schools* (Tolley, 1995), Ch. 2; Harris, *Education, Law and Diversity*, p.93.

34) 자본비용비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10%이다. 1998년 학교기준법(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SSFA’) 별표 3(Schedule(‘Sch’) 3).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특별협약’(special agreement)학교를 선택하였다.³⁵⁾ 비종파적이고 주류인 과반수 학교는 주립학교(county school)가 되었고,³⁶⁾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청의 통제를 받았다.

1944년의 교육법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중앙통제장치의 부재이다. 즉, 영국은 유럽대륙과는 달리 분권화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의 실시가 불가능하였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지방정부마다 각각 다르고 다양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1930년대의 경기침체는 학교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더 이상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제 4 절 중등학교의 종합화

1944년의 교육법은 가계조사(means-tested)를 기초로 우유, 식사, 의류 및 운송수단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한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의 단계를 규정하였고, 특히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10.5세 및 12세 사이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공립학교 교육의 3원체제(tripartite system) - 초등, 중등 및 계속교육³⁷⁾ - 가 확립되었고, 또한 중등학교의 3원체제를 도입하여 중등학교의 교육제도를 변화시켰다. 중등학교의 3원체제는 인문계 중등학교, 중등기술학교,³⁸⁾ 실업중등학교 등 3개의 서로 다른 유형의 중등학교로 구성된다.³⁹⁾ 그리고 이와

35) 이 유형의 학교는 1998년의 학교기준법에 따라 폐지되고 정부보조학교로 편입되었다(SSFA 1998, Sch 2).

36) 현재는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로 분류된다. SSFA 1998, s 20.

37) EA 1944, s 7.

38) 장관이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지 못하였다. P. Sharp and J. Dunford, *The Education System in England and Wales* (Longman, 1981), p.21.

39) Harris, *Education, Law and Diversity*, pp.94-95.

같은 요소가 결합된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도 허용되었지만 그 수는 소수였다. 버틀러 의원은 인문계 중등학교와 중등실업학교의 ‘점진적 융합’(gradual melding)을 예견하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중등학교에서 학생의 학문적 능력에 따른 선발방식을 폐지하면서 중등학교의 종합화를 망각한 노동당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버틀러 의원은 사립학교를 공공부문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⁴⁰⁾

1964년부터 1970년까지의 노동당정부는 비선택적(non-selective) 종합 중등학교를 육성하기로 하자 ‘대토론’(Great Debate)이 벌어졌다. 1965년 6월 안내장(circular)을 발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문계 중등학교, 기술 중등학교, 실업중등학교 등 ‘3원체제’와 ‘11 플러스 시험’(11 plus examination)⁴¹⁾의 폐지를 대체하는 중등교육 재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수당이 1970년 재집권하자 모든 과정이 취소되었다. 그렇지만 1974년 노동당이 재집권하면서 계속적으로 종합화 계획을 추진하고 1976년의 교육법에 따라 종합교육이 강제되었고,⁴²⁾ 그 결과 잉글랜드 지역 중등학교의 80% 이상이 종합학교로 재구조화되

40) 학교에 대한 직접보조금제도를 마련하여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도 수많은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인정하는 대가로 교육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41) 1944년의 교육법에 따르면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진학하는 연령이 11세였고,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적에 따라 인문계 중등학교, 기술 중등학교, 그리고 실업중등학교로 각각 진학하게 된다. 그래서 11세에 시험을 실시하여 진학한다는 의미에서 “11플러스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다. 平尾節子, “잉글랜드의外國語教育・國家戰略 - The National Languages Strategy for Englandの視点から,” 言語と文化(愛知大學) No. 10, 2004. 1, 41頁.

42)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반대와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Tameside*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잉글랜드 북서지역 맨체스터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테임사이드구의회’(Tameside Metropolitan Borough Council)가 무시협으로 중등학교의 입학을 허용하려는 전임자들의 제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정책에 평의회가 복종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cience v. Tameside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1977] AC 1014).

었다.⁴³⁾ 그렇지만 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정부는 종합화원칙을 실시할 의무가 없음을 선언하여 더 이상 추진될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공립중등학교는 비선택적 종합학교가 되었지만, 인문계 중등학교는 6개 지방교육청 지역에서 아직 개교하고 있고 그 수는 164개교에 달한다.

1976년의 교육법은 보편주의(universalism)에 기초하고 있고, 교육은 무료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주의(egalitarian)에 입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선발제도를 허용함으로써 능력있는 아동은 인문계 중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당시 영국을 지배하고 있던 광범위한 계급 분할을 유지하고 있었다. 교육이 전국적 서비스이므로 지역적으로 통제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 생각이었다.⁴⁴⁾ ‘11플러스 시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고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학교로 배정되는데, 인문계 중등학교의 수는 변함이 없었지만, 기술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업학교로 가게 되는데, 그 결과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대학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대학 이외에 1960년대 초부터 새로운 대학들이 신설되었는데 계속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폴리텍학교가 대표적이다. 새로운 제도와 교육과정으로 고등교육은 확대되고 있고, 구 폴리텍학교와 전문학교(college)는 1992년의 계속 및 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 ‘FHEA’)에 의하여 대학교의 지위가 인정되어 있다.⁴⁵⁾ 이 법의 혁신적 조치 중의 하나는 여성과 근로자 계층을 교육하

43) 강영혜, “영국의 교육개혁과 교육입법”, 교육법연구 제15권 제1호, 2003. 7, 8쪽.

44) 1944년의 교육법 제1조 제1항은 장관에게 교육 및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집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제도에 관한 통치권력의 중앙집권화로 인하여 장관이 많은 교육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던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상황과는 비교된다. 자세한 것은 Neville Harris, *Law, and Education: Regulation, Consumerism, and the Education System* (Sweet and Maxwell, 1993), Ch.2 참조.

여 결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성과 근로자 계층에 중등학교의 문호를 개방하여 상당수가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도록 하였고 근로자 계층과 중산층 사이의 혹독한 계급분화를 초래하였다. 이 법은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를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로 개칭하였고, 국립중등학교의 수업료를 폐지하였으며, 초등학교는 5-11세, 중등학교는 11-15세 사이로 분화하였다.

제 5 절 보수당정부 하의 교육법제의 발전 (1979-1997)

1. 기본정책

1944년부터 1980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는 협동(cooperation)에 근거하고 있었다. 지방정부는 각 지역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반면에 중앙정부는 광범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980년의 교육법은 여명을 밝히고 있었다. 즉 교육체계에 소비주의(consumerism)적 가치를 도입하고 학부모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⁴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

45) 고등교육 과정에는 ① 교원, 청소년복지사(youth worker), 그리고 사회복지사(communitary worker)의 계속훈련(further training), ② 상급학위를 포함한 졸업 후 과정(post-graduate course), ③ 1급 과정(first degree course), ④ 고등교육의 학위과정, ⑤ 기업 및 기술자 교육평의회(Business and Technician Education Council: 'BTEC')의 국가학위과정(Higher National Diploma: 'HND') 및 국가자격증과정(Higher National Certificate: 'HNC') 또는 경영학 학위 과정, ⑥ 교육수료증(Certificate of Education) 과정, ⑦ 상급 수준의 직능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⑧ 시험 준비를 위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상급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 : 'ERA') 별표(Schedule) 6; EA 1996, s 579(1)).

46) 그 대표적인 것이 아동을 위한 학교 선호도를 표현할 권리 - '학교선택권'(right to choose a school) - 이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 사이에 학부모는 학교에서 아동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정보권을 부여받았다. 또한 입학, 제적(exclusion), 그리고 특수교육수요에 대한 이의신청과정을 규정하고 지방교육청 및 학교를 독립시켰다. Anne Ruff, *Education Law: Text, Cases*

하고 있었다.⁴⁷⁾ 이러한 발전은 중앙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교육청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시기의 지방교육청은 ‘도전과 환원주의’(challenge and reductionism)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지방교육청은 특수교육시설, 교육복지, 학교출석의 강제, 학교통학시설, 질병 또는 제적으로 인하여 학교출석이 불가능한 자에 대한 시설,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학교 직원의 임면 및 교육에 대한 권한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양도됨으로써 지방교육청의 역할은 감소되었다.

보수당의 교육정책은 100여년 간의 발전 및 1944년의 교육법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뒤엎으려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든 종파학교(denominational school)가 지방교육청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독립형재정지원(grant-maintained)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또한 선발시험 및 능력별학급편성(streaming)을 재도입하고, 지방교육청의 권한을 축소하여 중앙정부 또는 특수법인(quango)에 재정지원을 비롯한 기타 권한을 양도하도록 하였다.

2. 1988년의 교육개혁법

가. 교육제도와 자유시장경제원리

1980년대부터 영국의 교육은 1960년대의 ‘민주주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 기초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에서의 경쟁과 선택을 최대화하고자 하였으며, ‘변화’와 ‘개인 또는 개별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통한 사회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1979년 집권한 보수당정부는 종합학교시스템에 반대하면서 좌경화

and Materials (Butterworth, 2002), p.24.
47) Harris, *Law and Education*, p. xxx.

된 지방의회(local councils) 및 교원들이 아동교육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보수당의 교육개혁은 지방교육청으로부터 학교통제권을 배제하고 학교교육 및 교육과정 정책, 인적 자원 및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학부모의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지방교육청의 대표성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결국 지방교육청에 대하여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시작하면서 교육에 대한 접근방법이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난하였다.⁴⁸⁾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방교육청의 역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조치를 하게 된다. 그 조치 가운데에는 1990년 4월 1일부터 ‘이너 런던 교육청’(Inner London Education Authority)은 물론 ‘이너 런던 교육지구 및 교육청’이 구성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⁴⁹⁾

보수당은 1980년의 교육법을 통하여 이미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경쟁 및 학부모의 선택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더 이상 학교는 지방교육청이 아닌 선임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통제 아래에 있기를 원하였고, 1986년의 교육법(Education (No. 2) Act)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할 권한과 책임을 양도하고, 정해진 정책결정과정에 따라 기능하도록 하는 학교기관을 변화시켰다.

영국의 경기침체 원인이 학력이 저하된 교육현실이고, 이를 극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하며, 학생 간 또는 학교 간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이 절실하였다.⁵⁰⁾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88년 교육개혁법이 제정되었다.⁵¹⁾ 무엇보다도 1988년 교육개혁법은 독립형

48) Harris, *Education, Law and Diversity*, p.95. FN) 45.

49) ERA 1988, s 162.

50) 이상목, “영국교육제도의 관점에서 본 영국인의 정체성,” 영미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제9집(2003. 12.), 125쪽.

재정지원학교(*grant-maintained schools*) 및 도시중등기술학교(*City Technology College*)의 설립을 인정한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학교시스템의 다양화 및 분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⁵²⁾ 즉, 독립형 재정지원학교는 지방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그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교제도에 대한 다양성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경쟁 및 선택을 도입하고, 학부모에게 권한을 양도⁵³⁾하는 등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고 있었다. 독립형 재정지원학교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1993년 교육법 이후부터는 ‘학교재정지원청’(Funding Agency for School) 또는 ‘웨일즈 학교재정지원평의회’(Schools Funding Council for Wales)로부터 지원을 받는다.⁵⁴⁾

나. 독립형재정지원학교

독립형 재정지원학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운영위원회의 찬성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⁵⁵⁾ 그런데 독립형 재정지원학교를 인정하는 것은 1944년 교육법에 의하여 마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연대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재정지원기관을 도입하여 독립형 재정지원학교에 재정을 배분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장관이 그 직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기까지 하다.

51) 이 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모든 사항이 적용되지만 스코틀랜드는 대학에 관련된 내용만이, 그리고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2) Harris, *Education, Law and Diversity*, p.96.

53) 그 대표적인 것이 독립형 재정지원학교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학부모의 투표권이다(EA 1993, ss 25, 28).

54) EA 1993, ss 3-4. 전자는 10-15명으로 후자는 8-12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재정지원기관은 토지 및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계약체결,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즉시 필요하지 않은 금액의 감사, 그리고 금전, 토지 기타 재산의 수증 등의 경우에 기능한다(EA 1993, Sch 1).

55) EA 1993, ss 25-26, 28-35.

장관이 지방교육청과 재정지원기관 모두에게 충분한 학교토지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교육청 관내 학생의 10% 이상이 독립형 재정지원학교에 등록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재정지원기관에게만 충분한 학교토지의 제공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구역 내의 75% 이상의 학생이 등록할 수 있었다.⁵⁶⁾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또는 양자 모두 그 대상이 되므로 지방교육청의 통제권이 약화 내지 상실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당과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노동조합(teaching unions)은 독립형 재정지원학교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었는데, 학교가 특권화되고 그로 인하여 지방교육청에 대항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1992년 11월까지 340개의 독립형 재정지원학교가 있었고, 1993년 교육법을 통하여 인가절차가 간소화되고, 소규모 초등학교에도 적용되었으며, 학교 간 공동신청이 인정되었다. 1994년 7월까지 독립형 재정지원학교는 930개로 증가되었지만, 10% 요건은 잉글랜드의 109개 지방교육청 중 3개 교육청의 초등학교, 그리고 중등학교는 45개 지방교육청에 적용되었을 뿐이며, 75% 요건은 단지 1개 지방교육청에서만 적용되었다.⁵⁷⁾ 학생 수는 잉글랜드 공립 학교 학생의 8.4%로, 초등학교 전체 학생수의 2%, 중등학교 전체 학생수의 17.6%에 해당한다. 이후 점차 독립형 재정지원학교는 서서히 증가하여 1997년까지 75% 요건은 4개의 지방교육청으로, 그 반면에 10% 요건은 초등학교는 8개 지방교육청, 중등학교는 57개 지방교육청으로 확대되었으며, 1998년 ‘학교기준법’(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SSFA’)에 따라 폐지되기 전까지 1000여개의 학교가 독립형 재정지원학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폐지된 이후 이들 학교는 지방교육청의 기관으로 대다수 재단설립학교(foundation school)가

56) EA 1993, ss 12(1), (3).

57) Harris, *Education, Law and Diversity*, p.97.

되었다.⁵⁸⁾ 그렇지만 지방교육청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자치권 및 자율성은 존중되었다.

독립형 재정지원학교 외에 도시중등기술학교(city technology college: 'CTC')⁵⁹⁾가 새로이 탄생되었다. 이 학교는公私混成(public-private hybrids)으로 장관과의 협정에 따라 민간부문후원자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지만,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았다. 비록, 법률상 사립학교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고 있었다.⁶⁰⁾ 이 학교는 도시지역에 위치하여야 하고, 11세에 달한 자 및 학교 소재지에서 주로 선발되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예능 및 독창적 예술에 적용하기 위한 과학 또는 기술을 강조하는 광범한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⁶¹⁾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국립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과 종교교육 및 예배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⁶²⁾⁶³⁾

다. 국가교육과정의 도입과 문제점

1988년 교육개혁법의 핵심 내용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생간, 학교간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통제강화, 그리고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이다. 또한 '국가교육과정'(national

58) SSFA 1998, s 20(1)(b).

59) 또는 '도시중등예술기술학교'(city college for the technology of the arts)로도 부른다. ERA 1988, s 105(1).

60) ERA 1988, s 105; EA 1996, s 482.

61) EA 1996, s 482(2).

62) 물론 중앙정부와 재정지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광범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할 학교의 법적 의무와 일치하는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

63) 도시중등기술학교는 2002년 '학습 및 기술법'(Learning and Skills Act : 'LSA')이 제정된 이후 도시전문학교(city academies)로 전환되었고, 외국어, 시각예술, 예능 또는 미디어예술(media arts), 스포츠, 그리고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학과 등으로 구성된다. LSA 2002, s 130(1), (3).

curriculum)을 도입하여 의무교육학령아동이 교육받아야 할 교과목, 교육내용, 연령별 성취 수준 및 평가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국가교육과정을 도입한 데에는 첫째, 학교 간 교육내용의 차이를 극복하고 교육내용의 남녀차별을 해소하고, 둘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며, 셋째, 학교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넷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육 간의 연계성을 증대하는 것 등이 그 이유이다.⁶⁴⁾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교원의 자율권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⁶⁵⁾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교원이라는 직업은 거의 위기 상태에 직면하여 자율권이 중대하게 약화되었고, 학교교육에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었으며, 더욱이 학생성적 및 감사보고의 공개를 통하여 학부모⁶⁶⁾에 대한 책임이 증대되었고, ‘학업목표제’(school performance targets)가 도입되었다. 장관은 의무교육학령 학생의 경우에 국가교육과정의 목적을 위한 공개시험(public examination)이나 평가 또는 의무교육학령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시험이나 기타 외부자격의 취득 등 연간 학업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었다. 이 규칙에는 목표 및 목표와 관련한 특정 시험이나 평가, 또는 특정 자격취득과 관련한 학생들의 과거 성적과 그 공개방식을 정할 수 있다.⁶⁷⁾ 그 대상은

64) 강영혜, “영국의 교육개혁과 교육입법,” 12쪽.

65) Education (No.2) Act 1986, ss 44, 46.

66)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CA’)은 ‘아동을 가족이나 친족, 또는 기타 적격자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기관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결정으로 아동을 위한 숙박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 23(3)). 지방기관이 아동을 부양하는 수양부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방기관 수양부모’(local authority foster parent)라고 부르고 있다. ‘학부모’(parents)의 개념에 1989년 아동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기관 수양부모’(local authority foster parent)가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부모에는 친부모는 아니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거나 아동을 부양하는 자’도 포함되므로 부모는 자연인이 아닌 지방기관도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Fairpo v. Humberside County Council* [1997] ELR 12.

주립 또는 임의기부제학교, 독립형 재정지원학교, 그리고 공립 또는 독립형 재정지원 특수학교에 한한다.⁶⁸⁾

라. 교육관련법의 개정

교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협의 및 심의기관⁶⁹⁾의 권고에 따르기는 하지만 장관이 명령으로 결정하고 있다. 비록 1994년의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훈련청’(Teacher Training Agency)이 교원들을 대표하지만 거의 권한이 없었고 장관의 지시에 구속되었다.⁷⁰⁾

보수당정부는 1992년 교육정책 담당부서를 ‘교육과학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에서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로 개편하였다. 그 후 1995년 7월 5일부터는 ‘고용부’(Department of Employment)를 해체하고,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로 확대·개편하였으며, 2001년 말에는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로 개칭하였다.

보수당정부는 이전의 법을 통합한 1996년의 ‘학교감사법’(School Inspections Act)⁷¹⁾외에 1997년의 ‘교육법’을 마지막으로 개정하였다.

67) EA 1997, ss 19(1), (2).

68) EA 1997, s 19(3).

69) 5-9인 이내의 상근 또는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되고 수상이 임명한다(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1991, s 1, Sch 1). 2002년 교육법에 의하여 ‘학교 교원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지만(s 130, Sch 22), 심의기관은 ‘학교교원심의기관’(School Teacher's Review Body)이라는 이름으로 존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원장은 수상이, 부위원장과 기타 위원은 장관이 임명하고 있다(EA 2002, s 119, Sch 11).

70) ‘교육훈련청’은 장관이 임명하는 8-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육기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직업으로서 교육을 장려하며, 교원양성을 위한 모든 방법의 질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원의 초보적 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 및 프로그램에서 학교 관련성을 보장하며, 교원이 학생의 영적, 윤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육체적 발전을 증진시키고 성인생활의 기회, 책임, 그리고 경험을 준비하는데 적합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EA 1994, ss 1, 2).

이 법은 타협의 소산으로 학생성적의 기초평가 및 목표, 지방교육청 및 학교 감사, 진로지도(career guidance) 및 교육,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기능과 관련하여 잘못 수행한 지방교육청에 대한 특별 제재는 없지만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며, 지방교육청에 대하여 행동장애아와 관련한 조치의 설정 계획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⁷²⁾ 그런데 보수당 개혁의 결과는 지방교육청의 기능 및 전략계획의 중요성을 감소시켰고, 중앙통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제 6 절 노동당정부 하의 교육법제의 발전 (1997-2006)

1. 노동당정부의 과제

1997년 5월 선거에서 승리한 노동당은 18년간의 보수당 정부를 종식시켰다. 노동당정부는 교육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1997년 7월 “학교의 우수성”(Excellence in Schools)이라는 백서를 출간하였고, 이 백서는 ‘학교기준 및 구조법’(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의 근거가 되었다. 백서는 종합화원칙(comprehensive principle), 국가교육과정, 학부모 선택권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 백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은 우리 내부에 있는 보물창고를 열 수 있다. 21세기에 지식과 기술은 성공의 열쇠가 된다. 우리들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잘 교육받고 일생동안 배울 수 있는 사회이다. 영국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유대 모두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 둘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훌륭한

71) 이 법은 1992년의 교육(학교)법(Education (Schools) Act) 및 1993년의 교육법 제5장(Part V of the EA 1993)을 통합하기 위한 법률이다.

72) EA 1997, s 9.

교원은 고등기준의 열쇠이다. 정부는 교원을 소중히 여기고 수년 동안 교원이 개발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모든 교원이 최상의 교육방법을 이해하고 그 이용방법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서비스의 제1 과업은 모든 아동이 읽고, 쓰고 이해하도록 교육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리를 완전하게 습득하는 것만이 기초를 다질 수 있다. 읽고 쓰는 능력 및 기본적 계산 능력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모든 기타 교과를 망라하고 능가하여 성공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좋은 교육은 이 나라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역사, 그리고 세계 속의 지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최고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⁷³⁾

또한 교육정책의 원칙으로 첫째, 교육은 정부의 핵심이고, 둘째, 정책은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기준은 구조 이상으로 중요하고, 넷째, 간섭은 성공에 대한 반비례이며, 다섯째, 평균이하(underperformance)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고, 여섯째, 정부는 증대된 기준을 실천한 모든 자와 연대할 것 등 6대 원칙을 천명하였다.⁷⁴⁾ 집권기간 동안은 물론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교육을 위하여 국가 수입의 비율을 증대시켜 갈 것을 선언하였고, 블레어 정부는 집권 후 학교 문제에 대항하고 아동이 성장하였을 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19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계획하였다.⁷⁵⁾ 이것은 모든 아동을 위하여 교육기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11세에는 읽고 쓰는 능력 및 기본적 계산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소수민족 출신 아동들의

73)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Excellence in Schools*, Cm 3681(TSO, 1997), p.9.

74) *Id.*, pp.11-13.

75) Secretary of State for School Security, *Opportunity for All: Tackl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Cm 4445 (TSO, 1999), p.45.

학업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⁷⁶⁾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한 노동당정부는 1998년 교육(학교대출)법(Education (School Loans) Act)을 제정하여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에 학생대출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교육 및 고등교육법’(Teaching and Higher Education Act)을 제정하여 교원의 등록, 자격 및 교육훈련과 그 감사와 같은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교원위원회’(General Teaching Council)를 구성하였다. 또한 계속 및 고등교육 학생을 위한 보조금, 대출, 그리고 수업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노동당 정부가 그 동안 제정한 학교에 관한 입법 중 가장 중요한 입법은 1998년의 ‘학교기준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모든 학령아동을 위한 교육기준을 증대하고, 유치원 학급규모를 제한하며, 교육활동영역을 설정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학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교육청 및 장관에게 부여하며, 신교육과정 및 운영위원회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고, 자택수업협정(home-school agreement)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재정지원청’(Funding Agency for Schools)을 해산하고, 독립형 재정지원학교의 폐교를 포함한 새로운 범주의 학교를 설립하며, 1979년과 1997년 사이에 이루어진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정 및 운영 통제권을 대체하고 개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교육기준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에 의한 학교감사제 및 문제 있는 학교에 대한 통제 또한 존속되었고, 국가교육과정도 계속 유지되었다.

1998년의 인권법(Human Rights Act)은 ‘유럽인권협약’(European

76) 2002년까지의 목표는 11세 아동의 80%가 영어에서 필요한 수준에 달하도록 하고, 75%가 수학에서 필요한 수준에 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는 60% 수준에 그치고 있었던 1996년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것이었다. DfEE, *Excellence in Schools*, p.19.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구체화하였고, ‘학습 및 기술법’(Learning and Skills Act)은 ‘계속교육재정지원위원회’(further education funding councils)의 전체 구조를 ‘학습·기술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s)로 변경하며, ‘특수교육 수요 및 장애법’(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Act)은 ‘특수교육 수요 및 장애 재정위원회’(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Tribunal)의 역할을 장애 학생 또는 입학희망자(pro prospective students)에게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혁신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2002년의 ‘교육법’과 2004년의 ‘고등교육법’이 있다.

2. 1998년의 학교기준 및 구조법

가. 지방교육청

1998년의 학교기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교육청의 역할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지방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 잉글랜드지방의 지방교육청은 주의회이다. 둘째, 잉글랜드의 구의 지방교육청은 구의회(district council)이다. 셋째, 런던자치구의 지방교육청은 자치구의회(borough council)이다. 넷째, 런던시 지방교육청은 런던시 시의회(Common Council of the City of London)이다. 다섯째, 웨일즈지방의 지방교육청은 주의회이고, 특별시 지방교육청은 특별시의회(county borough council)이다.⁷⁷⁾

지방교육청에는 그 기능을 대리할 최고교육공무원(chief education officer)이 임명되어야 하고, 교장,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이해관계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학교는 지방교육청이 결정한 교육회계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독립형 재정지

77) EA 1996, s 12.

원학교가 폐지되고, 학생재정지원청이 해산됨으로써 학교시설에 대한 지방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점차 많은 규제가 이루어지는데, 우선적으로 관할 구역 내의 교육개발계획(education development plans)을 준비하여야 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했다. 이것은 아동을 위하여 교육기준을 향상시키고, 학교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8년 학교기준법에 따라 지방교육청은 학교부지를 관리할 역할을 수행하여야 했고, 학교조직계획(school organisation plan)을 준비하여야 할 새로운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 계획에는 첫째, 지역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초중등교육시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지방교육청이 그 기능을 실행하고자 하는 방법, 둘째, 그런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청이 관할 구역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셋째, 특수교육수요를 가진 아동을 위하여 만들어야 하는 시설을 정해야 한다. 잉글랜드에서 이 계획은 학교조직위원회(school organisation committee)나 심판관(adjudicator)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규칙으로 계획의 준비 및 승인과 관련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⁷⁸⁾

나. 교육개발계획

지방교육청이 교육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포함한 학교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다. ‘교육개발계획’은 학교 기타 지방의 파트너와의 토론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1999년 4월까지 각 지방교육청이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 의하면 지방교육청의 광범한 책임을

78) SSFA 1998, ss 26(2)-(5). 잉글랜드와는 달리 웨일즈는 학교조직위원회 및 심판관의 임명은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SSFA 1998, s 27). 그러나 학교조직위원회는 2006년 ‘교육 및 감사법’(Education and Inspection Act: ‘EIA’)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제29조).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환경계획(school places planning), 지방경영계획 및 특수교육시설 등이 있다. 교육고용부의 ‘기준·효과부’(Standard and Effectiveness Unit)는 건전한 교육개발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지방교육청에 지침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재정적, 행정적 사안 등 광범위한 사안의 실행평가에 기초하며, 지방교육청에 대한 교육기준국의 감사 증거로 이용된다. 교육개발계획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기 전에 지방교육청은 교육기준국에 협의를 제안할 수 있다. 지방교육청은 목표 및 그 계획이 담고 있는 공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계획은 3년간 유효하고,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에 따라 추가연구 또는 지방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교육기준국에 명할 수 있다.⁷⁹⁾

교육기준을 향상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가 균형 있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압력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지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압력은 있었지만 기준 향상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교육, 학습, 리더십을 개선의 대가로 학교의 구조 및 조직이 중앙집권화 되었다. 압력과 지지의 조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는 더 나은 교육 및 학습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미 달성한 결과에 근거하여 실적 개선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잘 실천하고 지방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방교육청의 업무는 교육고용부의 압력과 지지를 통하여 개선될 것이며, 교육기준국의 감사가 이를 보완해 준다.⁸⁰⁾

다. 교육개발계획에 대한 감사

좋은 학교는 그 개선을 위한 책임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고등기준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2가지

79) DfEE, *Excellence in Schools*, pp.28-29.

80) *Id.*, pp.24-25.

형태의 외부감시장치가 있다. 즉, 모든 학교는 교육기준국의 감사를 6년마다 받아야 하고, 학교 실적은 지방교육청의 정기적 감독을 받는다. 지방교육청은 학교개선을 위하여 첫째, 최근의 심사·조사·감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둘째, 결과와 과정을 다른 학교의 데이터와 비교하며, 셋째, 학부모 및 지역의 관심사를 감독하고, 넷째, 연간 목표를 승인하며, 다섯째, 학교의 개선계획이 교육고용부가 설정한 국가기준을 충족하는가를 조사한다. 학교가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장 및 학교장과 토의하는데, 여기에는 지방교육청의 자문 및 지원서비스 지원 요청이 있어야 하고, 그 후 학교의 작위계획을 요청하는 공식적 경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선을 위한 효과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감사를 교육기준국에 요청하고, 보다 나은 개선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추가 이사를 임명하며, 마지막으로 학교의 예산집행위임권(budget delegation)을 박탈한다.⁸¹⁾

라. 학교조직위원회

모든 지방교육청은 관할구역을 위한 학교조직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 계획에는 관할구역의 주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교육을 위하여 관할구역 외부에서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⁸²⁾ 지방교육청이 준비한 학교조직계획은 학교조직위원회 또는 심판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⁸³⁾

학교조직위원회는 1998년의 학교기준법에 따라 그 구성이 강제되었고, 구체적 사항은 장관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률은 지방교육청 위원, 교육교구위원회가 추천한 자, 그리고 로마 가톨릭

81) *Id.*, p.28.

82) SSFA 1998, ss 26(1), (2).

83) SSFA 1998, s 26(5).

교회 교구의 주교가 추천한 자 등 각 1인이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뿐,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⁸⁴⁾ 규칙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으로 지방교육청위원과 학교단체위원, 그리고 교육교구위원회(Diocesan Board of Education), 로마 가톨릭 교회 교구의 주교(the bishop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diocese), 잉글랜드 계속교육재정지원위원회(Furt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가 각각 추천한 1-7인의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⁸⁵⁾

이 법에 의하면 학교조직위원회 내부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관이 임명하는 심판관이 새로이 임명된다.⁸⁶⁾ 위원회에서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이유는 학교조직계획에 대한 의결이 만장일치이기 때문이다.⁸⁷⁾ 만일 위원회에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심판관에게 그 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지방교육청은 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2월이 경과하여도 투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관에게 계획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심판관은 계획초안을 승인하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계획초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⁸⁸⁾

마. 교육개혁특구

1998년의 학교기준법은 사회적 소외(social exclusion)를 감소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교육개혁특구’(Education Action Zones: ‘EAZs’)를 도입하고 있다. 교육개혁특구를 도입한 목적은 첫째, 기업, 학부모, 지방교육청, 그리고 학교를 포괄한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고, 둘째, 기준

84) SSFA 1998, s 24.

85) Education (School Organisation Committee) (England) Regulation 1999, SI 1999/700, reg. 5(1).

86) SSFA 1998, s 25, Sch 5.

87) Education (School Organisation Plans) (England) Regulation 1999, SI 1999/701, reg. 8(4).

88) SSFA 1998, s 26(6)(e). Education (School Organisation Plans) (England) Regulation 1999, SI 1999/701, reg. 9. 심판관은 2007년 현재 최고심판관 1인과 심판관 9인 등 10인이 활동하고 있다.<<http://www.schoolsadjudicator.gov.uk/about1.cfm>>.

을 향상시키며, 셋째, 전체교육시스템을 학습할 수 있는 혁신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개혁특구는 장관이 특정 공립학교의 교육시설기준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학교 주변을 지정하는데,⁸⁹⁾ 각 지역마다 15-20개 학교가 지정된다.⁹⁰⁾ 최초의 경우 3년 동안 지정되지만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명령으로 장관이 당해 지역을 2년 더 계속하여 지정할 수 있다.⁹¹⁾ 73개 ‘대교육개혁특구’(large EAZs)와 40개의 ‘소교육개혁특구’(small EAZs)가 지정되어 있다.⁹²⁾ 전자는 1998년부터 지정되어 1999년까지 25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48개가 지정되었다. 소교육개혁특구는 1개의 중등학교 및 이 학교와 연합한 초등학교 및 계속학교로 구성되는데, 기준의 향상 및 우수도시(Excellence in Cities; ‘EiC’)⁹³⁾와의 긴밀한 연계를 목표로 한다. 교육개혁특구는 2005년 4월부터 ‘우수클러스터’(Excellence Cluster)나 ‘우수도시개혁특구’(EiC Action Zone)로 전환되었다.⁹⁴⁾

교육개혁특구의 학교는 교원 봉급 및 고용조건에 관한 법정국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교원에 보다 높은 봉급을 지불할 수 있다.

89) ‘교육개혁특구’는 교육시설기준의 개선 외에 교육 및 학습 자질의 개선, 사회적 일체성(social inclusion), 가족 및 학생 지원, 기업 및 기타 조직과의 연대를 목적으로 한다.

90) 대개 2-3개 중등학교와 그 부속초등학교(feeder primary school)로 구성되는데, 2002년의 교육법 개정으로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생위탁단(pupil referral units) 및 사립학교도 포함된다. EA 2002, Sch 15, para 2(2).

91) SSFA 1998, ss 10(1), (2).

92) <<http://www.teachernet.gov.uk/management/atoz/e/educationactionzones/>>.

93) 1999년 3월 시행된 ‘우수도시’ 프로그램은 가난한 지역의 불우 학생들의 재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즉, “학교에서 최상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인격적·학문적 지원을 하여 가장 불만을 갖고 상처받기 쉬운 학생 가운데 출석불량, 행동불량, 그리고 제적률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Ofsted, *Excellence in Cities and Education Action Zones: Management and Impact*, HMI 1399 (Ofsted, 2003), p.7.) 또한 전체 재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시설을 증대하며, 지방교육청과 학교 사이의 교육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ibid.*, p.10). 전국적으로 1,300개 이상의 중등학교와 3,600개 이상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막대한 수준의 재정적 투자가 있었고, 교육 및 학습에 새로운 접근방법이 시도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계속적인 기대치 상승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됨으로써 수많은 청소년의 생활에 행운을 안겨 주었다.

94) <<http://www.teachernet.gov.uk/management/atoz/e/educationactionzones/>>.

또한 교육과정의 유연성도 인정되므로 국가교육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초 25개 대교육개혁특구가 지정된 첫 해에 13개 특구가 유연한 국가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그밖에 일체성(inclusion) 증진을 목표로 예술가적 프로젝트(artistic project), 아침식당, 멘토링 및 상담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⁹⁵⁾

교육개혁특구에는 교육개혁포럼(Education Action Forum)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포럼은 교육시설 기준의 향상을 목표로 특구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포럼의 구성은 장관의 명령에 의하는데 교육개혁특구 참여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임명하는 1인과 장관이 임명하는 1-2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밖에 학교, 지방교육청, 학부모, 기업 및 지역사회의 대표자로 구성된다.⁹⁶⁾ 포럼은 국립회계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에 연차회계보고서(annual accounts)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그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 관행은 아니지만, 1개 이상의 교육개혁특구의 학교를 대신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⁹⁷⁾ 만일 이것이 제안되는 경우에는 학교와 포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⁹⁸⁾ 교육개혁특구는 사회적 약자(social disadvantage) 출신이고 학습이 부진한 아동과 청소년의 재능 및 참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데, 이를 통하여 읽고 쓰는 능력 및 기본적 계산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홈웍센터(homework center)를 제공하며, 기술, 언어, 스포츠 또는 예술과 같은 영역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95) Ofsted, *Excellence in Cities and Education Action Zones: Management and Impact*, HMI 1399 (Ofsted, 2003), p.16.

96) SSFA 1998, s 11(3). EA 2002, Sch 15, para 2.

97) Education Action Forum (Proceedings) Regulation 1998, SI 1998/1964.

98) <<http://www.teachernet.gov.uk/management/atoz/e/educationactionforum/>>.

바. 교원위원회

교직(teaching profession)을 현대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⁹⁹⁾ 정부는 우선적으로 1998년의 ‘교육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교원위원회’(General Teaching Council: ‘GTC’)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회(Law Society) 또는 의사협회(General Medical Council)와 유사한 대의기관이지만, 그 구성과 역할에 있어서 장관에 의한 통제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다른 직무단체와는 달리 덜 자율적이다.¹⁰⁰⁾ 이 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첫째, 교육의 기준 및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둘째, 교원들 사이의 직무기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⁰¹⁾ 위원회는 교육기준, 교원지도기준, 교직의 역할, 교원의 훈련, 경력개발 및 성과관리, 교원모집, 교육을 위한 의학적 적합성(medical fitness)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장관 및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¹⁰²⁾ 또한 교원등록부를 유지할 수 있고, 등록 신청 또는 등록부 기재사항의 복원이나 유지 등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정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등록된 교원에게 요구되는 직무 및 실무 기준을 규정한 규칙을 발하거나 개정할 권한을 갖는다.¹⁰³⁾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선출되거나 임명되는데 임기 등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¹⁰⁴⁾ 위원회 위원은 교원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학부모 및 직원도 참여한

99) 그 배경은 1997년의 ‘학교의 우수성’(Excellence in Schools)이라는 백서에 근거하고 있다. 이 백서에서 ‘교원은 학생의 학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원 또는 교장의 실적이 인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행동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DfEE, *Excellence in Schools*, p.25.

100) Harris, *Education, Law and Diversity*, p.111.

101) Teaching and Higher Education Act (‘THEA’) 1998, s 1(2).

102) THEA 1998, s 2(1).

103) THEA 1998, ss 3-7.

104) THEA 1998, Sch 1, para 3.

다. 교원위원회는 ‘직무윤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 법은 교장에게 ‘교장자격’(professional headship qualification)을 보유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였다.¹⁰⁵⁾

사. 수업료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지방교육청은 당해 지역의 일반 거주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했었다(의무적 수여(mandatory awards)). 그 대상은 공적 자금을 의하여 유지되고 지원되는 대학 등에 출석을 잘하고, 최초 교원훈련과정 및 기타 과정에 출석한 자에 한하였다.¹⁰⁶⁾ 또한 법률실무과정(Legal Practice Course) 또는 변호사직업과정(Bar Vocational Course)과 같은 과정에 출석하는 의무교육학령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재량적 수여(discretionary awards)).¹⁰⁷⁾ 그러나 1998년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와 같은 모든 제도가 폐지되었다. 보조금 및 대출금이 인정되었는데 그 대상은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계속교육까지 확대되었다.¹⁰⁸⁾ 가계 조사에 기초한 수업료 지불제도가 도입되었는데,¹⁰⁹⁾ 비유럽연합 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업료가 부과되었다. 학생대출은 특정 고등교육과정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데, 대출금은 유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 학생대출주식회사(Student Loans Company)에서 받을 수 있었다. 1996년의 교육(학생대출)법은 장관에게 학생대출주식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학생에게 대출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재정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1998년부터는 대출을 민간부문으로 양

105) THEA 1998, s 18.

106) EA 1962, s 1.

107) EA 1962, s 2.

108) THEA 1998, s 22.

109) The Education (Mandatory Awards) Regulations 2001, SI 2001/1734.

도하였고,¹¹⁰⁾ 가계조사에 기초한 ‘低利’(low interest)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¹¹¹⁾

아. 기 타

노동당정부는 수 년 동안 지속하여 왔던 강력한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 교육체계의 자유화를 추진하고자 한 반면에, 학생의 학습수준의 향상 및 사회적 일체성을 계속 강조하였다.¹¹²⁾ 결국 자유는 규제와 통제의 구조 속에서 허용되었고, 규제는 체계의 보다 많은 다양성을 도입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으며,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범위와 특성은 점차 확대되었고, 학교 교육과정 내의 보다 많은 유연성이 도입되었다. 특히 학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잉글랜드의 아동¹¹³⁾이 성취한 교육기준의 향상’을 예정하여 적격기관(qualifying bodies)¹¹⁴⁾에 의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¹¹⁵⁾ 또한 장관 또는 웨일즈국민의회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교육입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적격기관에 대해 면제하는 명령을 발하거나 입법 효력을 유예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¹¹⁶⁾ 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교육시스템의 경험적 시험계획(experimental pilot project)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110) Student Loans Regulations 1998, SI 1999/211.

111) THEA 1998, s 22.

112)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Schools: Achieving Success*, Cm 5230 (TSO, 2001); Welsh Assembly, *The Learning Country* (Y wlad sy'n Dysgu) (Cardiff, National Assembly for Wales, 2001); Harris, *Education, Law and Diversity*, p. 113.

113) 19세 이하의 자를 의미한다. EA 2002, s 1(3).

114) ‘적격기관’은 ‘지방교육청, 교육개혁포럼, 적격학교의 운영위원회, 공립이 아닌 장관 또는 웨일즈 국민의회에 의하여 인가된 특수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또한 ‘적격학교’(qualifying school)는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 재단설립 또는 임의기부제 학교, 지역사회 또는 재단설립 특수학교, 공립유치원, 도시중등기술학교, 도시중등예술기술 학교, 전문학교’를 말하는데, 공립학교가 학교실적, 학교 리더십의 질, 그리고 학교 경영의 질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학교”가 된다. EA 2002, ss 1(3), 6(1).

115) EA 2002, s 1(1).

116) EA 2002, s 2.

종교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단체가 지방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설립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규정도 두고 있다. 잉글랜드의 지방교육청은 추가중등학교(additional secondary school)로서 지역사회학교, 재단설립학교, 임의기부제학교, 전문학교의 설립을 위한 제안을 권유하는 공고를 할 수 있다.¹¹⁷⁾ 공고할 때에는 가능한 학교부지의 확인, 제안서 제출 기한, 기타 사안의 지정, 그리고 공고 방식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안서에는 소정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공고할 때 지정하는 기한 전에 지방교육청에 제출되어야 한다.¹¹⁸⁾ 또한 장관은 일정지역 내의 초등 또는 중등 교육시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교육청에 제안을 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이 인정하고 있다.¹¹⁹⁾ 잉글랜드의 학습·기술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 또한 제6학년학교(또는 상급중등학교, sixth forms)의 설립, 변경 및 폐쇄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반면에, 지역사회학교 운영위원회는 소정의 학교변경 - 학생증원 또는 시설의 확충 등 - 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¹²⁰⁾

제 7 절 2002년 교육법

1. 주요내용

2002년 개정된 교육법은 2차 입법을 통하여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중앙권력을 창조함으로써 교육법을 현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합학교(federated schools) 또는 그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기준법의 관련규정을 규칙으로 개정할 수 있

117) EA 2002, ss 70(1), (2).

118) EA 2002, ss 70(3), (4).

119) EA 2002, ss 71, 75, Sch 10.

120) EA 2002, ss 72, 73, Sch 9.

다.¹²¹⁾ 입법은 전면적 개혁을 위한 원칙적 도구인데 법률은 신속한 개혁을 위해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고, 상세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 교육시스템을 개혁할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¹²²⁾ 교육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1차 입법에서 2차 입법, 즉 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2002년 교육법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뿐만 아니라 북아일랜드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1997년의 교육법 규정¹²³⁾을 개정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상 잉글랜드 또는 웨일즈에 각각 적용되는 규정도 있다.¹²⁴⁾

2002년 교육법은 공립학교 경영에 관한 책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명령에 따르고,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위탁사항 설정, 지방교육청·운영위원회·교장의 공립학교 운영과 관련한 각각의 역할 및 책임 규정, 운영위원회 및 교장의 기능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¹²⁵⁾ 또한, 규칙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의 보고서를 복사하여 특정인에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요건, 보고서 작성 언어 및 형식과 지방교육청의 추가언어(additional language)와 형식에 관한 명령의 준수 등에 관한 규정을 할 수 있다.¹²⁶⁾ 그밖에 학교재산과 관련하여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학교재산 점유 및 이용에 관한 통제와 관련한 규정을 ‘학교재산통제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¹²⁷⁾ 학교 직원과 관련하여 교원 및 기타 직원의 임명, 훈련,

121) EA 2002, s 25(1). ‘연합학교’가 되는 경우 비록 복수의 학교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학교로 취급하고 하나의 운영위원회를 가져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연합은 2 이상의 공립학교, 1 이상의 공립학교 연합 또는 2 이상의 연합학교의 운영위원회가 그 대상이 된다. EA 2002, ss 24(1), (2).

122)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Schools: Achieving Success*, p.71.

123) 이 법에 의하면 자격·교육과정청(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을 설립하여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서 교육 및 훈련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EA 1997, ss 21-22).

124) 2002년 교육법 제6편(ss 76-96)은 잉글랜드에만, 그리고 제7편(ss 97-118), 제191조-제198조는 웨일즈에만 적용된다.

125) EA 2002, s 21.

126) EA 2002, s 30(2).

정직 및 해임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청, 운영위원회, 그리고 교장에 대한 기능 부여에 관한 규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¹²⁸⁾

2002년 교육법은 학교가 지역사회 내에서 하여야 할 광범한 역할을 인식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직접, 연합 또는 외부단체와 함께 학교부동산을 이용하여 보육 및 기타 서비스를 행할 권한을 인정하였다.¹²⁹⁾ 그 결과 학교는 학생이나 가족, 또는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선목적의 시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¹³⁰⁾

재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청 및 학교에 새로운 재정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기능을 위한 ‘지방교육청예산’(LEA budget) 및 학생 지출에 관한 ‘학교예산’(school budget),¹³¹⁾ 그리고 개별학교의 통제 하에 있는 학교회계인 ‘개별학교예산’(individual school budget)에 관하여 새로이 정의하고 있다.¹³²⁾ 지방교육청은 규칙에 따라 학교 재정지원에 관하여 학교 의견을 대표하는 ‘학교포럼’을 구성하여야 한다.¹³³⁾ 또한 최저수준의 학교예산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과 웨일즈 국민의회에 부여하였다.¹³⁴⁾ 또한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정해진 계좌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¹³⁵⁾를 준비하며, 회계검사

127) EA 2002, s 31.

128) EA 2002, s 35(5).

129) EA 2002, Pt 2.

130) EA 2002, s 27.

131) 학교예산 규모는 지방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재정위임계획’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의한다. 재정위임계획에는 학교 수, 건물의 위치 및 디자인, 학생 수, 연령, 그리고 특별한 요구 등이 포함된다.

132) EA 2002, s 41; SSFA 1998, s 45A.

133) EA 2002, s 43; SSFA 1998, s 47A. 학교포럼은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학교위원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위원의 5분의 1을 넘지 않는 비학교위원을 둘 수 있다. 학교위원에는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1인 이상의 특수학교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세한 것은 2002년 학교포럼(잉글랜드)규칙(The Schools Forums (England) Regulations) 2002, SI 2002/2114).

134) EA 2002, s 42; SSFA 1998, s 45B.

135) 재무제표는 또한 민간자금과 관련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EA 2002, s 45.

를 준수하여야 하고, 장관 및 웨일즈 국민의회에 계좌와 재무제표의 복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¹³⁶⁾

2. 보육문제

2002년 교육법은 사회적 일체성을 강조하면서 보육 및 유치원교육¹³⁷⁾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청은 매년 관할 지역 내 보육시설의 충분성을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 때 관할구역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및 때때로 장관이 발하는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¹³⁸⁾ 또한 지방교육청은 관할구역 내의 보육시설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서비스를 실시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기능, 형식 및 내용과 관련하여 장관이 발한 지침을 고려하여야 하고,¹³⁹⁾ 유치원운영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¹⁴⁰⁾

보육시설은 1997년의 ‘국가보육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 및 ‘슈어스타트’(Sure Start) 계획에 따라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국가보육전략에 따라 2001년까지 거의 40만개의 보육시설이 만들어졌고, 2003년 3월에는 70만개, 2004년 3월에는 그 수가 110만 3천개소, 그리고 2007년 3월에는 128만개소로 확대되었다.¹⁴¹⁾ 1997년부터 시작된 슈어스타트정책은 빈곤층 아동이 어렸을 때부터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 독

136) EA 2002, s 44.

137) 초등학교가 2세 이상 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유치원(nursery school)이다(EA 1996, s 6(1)).

138) EA 2002, s 150(1).

139) EA 2002, s 149. SSFA 1998, s 118A.

140) EA 2002, ss 153, 155.

141) DfES, *Departmental Report 2007*, Cm 7092 (TSO, 2007), p.17; Secretary of State for Social Security, *Opportunity for All, The Annual Report for 2001*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1);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Opportunity for All, Fifth Annual Report 2003*, Cm 5956 (TSO, 2003), p.50.

립기구인 ‘사회소외단’(Social Exclusion Unit)이 맡고 있는데, 위원회에는 보건부, 교육고용부, 환경교통부, 노동연금부 등 총 6개 정부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빈곤 아동의 문제는 한 부처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을 통해 소득하위계층 20% 지역에 살고 있는 생활보호아동에 대한 교육 및 정서장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그 가족에게 보육 인력 및 시설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실직부모 구직활동 등을 지원한다. 2007년 4월에 1,250개 이상의 ‘슈어스타트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er)가 설립되어 5세 미만인 100만 명의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2,500개 이상의 센터로 확대하여 열악한 지역의 모든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10년에는 3,500개 이상의 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¹⁴²⁾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빈곤아동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보육문제에 학교를 관련시킨 것은 시설부족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과 교육이 상호 관련하는 데 근거하고 있다. 즉, ‘훌륭한 조기 교육 및 보호 사이의 현저한 차이는 없다. 양자는 안전한 복지 관련 환경에서 아동의 사회적, 지적 개발을 증진한다.’¹⁴³⁾ 1998년 11월과 1999년 3월 발간된 2개의 백서¹⁴⁴⁾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회서비스를 위한 제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보건기준법(Care Standards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잉글랜드에서 국가보건기준위원회(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로 알려

142) DfES, *Departmental Report 2007*, p.38.

143)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Secretary of State for Social Security and Minister for Women, *Meeting the Childcare Challenge*, Cm 3959 (TSO, 1998); Scottish Executive, *Regulation of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The Way Ahead* (Scottish Executive, 1999); Harris, *Education, Law and Diversity*, p.118.

144) *Modernising Social Services*, Cm 4169 (TSO, 1998); *Building for the Future*, Cm 4051 (TSO, 1999).

진 사회보전 및 민간·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독립규제 기구를 설치한다. 둘째, 웨일즈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규제기관을 웨일즈국민의회의 기관으로 설치한다. 셋째, 사회보전근로자를 등록하기 위하여 새로운 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보전 근로기준을 설정하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회복지사(social workers)의 교육 및 훈련을 관리한다. 넷째, 웨일즈에 아동위원(Children's Commissioner)의 직을 둔다. 다섯째, 청소년을 위한 보육사 및 탁아시설에 관한 규정을 개혁한다.¹⁴⁵⁾

제 8 절 2005년 교육법

1. 주요내용

2004년 1월 정부는 학교개선과정의 단순화, 데이터 흐름의 개선 및 학교책임구조를 강화할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발표하였다. 2004년 2월에는 교육기준국의 자문문서(consultation document)인 “감사의 미래”(Future of Inspection)가 출판되었다. 이 문서는 보다 단기이고 정기적이며 덜 부담스러운 감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정책문서화 - ‘학교와의 새로운 관계’(New Relationship with Schools) - 되어 정부와 교육기준국이 공동으로 2004년 6월에 출간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특히 2006년부터 모든 학교의 ‘3년 회계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학교 또는 대체학교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프로모터들의 제안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을 위하여 2005년 교육법은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고, ‘교원교육훈련청’(Teacher and Training Agency; ‘TTA’)의 권한을 확대하며, 그리고 제적된 학생의 대안교육시설의 출석강제, 공립학교의 제

145) Care Standards Act 2000.

한된 고등교육 시설 및 재정지원, 재단설립학교의 토지처분 제한, 연간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잉글랜드 지방교육청의 의무 등과 같은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잉글랜드의 지방교육청은 규칙으로 당해 기관에 의하여 지원되는 학교 학생 및 의무교육학령자의 교육성과에 관하여 연간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규칙에는 첫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는 사안을 특정하고, 둘째, 제안된 목표가 정해진 시간에 장관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셋째, 장관에게 통지된 제안목표를 수정하거나 지방교육청이 제안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된 제안목표를 통지하도록 할 권한을 위임하고, 넷째, 목표가 정해진 시간까지 정해지도록 하며, 다섯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청이 목표를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¹⁴⁶⁾

2. 국가수석장학관

여왕은 추밀원령으로 잉글랜드의 국가수석장학관(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Schools)과 장학관을 임명할 수 있다. 임기는 5년 이하로 하고, 언제든지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사직할 수 있으며, 무능력 또는 비행을 근거로 여왕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¹⁴⁷⁾ 국가수석장학관은 장관이 첫째, 잉글랜드의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 둘째, 그 학교 교육의 학생 수요 충족 정도, 셋째, 그 학교에서 달성한 교육기준, 넷째, 그 학교 학생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 다섯째, 그 학교의 리더쉽 및 학교가 이용 가능한 자원의 효과적 관리 여부를 포함한 관리의 질, 여섯째, 학생복지¹⁴⁸⁾에 대한 그 학교의 기여도, 일곱째, 그 학교의 자기평가(self-evaluation)를 위한 정확한 내부절차의 개발 정도,

146) EA 2005, s 102.

147) EA 2005, s 1.

148) 복지는 ① 육체적·정신적 건강 및 감정적 복지, ② 해악 및 무시로부터 보호, ③ 교육, 훈련 및 오락, ④ 사회에 대한 기부금, ⑤ 사회적·경제적 복지를 의미한다. Children Act 2004, s 10(2); Childcare Act 2006, s 1(1).

여덟째, 그 학교 학생의 행동 및 출석 상황 등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¹⁴⁹⁾ 이에 대하여 장관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언 및 잉글랜드의 특정 학교 또는 학급에 대한 감사와 보고를 국가수석장학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¹⁵⁰⁾

3. 학교 교육훈련 및 개발청

1994년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교육훈련청’은 장관이 임명하는 8-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은 학교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교원양성의 경험 및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나 고등교육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¹⁵¹⁾ 이 기관은 2005년 교육법에 의하여 ‘학교 교육훈련 및 개발청’(Training and Development Agency for Schools)으로 개칭되었다.¹⁵²⁾ ‘학교 교육훈련 및 개발청’은 학교가 수행하는 교육 및 기타 활동 기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의 질과 효율성을 증진하며, 교원의 초보적 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 및 프로그램에 학교가 포함되는 것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한다.¹⁵³⁾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교 교육훈련 및 개발청’은 학교가 아동 및 청소년의 영적, 도덕적, 능동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개발을 증진하고, 그들의 복지에 기여하며, 인생의 기획, 책임, 그리고 경험을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¹⁵⁴⁾ 이 기관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의장을 임명한다.¹⁵⁵⁾ 그 목표의 수행을 촉진하기

149) EA 2005, s 2(1). 네 번째까지는 1996년의 교육감사법(School Inspection Act) 제2조 제1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다.

150) EA 2005, s 2(2).

151) EA 1994, s 2.

152) EA 2005, s 74.

153) EA 2005, s 75(2). ‘학교’ 중심으로 목적을 규정한 2005년 교육법과 달리 1994년의 교육법은 ‘교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EA 1994, s 1.

154) EA 2005, s 75(3).

155) EA 2005, s 77.

위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학교 구성원, 학교 구성원이 되고자 훈련 중인 자, 교육훈련제공자, 학교 구성원의 고용주 또는 장래적 고용주가 포함되어야 한다.¹⁵⁶⁾

4. 학교출석의 강제

2002년 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대안시설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¹⁵⁷⁾ 그렇지만, 일정기간동안 정학된 학생 또는 제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학생은 출석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대안교육시설(alternative educational provision)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의 교육법은 1996년의 교육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의무교육학령 아동의 모든 부모는 아동이 학교 또는 기타 장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연령, 능력, 재능, 그리고 일정한 특수교육수요에 적합한 전일제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¹⁵⁸⁾ 만일 학교에 등록된 의무교육학령아동이 일정하게 출석하지 않는 경우¹⁵⁹⁾ 학부모를 처벌한다.¹⁶⁰⁾

의무교육학령아동이 어느 학교에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방교육청

156) EA 2005, s 78. 교육훈련제공자의 경우에는 그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질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한다(s 79(7)(b)).

157) EA 2002, s 29(3).

158) EA 1996, s 7.

159) 예외적으로 지방교육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EA 2005, s 116(7))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질병 또는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한 결석, 아동의 집으로부터 등록학교가 보행거리(walking distance) 내에 있지 않거나 등하교 교통수단, 학교 근처의 탑승시설, 또는 집에서 보다 가까운 학교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교육청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보행거리’는 이용 가능한 최단 노선을 측정하여 8세 미만의 아동은 3.218688Km(2마일), 8세 이상의 아동은 4.828032Km(3마일) 이내여야 한다(EA 1996, ss 444(3)-(5), (9)).

160) EA 1996, s 444(1). 제3수준의 벌금에 처한다(EA 1996, s 444(8)). ‘표준양형’(standard scale)에 따르면 벌금은 5개의 수준으로 구별되며, 각 수준에 따라 벌금액이 다르다. 즉, 제1수준은 최대 200파운드, 제2수준은 최대 500파운드, 제3수준은 최대 1,000 파운드, 제4수준은 최대 2,500파운드, 제5수준은 최대 5,000파운드를 벌금액으로 한다.

은 학교 또는 가정 이외의 교육시설에 조치를 하고 학부모에게 조치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가 학교이고 아동이 그 학교에 등록하였다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학부모를 처벌한다.¹⁶¹⁾ 또한 의무교육학령아동이 제적되고, 학교등록 학생으로 한 동안 남아 있으며, 일정한 지도 또는 훈련을 받을 목적으로 학교 이외의 시설에 출석하도록 강제되고,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이 통지된 경우, 출석이 강제된 장소가 학교이고 학생이 그 학교에 등록된 학생이라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학부모를 처벌한다.¹⁶²⁾

5. 재정지원

2005년 교육법 이전만 하더라도 지방교육청은 ‘지방정부재정법’(Local Government Finance Act)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자원을 이용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학교예산’ 및 ‘지방교육청예산’을 매년 정하고 또한 연간기준으로 학교 예산공유를 계상한다. ‘예산공유’(budget share)란 개별학교 예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일정 항목에 대하여 지출할 예산을 공제한 후 학교예산으로 남아 있는 총계를 의미한다.¹⁶³⁾ 지방교육청의 학교재정지원조치와 관련하여 학교포럼은 자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¹⁶⁴⁾

1998년의 학교기준법은 학교예산과 지방교육청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¹⁶⁵⁾ 각각의 예산에 포함된 지출의 종류 및 항목과 금전이 이용될 수 있는 목적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¹⁶⁶⁾ 또한 지방교육

161) EA 2005, s 116(1).

162) EA 2005, s 116(2).

163) SSFA 1998, s 47.

164) EA 2005, Sch 16, para 7; SSFA. 1998, s 47A(3).

165) SSFA 1998, ss 45A(1)-(3).

166) EA 2002, s 41(1); SSFA 1998, s 45A(4); EA 2005, Sch 16, para 3(7). 또한 예산 공유 계상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규정할 수 있다(SSFA 1998, s 47).

청예산, 학교예산 및 개별학교예산 공유의 재정지원기간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¹⁶⁷⁾

지방교육청의 학교예산 총액은 장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학교 예산에 적용되는 조건에 적용되는 기타 법률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¹⁶⁸⁾ 잉글랜드에서 장관이 지급하는 보증보조금(ring-fenced grant)은 지방교육청이 SFSS(Schools Formula Spending Share)에 근거하여 지출하는 세입지원보조금(Revenue Support Grant)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웨일즈에서는 의회가 계속하여 지방정부의 세입조정(revenue settlement)을 통하여 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⁶⁹⁾

잉글랜드의 지방교육청은 규칙으로 재정지원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학교예산을 48월 이내의 재정지원기간 동안 편성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 학교예산을 통지하도록 강제하며, 재정지원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재결정할 수 있다.¹⁷⁰⁾ 본래 이 규정은 잉글랜드에서 지방교육청이 특정 요일에 학교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웨일즈 국민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재정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웨일즈의 지방교육청이 다음 년도 학교예산의 총액을 결정하고, 국민의회와 운영위원회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을 정할 수 없다.¹⁷¹⁾ 지방교육청이 제출한 학교예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장관 또는 국민의회는 최소한의 학교예산을 결정할 수 있다.¹⁷²⁾

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고등수준의 직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고등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¹⁷³⁾의 학교 학생에게 필요한 시설을 마련해

167) EA 2005, Sch 16, para 4(3). SSFA 1998, ss 45AA(3), 45AC(3).

168) EA 2005, Sch 16, para 3(5); SSFA 1998, s 45A(2a).

169) EA 2005, Sch 16, para 3(5).

170) EA 2005, Sch 16, para 4; SSFA 1998. s 45AA.

171) EA 2005, Sch 16, para 4; SSFA 1998. ss 45AB, 45AC.

172) EA 2005, Sch 16, para 5.

줄 권한이 있다. 웨일즈국민의회는 웨일즈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가 고등수준의 직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고등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의 시설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거나 해줄 수 있다.¹⁷⁴⁾

6. 재단설립학교

2005년 교육법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재단설립학교의 토지,¹⁷⁵⁾ 즉, 본래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토지처분과정에서 구입한 토지의 처분에 관한 1998년의 학교기준법 별표 22를 개정하고 있다.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운영위원회 또는 재단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장관은 동의할 때 운영위원회 또는 재단법인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를 처음으로 제공하였던 지방교육청에 양도하거나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칠 수 있다. 토지를 처분하는 수탁자(trustee)¹⁷⁶⁾는 장관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 토지를 처음으로 제공하였던 지방교육청에 보상하여야 한다.¹⁷⁷⁾ 이를 위하여 학교토지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수탁자에

173) ERA 1988, ss 1(g), (h).

174) EA 2005, s 105; EA 2002, s 28A.

175) 재단은 학교를 위하여 신용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일정한 人(법인 여부는 관계없지만 운영위원회는 제외함.)의 집단(group) 또는 재단법인(foundation body)을 의미한다(SSFA 1998, s 21(3)(a)). 재단법인은 재단설립학교이든 임의기부제학교이든 3개교 이상과 관련하여 첫째, 학교의 목적을 위하여 학교재산을 보유하고, 둘째, 학교재단 이사를 임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corporate body)을 의미한다. ‘집단’은 재단법인과 관련하여 법인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3개교 이상의 집단을 의미한다(SSFA 1998, s 21(4)). 공립학교의 범주에 속하는 재단설립학교는 첫째, 1998년의 학교기준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을 보유하는 경우, 둘째, 재단법인(foundation body)이 1998년의 학교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행위하는 학교집단에 속하는 경우, 셋째, 기타 첫째, 둘째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SSFA 1998, s 21(1)).

176) 학교와 관련하여 수탁자는 학교목적을 위하여 신용으로 재산을 보유하는 운영위원회 이외의 人(person)을 의미한다. SSFA Sch 22, para 9.

177) 이 원칙의 유일한 예외는 재단 없는 학교가 재단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게 양도되어야 하지만, 수탁자는 토지를 처음 제공한 지방교육청에 보상할 의무는 없다.

2005년 교육법도 모든 재단설립학교 토지의 처분 주체가 토지처분운영위원회나 재단법인 또는 수탁자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재단설립학교의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동의할 때 장관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적용되는 이 규정의 목표는 더 이상 재단설립학교에 필요하지 않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토지를 다른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단설립학교의 수탁자는 특수한 경우에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첫째, 새로운 재단설립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제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청에서 수탁자로 양도된 토지, 둘째, 학교가 재단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재단으로 학교의 범주를 변경하기 위한 제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청에서 수탁자에게 양도된 토지, 셋째, 제안을 이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방교육청에서 수탁자에게 양도된 토지,¹⁷⁸⁾ 넷째, 장관이 발한 이전의 지시에 따라¹⁷⁹⁾ 기존 또는 새로운 공립학교의 수탁자에게 양도된 토지, 다섯째, 위에서 열거된 상황에서 획득된 토지의 처분과정에서 획득되거나 개량된 기타 토지, 여섯째, 토지가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처음으로 양도되거나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양도된 토지 처분과정에서 획득하거나 개량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에게 또는 다른 재단이나 학교 이사회에서 수탁자에게 양도된 토지의 경우에 적용된다.¹⁸⁰⁾

178) 예를 들면, 폐교 및 재개교 없이 근처의 다른 장소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1998 SSFA Sch. 3, para 2.

179) 지시는 학교가 폐교되었지만 다른 학교를 설립하거나 개조하기 위한 제안과 관련된 경우에 발한다.

180) EA 2005, Sch 17, para 4; SSFA 1998, Sch 22, para 2A.

장관은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의할 때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탁자가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교육청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고, 처분과정에서 지방교육청이 보상하도록 지시 등을 할 수 있다.¹⁸¹⁾ 수탁자가 학교 토지를 비교육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할 때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¹⁸²⁾

7. 2005년 교육법에 의한 학교 감사

가. 교육감사와 자기평가서

2004년 교육기준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은 자문문서인 “감사의 미래”(The Future of Inspection)에서 “감사는 학부모, 학교, 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기대하는 모든 학생을 위하여 고등기준, 계속적 향상, 그리고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감사시스템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목적은 첫째, 단기간으로 덜 번거로우며 보다 빈번한 감사를 도입하고, 둘째, 공급자에게 행하여진 감사통지기간을 현저하게 감경하며, 셋째, 국가감사단(Her Majesty's Inspectorate: ‘HMI’)과 독립장학관 사이의 긴밀한 접촉을 보장하고, 넷째, 학교가 제공한 모든 학생서비스의 양상을 실현하는 것이다.¹⁸³⁾ 새로운 감사시스템은 시기, 장학관의 수, 보고서 양 등의 처리문제와 관련 없는 자기평가(self-evaluation) 및 감사주체라는 2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학교감사가 자기평가에 근거하고, 특히 학교가 자기평가서(self-evaluation form: ‘SEF’)를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주요한 변화이다. 자기평가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첫째, 엄격한 자기평가는

181) SSFA 1998, Sch 22, para 2A(4).

182) SSFA 1998, Sch 22, para 2A(6).

183) Ofsted, *The Future of Inspection*, HMI 2057 (Ofsted Publication Centre, 2004), p. 10.

학교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감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둘째, 학교는 일상적 관리시스템을 단순화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스스로 형성하여야 하며, 셋째, 학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넷째, 학교의 자기평가 과정을 서면으로 요약하여 최소 매년 최신의 것으로 하여야 하는데,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¹⁸⁴⁾ 자기평가서는 학교가 첫째, 감사일정과 대비하여 경과를 평가하고, 둘째, 평가가 근거한 주요 증거를 명백히 하며, 셋째, 장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넷째, 학교가 약점을 치유하고 장점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¹⁸⁵⁾ 그밖의 주요한 변화는 교육기준국과의 계약에 따라 장학관보(assistant inspectors)와 함께 학교감사를 하는 등록장학관(Registered Inspector)을 폐지하고, 국가감사단 또는 보조장학관(additional inspectors)이 학교감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나. 보조장학관

국가수석장학관(Her Majesty's Chief Inspector: 'HMCI') 및 국가장학관의 직은 국왕이 임명하는데, 국가장학관은 국가수석장학관의 부하직원이다. 국가수석장학관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지만 무능력 또는 위법행위를 이유로 해임될 수 있다.¹⁸⁶⁾ 국가수석장학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이 감사에 요구되는 경우에는 '보조장학관'을 임명할 수 있다.¹⁸⁷⁾ 새로운 학교감사시스템에 따르면 국가수석장학관은 등록장학관 명단을 유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다수의 장학관은 '감사서비스공급자'(inspection service providers)를 의

184) Ofsted, *A New Relationship with Schools: Improving Performance through School Self-Evaluation* (DfES and Ofsted, 2004), p.4.

185) Ofsted, *Inspection Matters*, Issue 2, 2005. 9.

186) EA 2005, s 1.

187) 또한 국가수석장학관은 그밖에 행정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EA 2005, Sch 1(1)).

미하는 민간부문의 회사가 공급하는 보조장학관이 될 수 있다.¹⁸⁸⁾

국가수석장학관은 보조장학관의 자격요건, 경험, 그리고 기술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설명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설명서에는 보조장학관이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 및 그들이 증명하여야 하는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¹⁸⁹⁾ 국가수석장학관은 보조장학관의 자격요건 및 경험기준을 준수하도록 ‘감사서비스공급자’를 강제하여야 하고, 감사서비스공급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조장학관으로 사용되는 자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¹⁹⁰⁾ 국가수석장학관이 수여한 권한 내에서 활동하는 보조장학관은 국가장학관의 권한을 보유하지만 감사가 국가장학관에 의하여 감독되거나 보조장학관이 사전에 국가장학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하지 않는 한 학교감사를 행할 권한을 위임받을 수는 없다.¹⁹¹⁾

다. 국가수석장학관의 의무

국가수석장학관은 장관에게 ① 잉글랜드의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질, ② 그 학교 교육의 학생 수요 충족 정도, ③ 그 학교에서 달성된 교육기준, ④ 그 학교의 리더쉽 및 학교가 이용 가능한 재원의 효과적 관리 여부를 포함한 관리의 질, ⑤ 그 학교 학생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 ⑥ 학생 복지에 대한 그 학교의 기여도, ⑦ 그 학교의 자기평가(self-evaluation)를 위한 정확한 내부절차의 개발 정도, ⑧ 그 학교 학생의 행동 및 출석 상황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¹⁹²⁾

188) EA 2005, Sch 1, para 2(6).

189) EA 2005, Sch 1, para 2(4).

190) EA 2005, Sch 1, para 2(5),(6).

191) EA 2005, Sch 1, para 2(7),(8).

192) EA 2005, s 2(1).

이 가운데 두 번째, 여섯 번째 사유는 정부가 추가한 것이다. 전자를 추가한 이유는 국가수석장학관이 장관에게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모든 특정 집단, 특히 취약한 아동(vulnerable children)의 교육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것이다¹⁹³⁾. 후자는 ‘모든 아동 문제’(Every Child Matters)라는 의제와 관계되는 것으로 국가수석장학관은 장관에게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5가지 성과’ - ① 육체적·정신적 보건 및 감성적 복지, ② 해악 및 방치로부터 보호, ③ 교육, 훈련 및 오락, ④ 사회에 대한 기여, ⑤ 사회적·경제적 복지¹⁹⁴⁾ - 를 산출한 기여학교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한 것이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의 사유는 상원에 의하여 추가되었는데, 전자는 새로운 학교감사시스템의 핵심인 학교의 자기평가절차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후자는 총선거기간 이전 학교 학생의 행동에 대한 일반적 관심사에 기인하고 있다.¹⁹⁵⁾ 그 결과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가수석장학관은 교육문제와 일정 학교에 대한 감사 및 보고에 대한 자문을 하여야 한다.¹⁹⁶⁾

국가수석장학관은 지방교육청, 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감사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학교문제에 대하여 장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교원의 교육훈련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장관이 지시하는 것을 정부정책으로 고려하여야 한다.¹⁹⁷⁾ 또한 장관에게 서면으로 연차보고를 하여야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하며,¹⁹⁸⁾ 장관이 그 보고서를 의회의 각 원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¹⁹⁹⁾ 이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193) John Fowler, Chris Waterman, *Digest of the Education Act 2005* (NFER, 2005), p.11.

194) Children Act 2004 s 10(2); EA 2005, s 12.

195) Fowler(*et al.*), *Digest of the Education Act 2005*, p.12.

196) EA 2005, s 2(2).

197) EA 2005, s 2(3)-(6).

198) EA 2005, s 11.

199) EA 2005, s 3.

학교는 물론 학생교육 관련 시설에 출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²⁰⁰⁾ 관련 기록을 감사하고 복사할 권한을 보유한다.²⁰¹⁾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다.²⁰²⁾

국가수석장학관은 정해진 기간에 잉글랜드의 모든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한 후 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²⁰³⁾ 감사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학교감사법(School Inspection Act)과 동일한데, 지방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 - 지역사회학교, 재단설립학교, 임의기부제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유치원 -, 전문학교, 도시중등기술학교, 도시중등예술기술학교, 장관이 인가하는 비공립 특수학교, 그리고 학생위탁교육단(Pupil Referral Unit: 'PRU')²⁰⁴⁾ 등이 그 대상이 되지만,²⁰⁵⁾ 폐쇄학교(closing school)²⁰⁶⁾ 또는 더 이상 유용한 목적이 없는 학교는 제외된다.

200) 그 권한은 국가수석장학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관 및 보조장학관, 그리고 감사권을 위임받은 자에게도 인정된다(EA 2005, Sch 1(5)).

201) EA 2005, s 10.

202) EA 2005, s 4.

203) EA 2005, s 5(1). 잉글랜드의 학교감사규칙(The Education (School Inspection) (England) Regulations, SI 2005/2038)에 의하면 2009년 8월 1일까지 모든 학교를 감사한 후, 학교감사가 시행된 학기말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를 감사하도록 정하고 있다(s 3). 그러나 국가수석장학관은 예외적으로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EA 2005, s8).

204) 각 지방교육청은 모든 의무교육학령아동을 위하여 학교 내외에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고, 아동이 질병 또는 학교로부터 제적되어 일정기간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학생위탁교육단'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The Education (Pupil Referral Units) (Application of Enactments) (England) Regulations 2005, SI 2005/2039.

205) EA 1996 s 342.

206) ① 지역학교, 재단설립학교 또는 임의기부제학교, 지역사회 또는 재단설립 특수학교, 또는 공립유치원의 폐교 계획 인가가 법령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결정된 경우, ② 재단설립학교 또는 임의기부제학교의 운영위원회가 학교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③ 지역학교, 재단설립학교, 임의기부제학교, 지역특수학교 또는 재단설립특수학교에 장관이 학교기준법 제19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명령이 있는 경우, ④ 도시중등기술학교, 도시중등예술기술학교 또는 전문학교가 1996년의 교육법 제342조의 규정에 따른 협정 폐지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⑤ 지역사회 또는 재단설립 특수학교가 아닌 1996년 교육법 제342조의 규정에 따라 장관에 의하여 인가기간 동안 개교하는 특수학교 및 소유자가 폐쇄를 결

감사를 할 때에는 교장(head teacher), 공립학교는 운영위원회, 공립 학교 이외의 학교는 학교 소유자, 학교임원, 학교등록학생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²⁰⁷⁾ 감사 후 보고를 할 때에는 ①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질, ② 학교 교육의 학생 수요 충족 정도, ③ 학교에서 달성된 교육기준, ④ 학교의 리더십 및 학교가 이용 가능한 재원의 효과적 관리 여부를 포함한 관리의 질, ⑤ 학교 학생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 ⑥ 학생 복지에 대한 그 학교의 기여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²⁰⁸⁾

만일 학교와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현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청, 그리고 기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²⁰⁹⁾ 국가수석장학관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감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기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소유자에게 송부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이에 대한 논평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²¹⁰⁾ 국가수석장학관이 학교에 특별한 조치나 현저한 개선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²¹¹⁾

국가수석장학관은 지체없이 감사보고서의 복사본을 운영위원회, 지방교육청, 교장, 재단이사를 임명하는 기구, 그리고 학교가 의무교육 학령 이상의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잉글랜드 ‘학습기술 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에 송부하여야 한다.²¹²⁾ 운영위원회는 합리적 시간에 공공감사에 이용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정한 경우’에는 ‘폐쇄학교’가 된다(EA 2005, s 5(4)).

207) EA 2005, s 7. 이 규정은 상원에서 야당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 추가된 조항이다.

208) EA 2005, s 5(5).

209) EA 2005, s 13(1), (3).

210) EA 2005, s 13(2).

211) EA 2005, s 13(5).

212) EA 2005, s 14(1)-(3).

하고, 요청이 있으면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학부모에게 복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²¹³⁾

국가수석장학관이 학교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고 현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사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경우에 지방교육청은 학교가 특별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²¹⁴⁾ 그 계획에는 취하여야 할 조치와 그 시간표를 반드시 기술하여야 하며, 그 복사본을 국가수석장학관이나 정부보조학교의 경우에는 재단이사(Trustee)를 임명하는 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²¹⁵⁾ 행동계획의 마감일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감사보고서 공표로부터 10일 이내이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장관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²¹⁶⁾²¹⁷⁾

라. 종교교육에 대한 감사

임의기부제학교 및 재단설립학교는 종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학교는 신앙학교(faith school)로 언급되고 있는데, 종교교육 및 학교를 설립한 종교 또는 종파의 고유한 집단예배(collective worship)²¹⁸⁾를 한다. 학교는 종교적 특성을 지닌 종교교육 또는 종파교육을 할 수 있는데, 주로 로마가톨릭 또는 영국국교회(Anglican Church)의 지원을 받는 정부보조학교(voluntary-aided school)이다.

‘종파교육’(denominational education)은 학교 등록 학생의 종교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기본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수요목(syllabus)에 따라 시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213) EA 2005, s 14(4).

214) EA 2005, ss 15(1), 17(1).

215) EA 2005, s 15(2).

216) EA 2005, s 15(3). The Education (School Inspection) (England) Regulations 2005, s 7.

217) 공립학교 이외의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소유자가 감사보고서 복사본을 수령하게 되는데, 수령한 보고서를 지방교육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만일 학교소유자가 학교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보고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위한 조치 및 그 기간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EA 2005, s 16-17.

218) SSFA 1998, s 70.

것은 아니다.²¹⁹⁾ 종파교육을 시행하는 임의기부제학교나 재단설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종파교육이나 집단예배를 감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²²⁰⁾ 정부관리학교의 경우에는 재단이사, 정보보조학교 또는 재단설립학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감사를 행할 자를 결정한다.²²¹⁾ 감사는 정해진 기간마다 하도록 하고,²²²⁾ 그 기간은 10일로 한다.²²³⁾ 감사를 행하는 자는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할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²²⁴⁾ 종파교육 및 집단예배의 질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학생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다.²²⁵⁾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²²⁶⁾ 운영위원회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모든 학부모가 보고서의 복사본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육, 탁아 및 유치원교육에 대한 감사

1) 교육기준국에 의한 감사

2005년 교육법은 보육(childminding), 탁아(day care), 그리고 유치원교육(nursery education)에 대한 교육기준국의 감사기능을 개정하고 있다.

219) EA 2005, s 47; EA 2002 ss 80(1)(a), 101(1)(a).

220) EA 2005, ss 48(1), 50(1).

221) EA 2005, ss 48(2), 50(2).

222) 잉글랜드의 학교감사규칙(School Inspection Regulations)은 3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 10). 그렇지만, 웨일즈의 학교감사규칙(The Education (School Inspection) (Wales) Regulations 2006)은 6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 14(1)).

223) EA 2005, ss 48(3), 49(1), 50(4); The Education (School Inspection) (England) Regulations 2005 s 11(1). 웨일즈의 감사규칙은 감사기간을 감사를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로 한다(The Education (School Inspection) (Wales) Regulations 2006, s 16(2)).

224) The Education (School Inspection) (England) Regulations 2005 s 11(2). 웨일즈의 감사규칙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35일 내에 감사보고서 및 그 요약본을 준비하도록 정하고 있다(The Education (School Inspection) (Wales) Regulations 2006 s 16(3)). 감사를 행하는 자는 감사를 행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자격을 가진 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EA 2005, ss 48(5), 50(6)).

225) EA 2005, ss 48(3)(4), 50(4)(5).

226) EA 2005, ss 49(2)(3).

교육기준국은 2000년의 육아기준법(Care Standards Act)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보육 및 탁아 시설을 등록하고 감사할 권한을 이양받게 되었다. 교육기준국은 이미 1996년에 유치원교육을 감사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유치원교육은 물론 조기개발(early years development) 및 육아조합(childcare partnership)도 감사할 수 있었다.²²⁷⁾ 감사는 2개의 감사체제(inspection regime)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유치원교육감사단(nursery education inspectorate)은 주로 학교등록장학관과 유사한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 반면에, 보육 및 탁아를 위한 장학관은 지방교육청에 고용된 자이다.²²⁸⁾

2) 보육 및 탁아에 대한 감사

국가수석장학관은 장관에게 잉글랜드의 보육 및 탁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보육 및 탁아의 질과 기준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어느 정도의 보육 및 탁아가 보호받고자 하는 아동의 수요를 충족하는지, 보육 및 탁아 등 아동복지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탁아 리더십 및 경영의 질을 보고하여야 한다.²²⁹⁾ 국가수석장학관은 감사보고서를 제작·보급하여야 하며 복사본을 탁아담당자와 보육사 그리고 기타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²³⁰⁾

3) 유치원교육에 대한 감사

국가수석장학관은 유치원교육의 질과 기준, 그리고 유치원교육을 받는 아동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의 유치원교육이 교육받고자 하는 아동의 수요를 충족하는지, 아동복지에 대한 유치원교육의 기여도, 그리고 유치원교육의 리

227) SSFA 1998, s 122, Sch 26.

228) The Nursery Education (Insepection) (England) Regulations 2005, SI 2005/2999; The Day Care and Child Minding (Insepection) (England) Regulations 2005, SI 2005/3000.

229) EA 2005, Sch 7, para 1(2)

230) EA 2005, Sch 7, para 3.

더십과 경영의 질을 보고하여야 한다.²³¹⁾ 국가수석장학관은 정해진 기간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유치원교육시설과 재정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시설을 감사하여야 한다. 국가수석장학관은 모든 보고서의 제작 및 보급의 책임이 있고, 복사본을 유치원 책임자(responsible person)에게 제공하여야 한다.²³²⁾

제 9 절 2006년 교육 및 감사법

1. 주요내용

2005년 10월 교육기술부가 출간한 “고등 기준,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학교”(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s For All)라는 백서는 지역사회 내의 모든 학교에서 모든 아동이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²³³⁾ 이 백서에서 장관은 학생성적 및 학교기준의 다양한 향상을 기술하고 있었다. 1997년 이후 노동당 정권에 의한 교육개혁은 두 가지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 양상은 1997년에 시작된 교육시스템의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원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며, 사기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다. 반면에 두 번째 양상은 진행 중인 기준의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이 있는 학교 시스템의 구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²³⁴⁾ 그 결과 2004-2005년의 ‘중등교육수료일반시험’(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GCSE’)에서 5개 이상의 A+-C 등급을 취득한 학생비율이 1997년보다 10% 이상 향상되었고, 25% 이하의 학생이 5개 이상의 A+-Cs 등급을 취득한 학교 수가 112개교가 되었다.²³⁵⁾ 1997-1998년의

231) EA 2005, Sch 7, para 11.

232) EA 2005, Sch 7, para 20.

233) DfES, *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s For All*, <<http://www.dfesgov.uk/publications/schoolswhitepaper/pdfs/DfES-Schools%20White%20Paper.pdf>>.

234) DfES, *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 for All*, Cm 6677 (TSO, 2005), p.13.

연간교육비용이 35억파운드에서 2005-2006년에는 51억 파운드로 증가되었고, 2007-2008년에는 60억 파운드로 증가될 예정이며, 학생 1인당 지출비용도 29% 이상 증가되었다.²³⁵⁾ 교원의 수도 1997년 1월 399,200명에서 2005년 1월 431,900으로 증가되었고, 학교 직원도 1997년 이후 2배로 증대되어 269,000명이 근무하고 있다.²³⁷⁾

그러나 정부주도의 계속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들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와 열망에 따라 형성되고 추진되지 않는 더 이상의 학교시스템의 변형은 무의미한 것이었다.²³⁸⁾ 학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원하는 것을 어디서든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으며, 학부모의 선택이 가능하고,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학습프로그램이 마련된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했다.²³⁹⁾ 교육개혁은 더 이상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하여야 하는 공산주의적 이상주의(communitarian idealism)를 반영하고 있었다. 정부는 위탁학교(trust school)가 이를 실현해 줄 것으로 믿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새로운 학교를 마련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다.

2006년 11월 제정된 ‘교육 및 감사법’(Education and Inspections Act)은 이 백서의 많은 제안을 법제화하고 백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가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5) 1997년에는 616개교였다. DfES, *National Statistics, GCSE and Equivalent Results and Associated Value Added Measures for Young People in England, 2004/05 (Revised)* (DfES, 2006).

236) DfES, *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 for All*, pp. 13-14

237) *Id.*, p.15.

238) *Id.*, p.17.

239) *Id.*, p. 17.

2. 위탁학교

이 법에 의하면 모든 학교는 외부 파트너와 연계하여 위탁학교(trust schools)가 될 수 있는데, 학교가 이를 선택하는 경우 외부 파트너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임명할 수 있다. 위탁학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신들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입학요건(admission arrangements)을 정할 수 있고, 위탁자의 재산은 보호된다.

위탁학교는 자선재단 또는 위탁자가 지원하는 재단설립학교이고, 지방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자금의 지원을 받는 ‘지방교육청가족학교’(local authority family of schools)의 일부이다. 위탁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을 통하여 위탁자(trust)에 의한 지원을 받는데, 사실상 단일하지 않다. 위탁자에는 교육 자선단체(education charities), 직업 또는 고등교육기관, 영리재단이나 지역단체 등이 포함된다.

위탁학교는 다음과 같은 순기능을 한다. 첫째, 학교 및 외부 파트너 사이의 장기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함께 일할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데, 파트너에는 영리재단, 전문학교(college), 대학교, 그리고 지역단체가 포함된다. 셋째, 상실감 및 사회적 일체성(social inclusion) 문제와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전인적 발전(all-round development)을 지원한다. 넷째, 지배기술 및 리더십 기술을 강화한다. 다섯째, 영리재단 및 기타 단체에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많은 융통성을 향유한다. 즉, 입학허가시행령(Admissions Code of Practice)²⁴⁰⁾에 따르는 한 자신들의 입학허가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학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책임을 진

²⁴⁰⁾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s 84.

다. 일곱째, 학부모와 함께 한다. 즉, 학교는 위탁하기 전에 학부모와 협의하여야 한다. 여덟째, 다른 학교 및 외부 파트너로부터 배움으로써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독특하고 개인적이거나 공유된 정신을 창조한다.

위탁학교는 별도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발기준을 도입할 수 없고, 지방교육청이 학교 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선택할 수 있다. 만일 학교가 위탁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전에 지방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탁학교는 기업이 소유할 수 없고, 기업재단 및 기타 파트너는 위탁자를 통하여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의 표준요소를 준수하여야 하고, 다른 학교처럼 교육기준청의 감사를 받는다. 학교가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들과 협의하여야 하고 최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3분의 1은 학부모로 구성되어야 한다.²⁴¹⁾

3. 지방교육청

지방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모든 아동²⁴²⁾의 교육적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기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²⁴³⁾ 둘째, 다양한 학교시설을 보장하고 학부모 선택의 기회를 증대하여야 한다.²⁴⁴⁾ 셋째, 의무교육학령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대표의견을 수령한 경우 그 의견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

241) 자세한 것은 DfES, *What Trust Schools Offer* <<http://www.dfes.gov.uk/hottopics/docs/What%20Trust%20Schools%20Offer.pdf>>; <<http://www.teachernet.gov.uk/educationoverview/briefing/strategyarchive/whitepaper2005/trustschools/>>; <<http://www.ssatrust.org.uk/trustschools2/test/default.aspx>>; <http://findoutmore.dfes.gov.uk/files/trust_schools_summary_bullets2.doc>.

242) 아동의 의미는 20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EIA 2006, s1(3)).

243) EIA 2006, s 1; EA 1996, s 13A(1).

244) EIA 2006, s 2; EA 1996, s 14(3A).

를 고려하여야 하고, 합리적 시간 내에 그 조치에 관한 설명서와 만일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학부모에게 제시하여야 한다.²⁴⁵⁾ 넷째, 의무교육학령 아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²⁴⁶⁾ 다섯째, 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장에 자문할 자 - 학교개선파트너(School Improvement Partners) - 를 임명하여야 한다.²⁴⁷⁾ 여섯째,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시설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오락 및 사회적·육체적 교육훈련에 적합한 시설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캠프, 휴일학급(holiday classes), 운동장(playing field), 놀이터(play center), 그리고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체육관, 수영장, 유희장(playground)을 포함한 기타 장소의 설치, 유지,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게임, 탐험, 그리고 기타 활동을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²⁴⁸⁾ 일곱째, 적격청소년(qualifying young person)²⁴⁹⁾이 자신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충분한 교육적 여가 및 오락 활동과 그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²⁵⁰⁾ 이를 위하여 적극적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을 구성·제공하고, 그 시설의 설비를 지원하며, 적격청소년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와 관계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할 수 있으며, 기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²⁵¹⁾

245) EIA 2006, s 3; EA 1996, s 14A.

246) 비등록학생 및 학교 이외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제외된다. ‘적절한 교육’(suitable education)은 연령, 능력, 적성, 그리고 특수교육 수요에 적합한 전일교육을 의미한다. EIA 2006, s 4; EA 1996, s 436A.

247) EIA 2006, s 5.

248) EIA 2006, s 6(1); EA 1996, s 507A.

249)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 20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로 학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EIA 2006, s 6(1); EA 1996, s 507B(2).

250) EIA 2006, s 6(1); EA 1996, s 507B(1).

251) EIA 2006, s 6(1); EA 1996, s 507B(5).

4. 학교의 설립

지방교육청은 지방교육청 이외의 자로부터 새로운 학교 - 재단설립 학교, 임의기부제학교, 재단설립 특수학교²⁵²⁾ 또는 전문학교 - 설립에 관한 제안을 권유하는 고지를 할 수 있다. 고지를 하는데 있어서 학교후보지를 확인하고, 제안된 학교가 특수학교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하며, 제안서가 제출된 날짜 및 기타 사항을 확정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²⁵³⁾ 공표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²⁵⁴⁾ 공표 전에 지방교육청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장관의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²⁵⁵⁾

지방교육청은 지역사회학교 또는 지역사회특수학교에 대한 제안서를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리고 더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공표할 수 있다.²⁵⁶⁾ 제안자는 의무교육학령 이상의 자에게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이외의 새로운 재단설립학교, 임의기부제학교, 또는 재단설립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제안서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²⁵⁷⁾

새로운 공립유치원이나 의무교육학령 이상의 자만 교육하는 재단설립학교 또는 재단설립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는 경우 지방교육청은 그 제안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무교육학령 이상의 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하거나, 전문학교, 기술전문학교, 예술기술전문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재단설립특수학교의 경우에는 비공립특수학교를 대체하기 위한 재단설립학교, 임의기부제학교, 또는

252) 의무교육학령 이상의 자에게만 교육을 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253) EIA 2006, s 7.

254) EIA 2006, s 10(1)(b).

255) EIA 2006, s 9.

256) EIA 2006, ss 8, 10(1)(a).

257) EIA 2006, s 10(2).

재단설립특수학교의 설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공표하여야 한다.²⁵⁸⁾ 공표 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협의하여야 하고 장관의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²⁵⁹⁾

5. 재단설립학교 등

재단설립학교 또는 재단설립특수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1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제안서가 인가되거나 관련기관(relevant authority)²⁶⁰⁾이 제안서 이행을 결정하는 경우에, 이행이 강제되는 제안서에 따라 재단설립학교 또는 재단설립특수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학교는 재단을 설립하고 다수의 운영위원이 재단이사가 된 운영기관(instrument of government)을 보유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제안서에 따라 정부보조학교에서 재단설립학교로 전환하고, 다수의 운영위원이 재단이사가 된 운영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²⁶¹⁾

학교재단은 학교와 관련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단결을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법인 또는 자선단체가 아니거나 학생의 교육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학교재단으로 활동할 수 없다.²⁶²⁾ 재단을 보유한 학교 및 다수의 운영위원이 재단이사가 된 운영기관을 보유한 학교에는 ‘학부모위원회’(parent council)를 규칙²⁶³⁾에 따라 구성·설치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회는 학교경영, 학생 또는

258) EIA 2006, s 11(1)(2).

259) EIA 2006, s 11(6).

260) ‘관련기관’은 공고를 하거나 학교를 유지하거나 유지할 것을 제안한 지방교육청을 의미한다. EIA 2006, Sch 2, para 2.

261) EIA 2006, s 33(1); SSFA 1998, s 23A(2)-(4).

262) EIA 2006, s 33(1); SSFA 1998, s 23A(5)-(6).

263) 규칙에는 ① 학부모위원회 위원의 선출 또는 임명 방법, ② 자격요건, ③ 위원의 임기, ④ 학부모위원회의 회의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회 관련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EIA 2006, s 34; EA 2002, s 23A(4)-(6).

그 가족,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 제공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자문한다.²⁶⁴⁾

6. 학교입학

지역사회, 재단설립 또는 임의기부제 학교는 학교가 인문계중등학교(grammar school)이거나 법률이 인정하는 선발방식²⁶⁵⁾ 중 하나를 채택하지 않는 한 능력별 선발을 할 수 없다.²⁶⁶⁾ 이 법에 의하면 입학포럼에 대하여 새로운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입학포럼(admission forum)은 공립학교 학생의 입학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표하는데, 보고서 준비를 위하여 지방교육청 또는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²⁶⁷⁾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또는 정부통제학교의 입학기관이 지방교육청인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입학기관을 대신하거나 그 기관이 행한 학생입학과 관련한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²⁶⁸⁾

공립학교의 입학제도는 학교지원자 또는 그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인터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숙시설을 제공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지원자의 기숙시설 입사에 관한 인터뷰는 가능하다. 또한 입학제도가 재능별 선발방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 지원자의 재능을 확인할 목적으로만 행하여지는 오디션, 기타 구술 또는 실기 시험의 경우에는 인터뷰할 수 있다.²⁶⁹⁾

264) EIA 2006, s 34; EA 2002, s 23A(1)-(3).

265) SSFA 1998, s 99(2).

266) EIA 2006, s 39(1).

267) EIA 2006, s 41; SSFA 1998, s 85A(1A)(1B).

268) EIA 2006, s 43(1); SSFA 1998, s 88(1A).

269) EIA 2006, s 44; SSFA 1998, s 88A.

7. 학교통학 및 학교급식

지방교육청은 관할구역의 학교통학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원 가능한 통학 방식’²⁷⁰⁾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는 문서를 매 학년도마다 준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학교통학수요를 평가하고 지원 가능한 통학 설비 및 서비스를 평가하여야 한다.²⁷¹⁾

지방교육청 또는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교구내에서 누구에게나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학교 등록학생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²⁷²⁾ 공립학교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이나 음료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에는 첫째, 영양기준, 기타 영양소모량, 둘째, 공립학교 구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음료, 셋째, 제공될 수 없는 음식 또는 음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²⁷³⁾

270) ‘지원 가능한 통학방식’은 지방교육청이 이용자의 육체적 또는 환경적 복지 중 일방 또는 양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통학방식을 의미한다(EIA 2006, s 76; EA 1996 s 508A(3)).

271) EIA 2006, s 76; EA 1996, s 508A(1)(2).

272) EIA 2006, s 86; SSFA 1998, s 114A(4).

273) EIA 2006, s 86; SSFA 1998, s 114A(1)(2).

제 4 장 영국의 교육법과 교육제도

제 1 절 학교시스템의 구조

1. 공립학교

‘학교’란 계속 및 고등교육 영역을 제외한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위한 전일제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²⁷⁴⁾ 지방교육청이 유지하는 학교 - 공립학교 - 는 1999년부터 재편되어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 재단설립학교(foundation school), 임의기부제학교(voluntary school), 지역사회특수학교(community special school), 재단설립특수학교(foundation special school)로 구분된다.²⁷⁵⁾

가. 지역사회학교

지방교육청에 의하여 유지되는 지역사회학교는 직원을 고용하고, 학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며, 학생입학제도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²⁷⁶⁾

나. 재단설립학교

재단설립학교 이전에는 독립형재정지원학교 또는 독립형재정지원특수학교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는 주립학교(county school)나 정부

274) EA 1996, s 4(1).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이란 “10.5세에 달하지 않은 초등 학생의 자격에 적합한 전일제 교육 및 10.5세에 달하고 초등학생과 함께 교육받는 것이 합당한 초등학생(junior pupils)의 자격에 적합한 전일제 교육”을 의미하고,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은 “중학생(senior pupils) 또는 10.5세에 달하고 의무교육 학령의 중학생과 함께 교육받기에 합당한 초등학생인 의무교육학령 학생의 자격에 적합한 전일제교육 및 의무교육학령 이상 19세 미만인 학생 자격에 적합한 전일제 교육”을 말한다. EA 1996, ss 2(1), (2).

275) SSFA 1998, s 20.

276) EA 2002, s 35.

관리학교(voluntary controlled school), 또는 특수학교로 존재하고 있었다. 재단설립학교는 社團(body of person)을 보유하는데, 학교를 위해 신탁된 토지 또는 건물을 보유한다. 지방교육청은 재단설립학교를 유지할 책임을 지지만 위임예산이 보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학교의 직원은 운영위원회가 고용한다.²⁷⁷⁾

다. 임의기부제학교

임의기부제학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정부관리학교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보조학교(voluntary aided school)이다. 거의 모든 학교가 교회설립학교(church school)인 정부관리학교는 전적으로 지방교육청에 의하여 유지되지만, 토지 및 건물은 자선단체(charitable foundation)가 소유한다. 학교 직원은 지방교육청이 고용하고 입학제도에 대한 주요 책임이 있다. 많은 수가 교회설립학교인 정부보조학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지방교육청에 의하여 유지되고, 위임예산이 보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가 학교직원의 고용주가 되고 입학제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 비용을 기부하는데 대부분 잉글랜드교회 또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연계되어 있지만, 비종파학교 및 신앙공동체(faith group)와 연계되어 있는 학교도 있다.²⁷⁸⁾

라. 특수학교

‘특수학교’란 특수교육수요를 가진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특수하게 조직된 학교를 의미한다.²⁷⁹⁾ 특수학교는 첫째, 지역 사회특수학교와 재단설립특수학교를 포함한 지방교육청에 의하여 유

277) EA 2002, s 36, Sch 2.

278) EA 2002, Sch 2.

279) EA 1996, s 337(1); SSFA 1998, Sch 30, para 80.

지되는 특수학교, 둘째, 공립은 아니지만 당분간 장관에 의하여 인가된 특수학교로 구분된다.²⁸⁰⁾ 후자의 경우 5명 이상의 의무교육학령 또는 ‘특수교육수요보고서’를 보유하거나 보살펴야 할 최소 1명의 학생을 위한 전일제 교육을 하여야 하는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이다.²⁸¹⁾ 특수학교는 육체적 장애, 즉, 실명, 귀먹음, 특수한 학습장애, 자폐증(autism), 주의결핍장애(attention deficit disorder), 감정 및 행동장애를 포함한 정신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보호한다.

마. 유치원

유치원은 주로 2-5세 사이의 아동 교육을 위하여 이용되는 초등학교를 의미한다.²⁸²⁾

2. 학생위탁단

각 지방교육청은 학교 또는 그밖의 장소에서 질병이나 제적을 이유로 일정기간동안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의무교육학령 아동을 위하여 학교에서 보다는 적절한 다른 장소에서 전일제 또는 시간제 교육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청이 설립하고 유지하는 학교로 질병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을 “학생위탁단”(pupil referral unit)이라고 하고, 지방교육청은 학생위탁단을 수용할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²⁸³⁾

280) EA 1996, s 337(2); SSFA 1998., Sch 30, para 82.

281) EA 1996, s 463; EA 2002, s 172.

282) EA 1996, s 6(1).

283) EA 1996, s 19.

3. 사립학교

이 학교는 국·공립이 아닌 학교로 자선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이 학교는 그 행위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²⁸⁴⁾

4. 전문학교

전문학교(academy)는 2002년 교육법에서 1996년 교육법을 개정된 결과 탄생되었다.²⁸⁵⁾ 전문학교는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사립학교로 자유로이 경영, 관리, 교육 및 교육과정을 혁신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조정 및 개선 전략이 실패한 경우에 새로운 학교로 열악한 지역에 설치되어 성과가 낮은 학교를 대체한다. 그 결과 사회적 환경과 그 성취도 사이의 연계를 끊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5. 도시중등기술학교

도시중등기술학교(City Technology College)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광범위한 직업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을 취득하게 한다. 과학, 수학, 그리고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5학기에 걸쳐 교육하는데, 고용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졸업생의 취업률이 좋은 사립학교이다.

284) EA 2002, ss 157-174.

285) EA 1996, s 482; EA 2002, s 65(1).

제 2 절 학교의 교육과정과 기준

1. 학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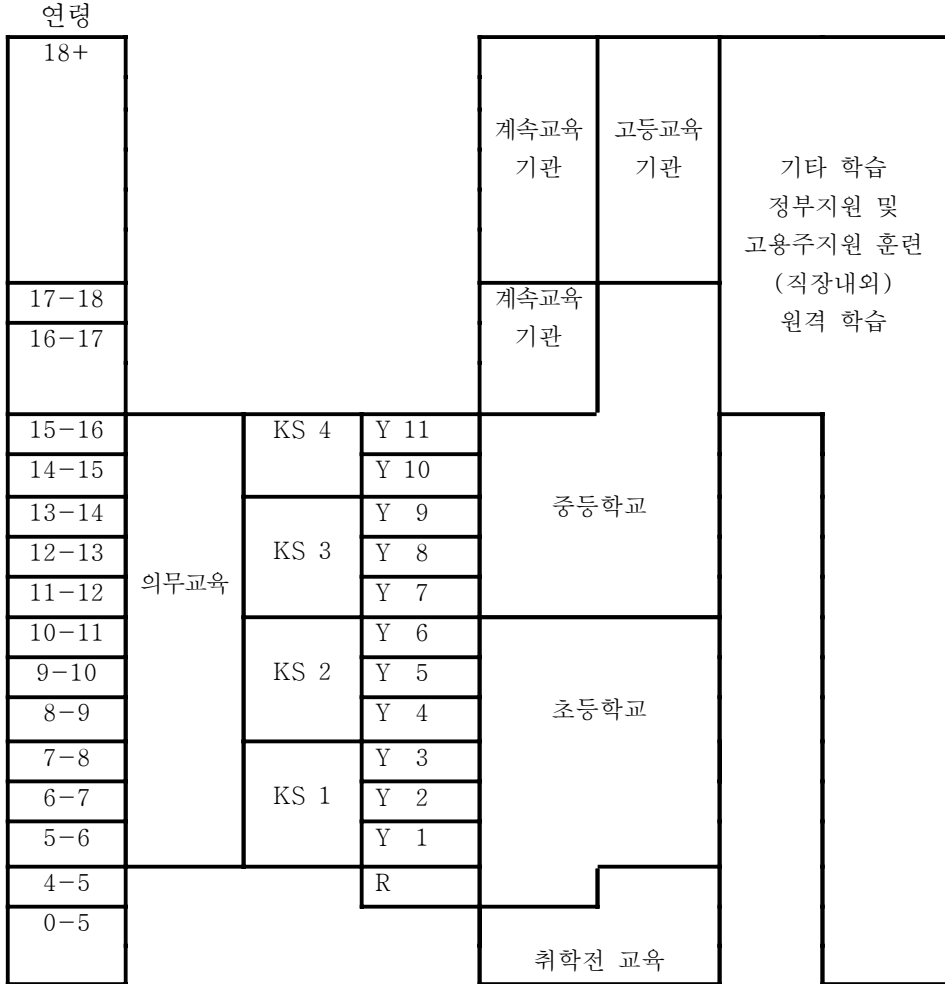
영국과 웨일즈의 교육은 초등, 중등, 계속, 그리고 고등 교육으로 구분된다. 의무교육은 11학년까지 계속되는데 법정 의무교육학령은 5-16세이다. 의무교육학령학생은 학교출석이 강제되고, 연령, 능력, 재능 그리고 특수교육수요에 적합한 전일제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11세에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진학하는데 대부분의 중등학교는 별도의 선발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종합학교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인문계중등학교(grammar school)는 능력에 따른 선발시험제도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1988년의 교육개혁법의 결과 마련된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4개의 키 스테이지(Key Stage)로 구분된다. 키 스테이지 1은 5세에서 7세 사이, 키 스테이지 2는 7세에서 11세 사이, 키 스테이지 3은 11세에서 14세 사이, 키 스테이지 4는 14세에서 16세 사이에 실시한다. 각각의 키 스테이지 말에 국가교육과정시험을 실시하는데, 키 스테이지 1은 7세, 키 스테이지 2는 11세, 키 스테이지 3은 14세에 각각 실시한다. 키 스테이지 4 과정이 끝날 때 전 과정을 대상으로 ‘중등교육수료일반시험’(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GCSE’)286)을 실시하고 A+-G등급으로 평가된다.

286) 이 시험은 1986년에 도입되어 1988년에 최초로 실시된 시험으로 의무중등교육 말에 학생성취도를 평가하는 주요 수단이다. GCSE는 독립영리기업인 평가기관(awarding bodies)에 의하여 실시되는데, 평가 및 자격검정 연합(Assessment and Qualifications Alliance: ‘AQA’), 에덱셀(Edexcel), 옥스퍼드·캠브릿지·RSA 시험(Oxford, Cambridge and RSA Examinations: ‘OCR’) 등 3개의 주요 평가기관이 있다. GCSE시험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따라 출제되는데, 그 기준은 강의요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공립학교에서 이용되는 모든 GCSE 강의요목은 공식적으로는 ‘자격검정 및 교육과정청’(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QCA’)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이 시험을 치른 후 계속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거나 대학입학을 위한 ‘교육수료일반자격 A레벨’(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Level: ‘GCE A-level’)시험을 준비한다. GCE A-level시험은 대학진학을 위하여 치러야 하는 일종의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인 동시에 ‘대학 입학시험’이다. 중등교육수료일반시험과정을 마친 뒤, 상급중등학교인 제6학년학교(Sixth Form college) 과정에 입학하여 2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18세에 이르르게 되는데, 대학의 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A-level은 2년 과정으로 첫해에는 4~5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며 1년이 끝날 무렵 AS level 시험을 치르게 된다. 두 번째 해에는 시험 본 과목 중 성적이 좋은 3~4 과목을 더욱 깊게 계속 공부하여 A2 시험을 치르게 되고, A-level 시험과 AS시험의 합계가 A-level의 결과가 되는데, 논문형식으로 실시되고, A부터 E까지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이 성적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과목을 합격하고 해당 대학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합격 최저점을 통과해야만 희망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대학 또는 고등교육은 18세 이후의 교육으로 학사, 석사, 박사 등의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데, 대학교육은 공공기금에 의하여 운용되며, 정부가 수업료를 부담하여 왔지만, 1998년부터 수업료의 일부를 부담한다.

<그림 1> 잉글랜드의 교육 및 훈련 구조²⁸⁷⁾



2. 교육과정의 개관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1944년의 교육법이 종교교육 및 집단예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이나 교수방법은

287) <<http://www.dfes.gov.uk/trends/index.cfm?fuseaction=home.showChart&cid=1&iid=1&chid=1>>.

지방교육청 및 교수자에게 위임하고 있었다. 1980년대에 대처정부는 지방교육청과 교원의 정치적 편견 및 동성애, 그리고 그 자질 저하에 관심을 보이면서 교육입법을 양산하게 된다. 그 결과 1986년의 교육법을 통하여 지방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박탈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여하였고, 1988년의 교육개혁법을 통하여 종교교육 및 집단예배에 관한 법률 개정은 물론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도입하였다. 또한 학부모가 교육과정 문제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의 교육법에서는 장관, 지방교육청, 운영위원회 및 교장은 교육과정이 균형 있고, 대체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영적, 도덕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발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년기를 위한 기회, 책임, 그리고 경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⁸⁸⁾ 교육과정에 대하여 지방교육청은 1986년 이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높은 수준의 학업성적을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학교를 경영하여야 한다.²⁸⁹⁾ 교장은 교육과정을 실천할 책임이 있고 국가교육과정을 실천하여야 한다.²⁹⁰⁾

가. 국가교육과정

2002년 교육법은 국가교육과정을 규정하고 모든 공립학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²⁹¹⁾ 국가교육과정은 잉글랜드에서는 ‘자격검정 및 교육과정청’(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 ‘QCA’), 웨일즈에서는 ‘자격검정, 교육과정 및 평가청’(Qualification, Curriculum and Assessment

288) EA 2002, s 79.

289) SSFA 1998,, s 38(2).

290) EA 2002, s 88.

291) EA 2002, ss 79-80.

Authority for Wales: ‘QCAAW’)이 공표하고 수정한다.

국가교육과정은 4개의 키 스테이지의 핵심과목 및 기초과목으로 나뉜다. 핵심과목은 ‘수학, 영어, 과학, 웨일즈어²⁹²⁾’이고, 기초과목은 ‘디자인 및 기술, 정보통신기술, 웨일즈어²⁹³⁾’ 이외에 키 스테이지 1-3에서는 ‘체육, 역사, 지리, 미술, 그리고 디자인 및 음악,’ 키 스테이지 3과 4에서는 ‘시민권(citizenship) 및 현대외국어’이다. 각 과목은 각 키 스테이지별로 QCA와 QCAAW가 설정하고 명령 및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달성 목표, 공부프로그램, 그리고 평가제도를 가지고 있다.

2003년의 교육령은 2002년 교육법 제85조를 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키 스테이지 4의 국가교육과정에서 디자인과 예술 및 현대외국어과목을 필수기초과목에서 삭제하고, 노동관련지식을 필수과목으로 도입하였으며, 각 4개의 선택영역을 도입하여 각 영역별로 과목을 지정하였고, 각 영역 중 1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청, 운영위원회 및 교장이 개론과목에 관하여 ‘자격검정 및 교육과정청’이 발한 지침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핵심 및 기타 기초과목과 관련한 달성 목표와 평가제도의 지정 요건을 삭제하였다.

잉글랜드는 키 스테이지 4에서 핵심과목과 기초과목, 그리고 개론(elements)을 지정하고 그 공부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과목은 수학, 영어, 과학이고, 기초과목은 정보통신기술, 체육교육, 시민권이다. 개론은 노동관련지식(work-related learning)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영역(entitlement areas) 중 1 이상의 영역 가운데 1과목을 말한다. 4가지 영역은 예술영역, 디자인 및 기술영역, 인문과학영역, 현대외국어영역으로 구분한다. 예술영역은 ‘미술 및 디자인, 음악, 무용, 연극, 미디어 예술’ 등 5개 과목으로, 인문과학영역은 지리, 역사 등 2과목으로 각각 구성되고, 현대외국어영역은 장관의 명령으로 정하

292) 웨일즈어로 말하는 학교에 한한다.

293) 웨일즈에서 웨일즈어를 말하지 않는 학교에 한한다.

도록 하고 있으며, 디자인 및 기술영역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과목이다.²⁹⁴⁾

2003년 9월부터 국가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확장된 노동관련 지식 프로그램’(extended work-related learning programme)에 참여하거나 교장의 견해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 키스태이지 4의 학생들에 한해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에 제외되는 과목은 ‘현대외국어, 디자인 및 기술, 과학’ 과목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현대외국어, 디자인 및 기술’ 과목이 제외된다.²⁹⁵⁾

‘확장된 노동관련 지식프로그램’은 노동환경 및 노동관행의 경험을 제안하고, 경험을 통한 읽고 쓰는 능력, 계산능력, 그리고 주요 기능(key skills)²⁹⁶⁾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나머지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을 보완하도록 하고, 실현가능하다면 자격검정을 인정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키스태이지 4의 국가교육과정과 함께 할 수 없다.²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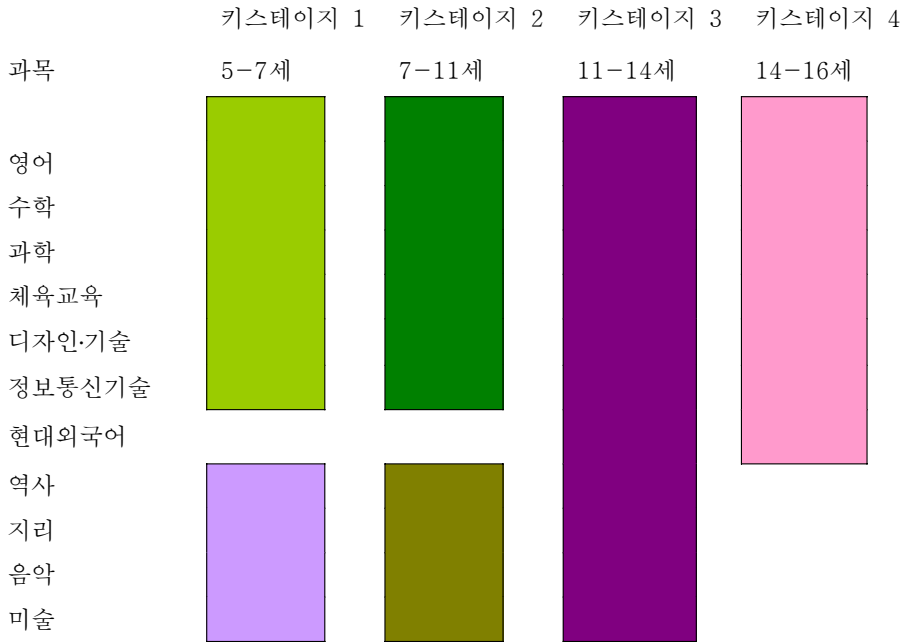
294) Education (Amendment of the Curriculum Requirements for Fourth Key Stage) (England) Order 2003, SI 2003/2946. para 2.

295) The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Exceptions at Key Stage 4) (England) Regulations 2003, SI 2003/252, reg 7. 국가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성교육, 종교교육, 그리고 진로교육(career education) 등이 실시된다. 교장의 견해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2005년 8월부터는 폐지되었고, 그 과목도 과학에 국한된다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Exceptions at Key Stage 4)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04, SI 2004/264, reg 2).

296) ‘주요 기능’은 수리응용, 통신, 정보기술, 공동근로, 지식 및 성과 개선,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능을 말한다. The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Exceptions at Key Stage 4) (England) Regulations 2003, SI 2003/252, reg 5.

297) The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Exceptions at Key Stage 4) (England) Regulations 2003, SI 2003/252, reg 6.

<그림 2> 국가교육과정(298)



나. 국가교육과정의 평가

국가교육과정의 평가는 키 스테이지 1-3의 말에 ‘능력평가시험’(standard assessment tasks: ‘SATs’)으로 한다. 이 시험은 핵심과목에 대해서만 실시되는데, 키 스테이지 1은 영어와 수학만을 실시하고, 키 스테이지 2-3의 경우에는 과학을 추가한다.²⁹⁹⁾ 초등학교의 교장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기초평가를 할 수 있었지만, 2002년 교육법은 이를 폐지하였다. 그 이유는 특정 아동의 교육계획을 지원하고 미래의 교육적 성과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매년 공인시험 및 국가교육과정 관련 평가에서 학생 성적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표하

298) <<http://www.dfes.gov.uk/trends/index.cfm?fuseaction=home.showChart&cid=1&iid=1&chid=2>>.

299) 웨일즈의 경우에는 키 스테이지 1의 시험은 실시되지 않는다.

여야 한다.³⁰⁰⁾

장관은 특정 공립학교의 교육과정개발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국가교육과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 지방교육청 및 지역사회학교, 국가관리학교, 또는 지역사회특수학교의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재단설립학교, 국가보조학교 또는 재단설립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청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적격’(qualifying)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지방교육청, 학부모, 그리고 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타의 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³⁰¹⁾

제 3 절 학교감사

1. 국가수석장학관

국왕이 추밀원령에 따라 임명하는 ‘교육, 학생 서비스 및 기술에 관한 국가수석장학관’(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이하 ‘수석장학관’이라 한다.) 및 ‘교육, 학생 서비스 및 기술에 관한 국가장학관’(Her Majesty's Inspector of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은 ‘교육, 학생 서비스 및 기술 기준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이하 ‘교육기준국’이라 한다.)³⁰²⁾의 직원이다.³⁰³⁾

300) EA 1997, s 19; Education (School Performance Targets) (England) Regulations 2004, Si 2004/2858.

301) EA 2002, ss 6-8.

302) 교육기준국은 장관에 의하여 임명되는 위원장, 장관에 의하여 임명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그리고 국가수석장학관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임명직 위원은 5년 이내의 임기로 임명되고 서면으로 사직하거나 직무수행의 무능 또는 부적합으로 해임될 수 있다. 교육기준국과 국가수석장학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데, 국가수석장학관만이 이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기준국에는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위원은 교육기준국의 위원이 아닌 자도 포함될 수 있다(EIA 2006, Sch 11). 교육기준국은 첫째, 국가수석장학관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전략적 우선사항을 결정하고, 둘째, 그러한 우선사항과 관련한 전략적 목

수석장학관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지만 직무수행을 하기에 무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임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장관에게 통지함으로써 사직할 수 있다.³⁰⁴⁾ 그 반면에 장학관의 임기는 수석장학관이 정하고, 만일 교육기준국 직원으로서의 직을 그만두는 경우에 그 지위가 종료된다.³⁰⁵⁾ 수석장학관의 권한은 법령에 따라 또는 그의 요구나 권한위임에 의하여 장학관, 기타 교육기준국 직원, 또는 보조장학관이 행사할 수 있다.³⁰⁶⁾

수석장학관은 장관에게 첫째, 수석장학관의 위임권한 내에서 활동의 질 및 그런 활동을 이행하여 얻는 이익을 받는 자에 의하여 성취된 기준, 둘째, 그런 활동의 질과 그런 기준의 개선사항, 셋째, 그런 활동이 사용자 중심의 활동으로 수행하는 범위, 넷째, 그런 활동 및 서비스 수행 결과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등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³⁰⁷⁾ 만일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석장학관은 요청시 특정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을 하여야 하고, 자신이 위임받은 권한 내의 활동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언제든지 장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³⁰⁸⁾ 수석장학관은 장관에게 연차보고서와 자신의 기능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안과 관련한 기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출판할 수 있다.³⁰⁹⁾

적 및 목표를 결정하며, 셋째, 국가수석장학관의 기능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EIA 2006, s 116).

303) EIA 2006, ss 113(1), 114(1)(3).

304) EIA 2006, s 113(6).

305) EIA 2006, s 114(5). 국가장학관에는 잉글랜드의 국가장학관 중 1인과 잉글랜드의 국가수석장학관 또는 성인학습감사단(Adult Learning Inspectorate)의 직원으로 복무 중인 자도 포함된다(EIA 2006, s 114(6)).

306) EIA 2006, Sch 12, Pt. 2 para 9(1).

307) EIA 2006, s 118(1).

308) EIA 2006, s 118(2)(3).

309) EIA 2006, s 121.

2. 계속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감사

수석장학관은 장관이 정기적으로 계속교육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³¹⁰⁾ 계속교육 및 훈련의 범위는 ① 잉글랜드 및 계속교육분야 내의 기관이 제공하는 중등교육, ②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그 기관에서 제공하고 잉글랜드의 ‘학습 및 기술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계속교육, ③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학습 및 기술위원회의 재정지원을 받는 계속교육, ④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잉글랜드의 지방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계속교육, ⑤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계속교육, ⑥ 16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장관의 재정지원을 받는 훈련, ⑦ 16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용주의 부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위원회의 재정지원을 받는 훈련, ⑧ 장관이 규칙³¹¹⁾으로 정한 교육 또는 훈련이다.³¹²⁾ ‘훈련’에는 교육 또는 훈련 시설에서 일하는 교원, 강사, 트레이너 또는 기타의 자를 위한 훈련이 포함된다.³¹³⁾ 수석장학관은 감사 종료 후 계속교육 및 훈련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수석장학관이 감사대상이 되는 교육 또는 훈련이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자들의 합리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적합한 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수석장학관은 작성한 보고서 복사본을 장관, 학습 및 기술위원회, 감사대상이 되는 교육 또는 훈련에 재정을 지원한 지방교육청, 그리고 교육 또는 훈련의 제공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³¹⁴⁾

310) EIA 2006, s 124(2).

311) 규칙에는 정보, 조언 또는 지침에 관한 규정이나 이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EIA 2006, s 123(3).

312) EIA 2006, s 123(1).

313) EIA 2006, s 123(2).

314) EIA 2006, ss 124(3)-(7), 125, 126. 계속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는 지방교

3. 지역감사

수석장학관은 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지역감사’(area inspection)를 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첫째,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잉글랜드의 특정 지역에서 행하여진 특정 내용의 교육 또는 훈련의 질 및 유용성, 둘째, 교육 및 훈련을 받는 자들이 달성한 기준, 셋째, 재정 자원이 교육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자들에게 유용한 것인지 여부 등이다.³¹⁵⁾ 지방교육청은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역감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수석장학관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³¹⁶⁾ 수석장학관은 지역감사보고서의 복사본을 장관, 학습 및 기술위원회, 그리고 감사 대상 지역 관할 지방교육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받은 장관은 보고서에 비추어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기간에 관한 설명서를 학습 및 기술위원회 또는 지방교육청에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³¹⁷⁾ 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교육청은 규칙으로 정한 기간 및 방식으로 설명서를 출판하여야 하고, 규정된 자에게 그 복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³¹⁸⁾

계속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수석장학관은 합리적 시간에 감사 대상 교육 또는 훈련이 제공되는 부동산과 그 시설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교육 또는 훈련 제공자의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제공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합리적 통지를 하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다.³¹⁹⁾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고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수석장학관은 감사대상이 되는

육청에 대한 보고서 복사본의 송부는 제외된다(EIA 2006, s 125(5)).

315) EIA 2006, s 128(1)(2).

316) EIA 2006, s 128(7).

317) 교육 또는 훈련 제공자도 조치 및 준비기간에 대한 설명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EIA 2006, s 127).

318) EIA 2006, s 130.

319) EIA 2006, s 131.

교육 또는 훈련에 관한 문서들을 복사하거나 취득할 수 있다. 즉, 문서를 보관하거나 책임있는 자에게 요구하고, 전자문서의 경우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컴퓨터 또는 주변장치의 기능에 접근하여 조사하고, 합리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³²⁰⁾ 수석장학관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감사를 위한 각종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약식기소되어 제4수준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4. 잉글랜드 지방교육청에 대한 감사 및 심사

수석장학관은 지방교육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각종 기능 및 장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능을 감사하고 심사할 수 있는데, 그 권한에는 지방교육청 관할 구역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청이 행사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그 대상이 되는 기능 중 주요한 것은 ① 관할구역 내 유아(young children)³²¹⁾의 복지 증진 및 불평등 해소,³²²⁾ ② 접근이 쉽고, 부모, 미래의 부모(prospective parents)³²³⁾ 및 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할 구역 유아서비스(early childhood services) 보장 제도의 입안,³²⁴⁾ ③ 일하는 부모를 위한 충분한 육아시설의 보장 및 육아시설제공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³²⁵⁾ ④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협조,³²⁶⁾ ⑤ 아동 및 청소년 계

320) EIA 2006, s 132.

321) ‘유아’는 출생부터 시작되어 5세가 된 날 다음 9월 1일에 종료된다(Childcare Act(‘CA’) 2006, s 19).

322) CA 2006, s 1(1).

323) 미래의 부모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계획하는 임부 또는 기타의 자를 의미한다(CA 2006, s 2(2)).

324) CA 2006, s 3(2). ‘유아서비스’는 ① 유아시설(early years provision), ② 유아, 부모 또는 미래의 부모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기능, ③ 유아, 부모 또는 미래의 부모와 관련한 보건서비스, ④ 부모 또는 미래의 부모의 지원 시설(Employment and Training Act 1973 s 2), ⑤ 지방교육청이 부모 또는 미래의 부모와 관련한 정보 및 지원 제공 서비스를 의미한다(CA 2006, s 2(1)).

325) CA 2006, ss 6, 13.

326) CA 2004, s 10.

획 입안,³²⁷⁾ ⑥ 18세 미만의 자와 관련한 사회서비스, ⑦ 기타 장관이 규칙으로 정한 기능 등이다.³²⁸⁾

수석장학관은 감사대상이 되는 기능 중 잉글랜드의 지방교육청이 수행한 전반적 기능 또는 특정 기능만을 감사할 수 있고, 장관이 요청한 기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³²⁹⁾ 감사를 종료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복사본을 감사대상인 잉글랜드의 지방교육청과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를 수령한 지방교육청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준비기간에 관한 설명서를 준비하여야 한다.³³⁰⁾ 매회계연도마다 수석장학관은 잉글랜드 각 지방교육청의 전체 실적을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사안에 대한 실적등급(performance rating)을 각 지방교육청에 주어야 한다.³³¹⁾

5. CAFCASS의 감사

1998년 7월 발간된 “가사소송절차 지원서비스 - 미래의 법원복지서비스 조직”이라는 자문문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아동·가정 법원 자문 및 지원 서비스”(Children and Family Court Advisory and Support Service : ‘CAFCASS’)로 알려진 법인을 신설할 것을 추천하였고, 이전에 가정법원복지서비스, 소송후견인 및 보도관 서비스(Guardian Ad Litem and Reporting Officer Service), 그리고 법무국(Official Solicitor's Office)이 수행하고 있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CAFCASS는 대법관이 임명하는 1인의 위원장과 기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CAFCASS는 간부직원 및 기타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데, 대법관의 승인을 얻어 기타 직원 중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매회계연도

327) CA 2004, s 17.

328) EIA 2006, s 135(1).

329) EIA 2006, s 136.

330) EIA 2006, s 137(1)-(3).

331) 회계연도는 4월 1일에 시작되어 다음연도 3월 31일에 종료한다. EIA 2006, s 138.

마다 대법관이 정하는 정보, 형식, 그리고 시간에 따라 그 기능의 성과를 대법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서 복사본을 각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³³²⁾

CAFCASS는 2001년 4월에 설립되어 고등법원 가사부, 군법원, 그리고 가사소송법원을 위하여 일하고, 소송 전에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소송에서 일정 신청에 대한 자문을 하고, 그 소송에서 진술하게 될 아동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며,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정보나 조언, 기타 지원을 한다.³³³⁾ 이러한 CAFCASS의 기능은 수석장학관에 의하여 감사되고, 기관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복사본을 장관 및 CAFCASS에 송부하여야 한다.³³⁴⁾ 감사를 위하여 수석장학관은 CAFCASS의 부동산, CAFCASS를 대신하는 기관의 부동산 등을 출입할 수 있고, 감사를 위하여 문서를 복사하고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및 그 주변장치에 접근하여 조사할 수 있다.³³⁵⁾

제 4 절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

1. 계속교육

가. 국가직업자격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이란 “의무교육학령 이상인 자의 자격에 적합한 전일제와 시간제 교육 및 그러한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제공된 ‘조직화된 여가직업’(organised leisure-time occupation)”을 말한다.³³⁶⁾ 많

332) Criminal Justice and Courts Services Act(‘CJCSA’) 2000, Sch 12.

333) CJCSA 2000, s 12(1).

334) EIA 2006, s 143.

335) EIA 2006, ss 144, 145.

336) EA 1996, s 2(3). “조직화된 여가직업”이란 그 자격에 적합한 조직화된 문화적 훈련 및 여가활동 같은 것으로 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에 의하여 이익을 받

은 학생들은 학교나 계속교육기관, 즉, 전문학교에서 계속하여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을 받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학교도 학술과정 뿐만 아니라 점차 광범위한 직업과정을 제공하고자 한다.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들은 계속교육기관에 입학하려고 하고, 계속교육기관은 학술적 직업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18세 되는 해에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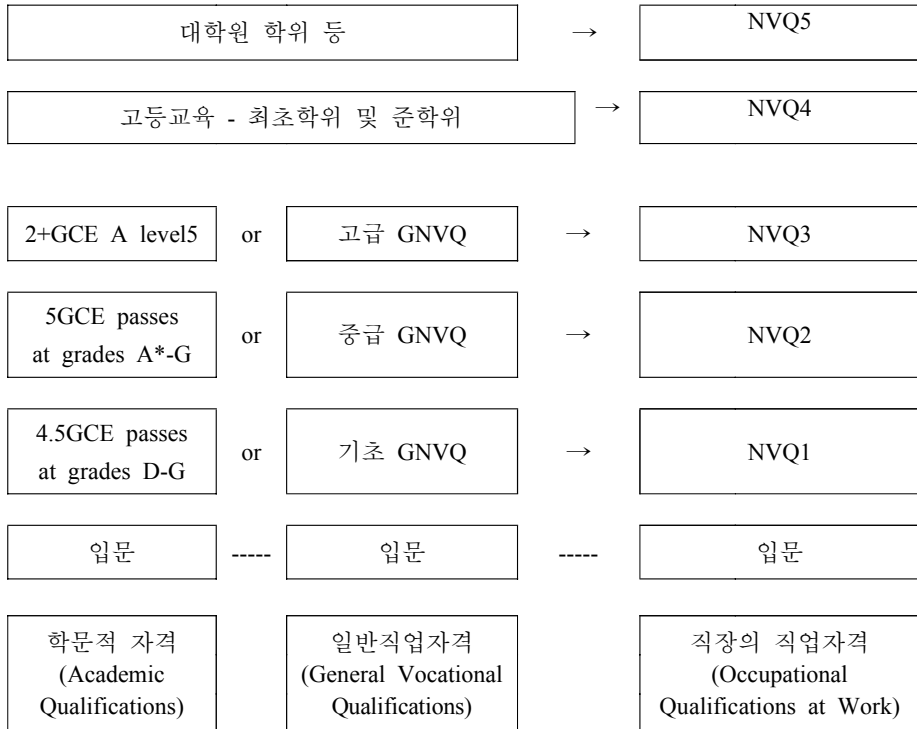
‘일반국가직업자격’(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GNVQs’) 과정은 전문학교나 학교에서 계속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선택적 교육 수단이다. 일반국가직업자격은 직업영역 - 기업, 보건과 사회의료, 또는 엔지니어링 - 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해하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국가직업자격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자격부여 과정인데 반하여, 특수직업과 관련하여 실무위주의 교육을 함으로써 그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인 ‘국가직업자격’(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NVQs’)이 있다.³³⁷⁾ 이 자격은 산업기준(industry defined standard)에 따라 설정된 특수직업이 요구하는 기술, 지식, 그리고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수많은 기준이 국가직업자격을 평가하려고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장 내에서의 관찰결과, 구두질문(oral questioning), 실무 및 서면 질문과 배치를 포함한다. 국가직업자격은 5가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제1수준(level 1)은 반쯤 숙련된 직업의 기초기술, 제2수준은 반쯤 숙련된 직업, 제3수준은 기술자/숙련공/기능인/감독 직업, 제4수준은 기술자/간부보좌직업(junior management occupation), 제5수준은 전문가/상급관리직업(senior management occupation)과 같다.

을 수 있고, 또한 기꺼이 받는 의무교육학령 이상인 자를 위한 여가직업을 의미한다(EA 1996, s 2(6)).

337)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직업자격’(Scottish Vocational Qualification: ‘SVQs’)이라고 부른다.

<그림 3> 국가자격구조³³⁸⁾



나. 계속교육법인

2000년의 ‘학습 및 기술법’은 계속교육과 관련하여 1992년의 ‘계속 및 고등교육법’의 일부를 대체하였다. 2002년 9월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계속교육재정지원위원회’(Further Education Funding Council)는 잉글랜드에서는 ‘학습 및 기술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로,³³⁹⁾ 웨일즈에서는 ‘전국 교육 및 훈련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Education and Training)³⁴⁰⁾로 각각 대체되었다. 위원회는 16-19세 집단

338) <<http://www.dfes.gov.uk/trends/index.cfm?fuseaction=home.showChart&cid=1&iid=1&chid=3>>.

339) LSA 2000, s 1.

340) LSA 2000, s 30.

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적절한 시설의 공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 이외의 19세 이상의 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합리적 시설의 공급을 보장’하여야 한다.³⁴¹⁾ 위원회는 지방위원회, 청소년 학습위원회 및 성인학습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³⁴²⁾ 계속교육을 받은 자는 학생이 아닌데 그 이유는 학생이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의 ‘학습 및 기술법’에 의하여 계속교육법인도 키 스테이지 4의 교육 및 16-19세의 중등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의무교육학령 학생과 함께 학교에서 전일제교육을 받는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은 개념상 중등학교 학생이다. 학생이 18세가 되기 전에 중등교육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 과정에 출석하는 경우 학생이 19세가 된 후에도 그가 받는 교육은 중등교육이다.³⁴³⁾

계속교육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보다는 계속교육법인(further education corporation)이 경영하는 계속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1993년 4월부터 대다수 계속교육전문학교와 공립 제6학년학교(sixth college) 및 이미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기타 학교로 재편되었다.³⁴⁴⁾ 기타 계속교육법인의 법인격은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데,³⁴⁵⁾ 장관은 주로 15-18세의 전일제 교육과 관련하고 운영위원회 및 지방교육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립기관에 한해서만 허용할 수 있다. 장관은 학습기술위원회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기타 교육기관을 계획할 수 있는데, 16-18세를 위하여 제공하고 첫째, 정부보조학교, 즉, 제6학년 학교, 둘째, 지방교육청이 지원하는 비학교기관(non-school institution), 즉, 농업전문학교 또는 원예전문학교, 셋째, 지방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고 1996년 교

341) LSA 2000, ss 2-3.

342) LSA 2000, ss 9-22, Sch 2-3.

343) EA 1996, ss 2(1), 2A, 2B; EA 2002, s 77.

344)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FHEA’) 1992, s 15; Education (Further Education Corporation) Order 1992, SI 1992/2097, para 3.

345) FHEA 1992, s 16.

육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기관,³⁴⁶⁾ 즉, 디자인 또는 예능전문학교, 또는 성인을 위한 장기기숙전문학교(long-term residential college) 중 하나이어야 한다.

계속교육법인은 계속 및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시설과 관련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계속교육법인은 첫째, 토지 및 기타 재산을 취득·처분할 수 있고, 둘째, 주요한 권한(principal powers)을 행사하면서 실천된 활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이행과 관련한 교원 또는 기타 직원의 고용계약 및 법인에 의한 활동 이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셋째, 금전을 차용하거나 그 차용과 관련하여 법인 토지 또는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넷째, 금전, 토지 또는 기타 재산을 접수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으로 이를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고, 다섯째, 장학재단의 설립 및 보조금 접수, 각종 포상 수여 등과 같은 계속 또는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다.³⁴⁷⁾

교육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모든 계속교육법인은 그 구성을 위한 기관 및 기관을 경영하기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관은 계속교육법인 회원의 수, 자격요건 및 그 임명과 추천, 1인 이상의 임원, 위원회 설립, 임원 또는 위원회의 기능 위임 등을 정할 수 있다.³⁴⁸⁾ 18세 미만의 자는 참여 및 투표권이 제한되는 학생회원으로 추천되는 것을 제외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없다.³⁴⁹⁾ 회의는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의사록 및 각종 문서는 감사를 위하여 공개된다.

346) EA 1996, s 485.

347) FHEA 1992, ss 18(1), 19(4).

348) FHEA 1992, s 20, Sch 4.

349) The Education (Government of Further Education Corporations) (Former Sixth Form Colleges) Regulations 1992, SI 1992/1957; The Education (Government of Further Education Corporations) (Former Further Education Colleges) Regulations 1992, SI 1992/1963, para 13(6).

다. 학습기술위원회

학습기술위원회는 조건을 붙여 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만, 개인 또는 개별 기관과 관련하지 않아야 한다. 조건은 첫째, 위원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둘째, 특정재정자원의 제공을 보장하면서 위원회가 모든 사람에게 특정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며, 셋째,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장관은 지급된 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넷째,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이자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³⁵⁰⁾

위원회는 16세 이상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재정자원 - 물품 또는 용역(goods or services) - 을 보장하여야 한다.³⁵¹⁾ 또한 학생에게 보조금을 주도록 명하거나 기관이 학생에게 배분하도록 재정을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하여 기숙시설 등의 시설에 재정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³⁵²⁾ 계속교육기관의 설립, 직업 및 전문직을 위한 제한된 범위의 고등교육 시설, 의무교육학령학생에 대한 계속 및 고등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중등교육,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정보, 조언, 지침 등에 대한 재정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³⁵³⁾ 만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불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³⁵⁴⁾ 그리고 15-19세 사이의 학생을 위한 직장경험을 얻기 위한 각종 시설을 확보하고 기업과 청소년 사이의 연계를 촉진하여야 한다.³⁵⁵⁾

350) LSA 2000, s 27(3).

351) LSA 2000, ss 5(1)(a)(b).

352) LSA 2000, ss 5(c), 13.

353) LSA 2000, ss 5(1)(c)-(i).

354) LSA 2000, s 6; FHEA 1992, s 54.

355) LSA 2000, s 8.

2. 고등교육

1992년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가 설립되면서 ‘대학교재정지원위원회’(Universities Funding Council)와 ‘폴리테크닉학교 및 전문학교 재정지원위원회’(Polytechnics and Colleges Funding Council)는 폐지되었다.³⁵⁶⁾ ‘고등교육과정’은 계속교육과정과는 구별되는데, 여기에는 ① 교원 또는 청소년 및 지역사회 근로자의 계속교육과정(course for the further training), ② 상급학위과정을 포함한 대학원 과정, ③ 최초학위과정(first degree course), ④ 고등교육학위과정, ⑤ 고등 1급 기술 검정(Higher National Diploma)과정, 상공교육위원회 고등 2급 기술검정(Higher National Certificate of the Business & Technician Education Council)과정, 또는 경영학학위(Diploma in Management Studies)과정, ⑥ 교육검정(Certificate in Education)과정, ⑦ 고등수준의 전문직 시험 준비과정, ⑧ 시험준비 여부와 무관한 고등수준의 교육 제공프로그램이 있다.³⁵⁷⁾

“고등교육기관”은 대학교와 고등교육법인 또는 지정기관(designated institution)³⁵⁸⁾이 경영하는 기관을 말한다.³⁵⁹⁾ 대학교는 2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국왕의 특허장 또는 의회입법에 따라 1992년 이전에 설립된 기관과 ‘계속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및 지정기관을 대학교라고 한다.³⁶⁰⁾ 고등교육법인(higher education corporation)은 교육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즉, 지방교육청이 유지하는 기관이나 계속교육법인이 운영하는 계속교육기관에서 고

356) FHEA 1992, ss 62, 63(1).

357) FHEA 1992, s 90(1); ERA 1988, Sch 16, para 1.

358) 지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과정에 전일제에 상당하는 등록자수가 전체 학생의 55% 이상이어야 한다(ERA 1988, s 129).

359) FHEA 1992, s 65(5).

360) FHEA 1992, s 77;

등교육과정에 전일제에 상당하는 등록자수가 55%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인으로 인정된다.³⁶¹⁾

장관은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보조금이나 대출금의 지급, 또는 특정 기관에 대한 지급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³⁶²⁾ 그러나 개별기관, 과정, 연구, 대학직원의 임명 또는 학생입학허가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위원회는 고등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은 지방교육청이 유지하고 지원하는 기관 또는 계속교육기관의 시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일정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급 기간 및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³⁶³⁾ 위원회는 고등교육의 질을 평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³⁶⁴⁾

361) ERA 1988, ss 122(1), 122A; FHEA 1992, s 74(1).

362) FHEA 1992, s 68; THEA 1998, s 26(4).

363) FHEA 1992, ss 65(2)(c), 65(3)(a), 66(1).

364) FHEA 1992, ss 70(1)(a), (b).

제 5 장 유럽연합과 교육정책

제 1 절 유럽연합조약

유럽공동체(Europe Community: 'EC') 차원에서 공동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73년의 “교육에 관한 공동체 정책에 관하여”(For a Community Policy on Education)라는 보고서부터이다. 이 보고서는 회원국의 교육정책은 경제정책과 상호보완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공동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면 효과적으로 유럽통합을 질적인 측면에서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제안하였다. 구성국가들 사이의 민족주의적 가치체계의 고착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회원국 언어강의를 진흥하고, 둘째, 학생과 교사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시설간의 협동을 증진하며, 셋째, 성인교육제도를 확충하고 졸업증서를 구성국가 사이에서 상호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실현을 위하여 1976년 유럽공동체 회원국 교육관계장관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분야의 실행 프로그램’을 통과시켰으나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교육분야에서 회원국 상호간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또는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에 의해서이다. 1992년에 체결되어 1993년에 발효된 이 조약에 따라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 유럽공동체는 정치통합을 위하여 유럽연합(Europe Union: 'EU')으로 변화되었다. 이 조약에서 교육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역할 및 활동, 그리고 직업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대하여 유럽공동체는 구성국가 사이의 협동을 장려하고, 교육내용, 교육시스템의 조직 및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구성국가의 책임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필요한 경우 그 활동을 지원하고 보

완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활동은 첫째, 교육 특히 구성국가의 언어교육 및 진파를 통한 유럽적 차원(European dimension)의 개발, 둘째, 학생 및 교원 이동의 촉진, 특히 학위 및 학습기간의 학문적 인정 촉진, 셋째, 교육시설 사이의 협동 증진, 넷째, 구성국가 교육시스템 문제에 대한 정보 및 경험 교환, 다섯째, 청소년 교환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회교육 강사 교환프로그램의 개발 촉진, 여섯째, 원격교육개발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및 지역위원회(Committee of Regions)와의 협의를 거친 후,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위원회 제안에 대하여 ‘특정다수결’(qualified majority)³⁶⁵로 권고안을 채택할 수 있다.³⁶⁶

직업교육 정책은 구성국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첫째,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산업변화에의 적응 촉진, 둘째,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업훈련의 개선, 셋째, 직업훈련에의 접근 촉진 및 강사, 조교 그리고 특히 청소년의 이동 촉진, 넷째, 구성국가의 훈련시스템에 공통된 문제에 대한 정보 및 경험 교환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체와 구성국가는 직업훈련부문을 제3국 및 국제조직과의 협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목표실현을

365) 특정다수결은 2000년 ‘정부 간 회의’(Inter Governmental Conference) 및 니스조약(Nice Treaty)에 따라 구성국가에 할당된 투표수는 인구가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산정되었다. 그 결과 평의회 결정의 정당성은 인구학적 대표성의 견지에서 정당화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유럽연합이 확장됨에 따라 특정다수결은 전체 345표 중 255표까지 확대되었다. 더욱이 구성국가는 특정다수결이 최소 유럽연합 전체인구의 62%를 대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채택되지는 않았다. 다양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 특정다수결 투표는 현재 만장일치로 대체되었으며, 유럽연합 헌법도 45개의 ‘신 특정다수결투표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특정다수결은 구성국가 55%의 찬성을 얻거나 유럽연합 총 인구의 65%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2중다수결’(twofold-majority)에 따르게 된다. 또한 인구가 많은 구성국가가 결정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4개국 이상의 저지소수를 정하고 있다.

366) Treaty on European Union Art. 126.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³⁶⁷⁾

제 2 절 교육통합을 위한 소크라테스프로그램

유럽연합조약에 근거하여 구성국가 사이의 교육통합을 위한 노력 및 교류를 강조하면서 기존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소크라테스 프로그램(Socrates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소크라테스 I’과 ‘소크라테스 II’ 등 2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1995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고, 후자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1. 소크라테스 I 프로그램³⁶⁸⁾

가. 내 용

‘소크라테스 I’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언어기술(Lingua), 공개·원격 교육 및 학습,³⁶⁹⁾ 그리고 정보 및 경험의 교환 영역에서의 수평적 활동(Horizontal Action)뿐만 아니라 고등교육(Erasmus), 학교교육 및 성인 교육(Comenius) 등 3개의 공동체 활동(Community action)영역으로 구분한다. 수평적 활동은 ‘① 공동체의 언어기술(Lingua), ② 정보통신기술과 공개·원격 교육 및 학습, ③ 성인교육과 기타 보완적 조치뿐만 아니라 정보 및 경험의 교환’을 증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고등교육은 ‘고등교육기관의 유럽적 차원의 증대 및 학생이동보조금의 지원’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 등은 ‘①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시설 사이의 협동, ② 이민노동자, 집시, 여행자와 행상인의 자

367) Treaty on European Union, Art. 127.

368) 아래의 내용은 <<http://europa.eu/scadplus/leg/en/cha/c11023.htm>>을 정리한 것이다.

369) ‘공개 및 원격 교육’은 정보통신 기술 및 진보적 시설의 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는 모든 형태의 유연한 교육형태를 말한다. 95/819/EC Art. 2.

식들에 대한 학교교육 및 지적 교육, ③ 교육자 기술의 최신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1995년 3월에 채택된 이 프로그램³⁷⁰⁾은 모든 수준의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럽적 차원을 개발하며, 공동체 언어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켜 시민들이 유럽연합이 완성됨으로써 갖게 되는 기회를 이용하고, 동시에 공동체 국민 사이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이동을 증진하고, 둘째, 전체 구성국가의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기관 사이의 광범하고 긴밀한 협동을 증진하고 교원의 이동을 통한 지적 잠재력을 일깨우고자 한다.

나. 평 가

이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의 15개 구성국가와 유럽경제지역(Europe Economic Area: 'EEA') 3개국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 이 참여하고 있었는데,³⁷¹⁾ 멀티미디어 정보시설 및 텔레메틱스(telematics)의 이용 외에 교육수단 및 과목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과 공개·원격 교육 및 학습을 통한 전문지식과 경험의 이동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구성국가 교육시스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촉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학교교육, 성인교육 및 공개·원격 학습의 영역에서 유럽의 협동이 증대되었다. 예를 들면, 참가국 중 한 국가에서 316,000명의 학생이 인정된 학습기간을 보냈고, 26,000명의 교원과 조교가 외국에서 교육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약 8만명의 청소년이 공동 프로젝트 또는 언어교류에 참여하였다.³⁷²⁾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한편으로는 질 좋은 교육 및 훈련을 개발

370) 95/819/EC; 98/576/EC.

371) 1997-1998년 이후에는 사이프러스(Cyprus)의 국민과 기관, 그리고 중·동부유럽 국가 -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 에 적용되었고, 1999년에는 불가리아와 슬로베니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372) COM(97)99.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에서 공개된 유럽적 협동영역을 만드는 등 큰 발전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을 위한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고, 그 내용이 너무 모호하여 예산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대중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수요를 보다 잘 충족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³⁷³⁾ 이 프로그램은 언어지식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지적 차원을 장려하며, 이동 및 교환을 증진하고, 모든 수준의 시설 사이의 협동과 공개 및 원격 교육을 장려하며, 높은 질의 교육 및 훈련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였다.³⁷⁴⁾

2. 소크라테스 II 프로그램³⁷⁵⁾

가. 내 용

이 프로그램은 평생학습의 증진 및 지식 유럽의 개발을 주요 이념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첫째,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유럽적 차원을 강화하고, 둘째, 외국어지식을 향상시키며, 셋째, 교육영역에서의 협동 및 이동을 증진하고, 넷째, 교육에서 신기술의 이용을 장려하며, 다섯째, 모든 교육부문에서 평등한 기회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³⁷⁶⁾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8개의 활동이 전개된다.

1) 코메니우스(Comenius) - 학교교육(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373) COM(99)60.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위원회는 ① 소크라테스 위원회(프로그램의 효율적 실행에 기여), ② 국가기관(지방분권적 활동의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지지만, 단일 구성국가에서의 복수기관, 그 기관 사이의 협조 및 자원의 부족같은 어려움이 발생), ③ 소크라테스 및 청소년기술지원국(Socrates and Youth Technical Assistance Office)(경영은 만족스럽지만 외부평가는 기술지원국의 자원 및 그 활동을 완전하게 수행하려고 허용하는 의무를 강화하도록 추천) 등 3가지 구조를 제시하였다.

374) COM(2001)75.

375) 아래의 내용은 <<http://europa.eu/scadplus/leg/en/cha/c11043.htm>>을 정리한 것이다.

376) 253/2000/EC.

교육의 질을 증진하고 유럽적 차원을 강화하며, 언어학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코메니우스 프로그램은 학교프로젝트, 언어(linguistic)프로젝트, 학교발전프로젝트,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기관 사이의 다각적 협동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공동체 및 시민사회의 활동가를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미래의 교원에게 개인보조금을 제공한다.

2) 에라스무스(Erasmus) - 고등,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

이 프로그램은 이동 및 언어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1987년의 ‘유럽 대학생 이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학생 이동을 장려하고 교원이 공동과정, 프로그램심화과정을 교환하고 개발하는 데 참여하도록 한다.

3) 그룬트비(Grundvig) - 성인교육 및 기타 교육 경로

이 프로그램은 학교시스템에서 배제된 성인의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코메니우스 및 에라스무스를 보완하려고 한다. 비공식적 기관(informal institutions) - 협회, 박물관 등 - 은 물론 공식적 기관(formal institutions) - 학교, 대학교 - 을 대상으로 교육수준 사이의 협동을 증진하고, 교육 연대를 구축하며, 훈련을 위한 이동활동을 수행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그룬트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4) 링구아(Lingua) - 언어학습

이 프로그램은 언어의 목표된 학습 및 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3개국 이상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기관 출신 교원 및 학생이 언어학습을 통하여 유럽시민임을 인식하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그러한 사실을 공지하고, 언어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5) 미네르바(Minerva) - 교육의 정보통신기술

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기술, 멀티미디어 및 개방·원격학습의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및 대학교 교원과 학생을 원칙적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멀티미디어 산업, 정보통신기술과 시민사회 출신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혁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신교육방법을 계획하며, 프로젝트 결과를 전달하고 개방·원격학습 및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경험의 교환을 증진하고자 한다.

6) 교육시스템의 관찰 및 혁신

각 나라의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하여 다른 구성국가의 교육내용을 관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넓은 의미의 전체 교육공동체 및 시민사회 - 지방기관, 교원, 비정부기구(NGOs) - 를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시스템 및 정책의 비교분석개발(Eurydice), 연구방문계획(Arion), 기관망의 구축(Naric), 학위인정 장려 및 시험적 프로젝트의 착수를 수행하고자 한다.

7) 공동조치(Joint measure)

교육정책(Socrates), 직업훈련(Leonrdo da Vinci) 및 청소년(Youth) 프로그램의 시너지를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3개 프로그램에 공통된 주제에 대한 제안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행한다.

8) 수반조치(Accompanying measures)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문에 서의 협동을 증진하고, 프로젝트결과를 전파하며, 프로젝트의 완성도 및 프로그램의 다양한 조치 사이의 시너지를 향상시키려고 한다.

소크라테스II 프로그램에는 유럽연합의 모든 구성국가와 유럽경제지역의 3개국, 그리고 후보국가 2개국 - 불가리아, 루마니아 - 및 터키에 개방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과의 보다 직접적인 연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국가의 국가기관에서 집행한다. 프로그램 실행 결과 학생 및 모든 학습자, 모든 범위의 교육직원, 모든 형태의 교육시설, 지방, 지역, 그리고 국가 수준의 교육시스템 및 정책에 대하여 책

임있는 사람과 기관이 그 수혜자가 된다. 참여자도 교육시설과 협동하는 公私機關에 개방되어 있는데, 특히 지방 및 지역 기관과 단체, 교육분야에서 활동하는 협회, 학부모협회, 기업 및 기업집단과 전문가 단체, 상업·산업회의소, 모든 수준의 사회연대단체, 연구센터 및 단체가 주된 참여자이다.

나. 평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II 프로그램은 많은 활동으로 구성된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2000-2003년 동안 18억5천만 유로의 예산과 15개 연합국가의 연간기부금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대규모 활동은 물론 중소규모의 많은 활동이 있었고, 교육부문을 대체로 망라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은 기관 사이의 협동에서도 효과적이다. 학교 및 성인훈련기관을 포괄하는 연대(partnership)는 국경을 넘는 협동 프로젝트만큼 강화되었다. 이동활동, 특히 학생이동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매우 효과적이어서 2002년 1백만명의 에라스무스 학생이 있었고, 2010년에는 3백만명의 학생으로 증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학생이동은 증대된 반면에 교원과 조교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또한 결과의 가시성 및 전파의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

모든 프로그램의 집행은 프로젝트별, 국가 및 공동체 관리구조 등 모든 수준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졌고, 활동의 관리가 중앙으로부터 벗어날수록 대중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활동의 성질 및 규모를 절차와 비교하여 볼 때,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다소 떨어진다. 여기에는 효과적인 전자관리수단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며 절차의 현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제 3 절 고등교육³⁷⁷⁾

1988년 9월 18일 볼로냐대학교(University of Bologna) 설립 9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학교총장들은 ‘대학교 대헌장’(Magna Charta Universitatum)을 발표하면서, “새 천년 말에 인류의 미래는 대체로 문화적, 과학적, 기술적 발전에 달려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³⁷⁸⁾ 1998년 5월 25일에는 파리대학교 8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의 교육부장관은 소르본선언(Sorbonne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유럽의 고등교육시스템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건설하는 유럽은 유로화, 은행, 그리고 경제의 유럽이 아닌 지식의 유럽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⁷⁹⁾ 이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등교육시스템의 통일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다.

1999년 6월 19일 유럽 29개국이 서명한 볼로냐선언은 소위 볼로냐과정(Bologna process)을 제안하게 된다. ‘볼로냐과정’은 2010년까지 학생, 교원 및 연구원의 이동을 증진하고, 읽고 비교하기 쉽고,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하며, 고등교육의 유럽적 차원을 고려한 학문적 학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학위를 ‘학사-석사-박사’ 등 3사이클에 근거하여 보다 투명한 제도를 지향하면서 서로 다른 고등교육시스템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볼로냐선언은 ① 읽고 비교하기 쉬운 학문적 학위제도, ② 2사이클에 근거한 제도,³⁸⁰⁾ ③ 학점은행제 및 학점 이동제, ④ 학생, 교원, 그리고 연구원의 이동, ⑤ 협동, ⑥ 고등교육의 유럽적 차원 등 6가지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377) 아래의 내용은 <<http://europa.eu/scadplus/leg/en/cha/c11088.htm>>을 정리한 것이다.

378) <http://www.bologna-bergen2005.no/Docs/00-Main_doc/880918_Magna_Charta_Universitatum.pdf>.

379) <http://www.bologna-bergen2005.no/Docs/00-Main_doc/980525SORBONNE_DECLARATION.PDF>.

380) 첫 번째 사이클은 고용시장에 맞춰지고 최소 3년간 지속되고, 첫 번째 사이클을 마친 후 두 번째 사이클(석사)을 할 수 있다.

2001년 5월 발표된 프라하 성명(Prague Communique)은 볼로냐과정에 평생학습,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의 참여, 유럽고등교육지역의 매력 증진 등과 같은 활동을 추가하였다.³⁸¹⁾ 그리고 2003년 베를린회의에서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들은 연구, 연구훈련 및 학제간 연구, 고등교육의 질 향상,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볼로냐 과정에 ‘유럽고등교육지구’(European High Education Area) 및 ‘유럽연구지구’(European Research Area: ‘ERA’) 사이의 박사과정 및 협력을 포함시켰다. 2005년 5월에 있는 ‘베르겐성명’(Bergen Communique)은 볼로냐과정의 목표 실현을 위하여 첫째, 질 좋은 고등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이행하고, 둘째, 국가자격검정구조를 도입하며, 셋째, 박사수준을 포함한 공동학위를 수여하고 인정하며, 넷째, 고등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선언 및 성명은 서명국가가 각 국가의 교육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구성국가는 교육시스템의 내용 및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진다.³⁸²⁾

제 4 절 직업 및 평생 교육

1.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³⁸³⁾

이 프로그램은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한 것으로 1995-1999까지의 첫 번째 프로그램 -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I 프로그램’ - 과 2000-2006까지의 두 번째 프로그램 - ‘레오나르도 다 빈치 II 프로그램’ - 으로 구분된다.

381) <http://www.bologna-bergen2005.no/Docs/00-Main_doc/010519PRAGUE_COMMUNIQUE.PDF>.

382) 유럽공동체조약(EC Treaty) 제149조는 공동체가 “구성국가 사이의 협동을 장려함으로써 질 좋은 교육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83) 아래의 내용은 <<http://europa.eu/scadplus/leg/en/cha/c11025.htm>>을 정리한 것이다.

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 I 프로그램³⁸⁴⁾

이 프로그램은 구성국가들이 행한 활동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체직업교육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³⁸⁵⁾ 공동체활동은 다음을 목표로 한 공통구조에 기초하고 있다. 그 목표는 ① 구성국가의 직업훈련시스템 및 시설의 질과 능력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 ② 직업훈련 및 지도에서 유럽적 차원을 개발할 것, ③ 평생직업훈련을 진흥하고 연합정책을 지원할 것, ④ 미숙련성인의 직업훈련수단을 장려할 것, ⑤ 직업교육 및 훈련의 지위와 매력을 증진하고 학문적·직업적 자격 사이의 등가성을 갖도록 육성할 것, ⑥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을 증진하고 성인 및 근로활동을 준비할 것, ⑦ 적절한 훈련이 부족한 불우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수단을 장려할 것, ⑧ 불우한 사람을 위하여 최초 및 계속 훈련을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⑨ 기술요건 및 훈련수요에 관한 협동을 증진하고, 자격의 취득 및 투명성, 그리고 기술적 발전에 적합한 주요기술의 이해를 촉진할 것, ⑩ 기술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의 결과에 비추어 직업훈련을 증진할 것, □ 공개적 유럽직업훈련 및 자격영역(qualifications area)의 점진적 발전을 증진할 것, □ 공동체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의무교육의 정점에서 최초 직업교육을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이다.

위원회는 구성국가와 협의하여 부칙에서 정한 공동체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데, COMETT, EUROTENET, FORCE, PETRA, 그리고 LINGUA 프로그램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이 프로그램의 구조 내에서 실행될 조치 사이의 적절한 변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의회결정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 I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384) 아래의 내용은 <<http://europa.eu/scadplus/leg/en/cha/c11011.htm>>을 정리한 것이다.

385) 94/819/EC.

공동체 수준의 재원이 요구되고,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6억 2천만 ECU가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최초직업훈련을 받는 2만 2천명의 청소년, 1만명의 근로자 및 1만 3천명의 고등교육학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5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구성국가의 직업훈련제도 및 계획을 개발할 계기가 되었고, 훈련에 참여한 주요 활동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우선적 투자대상으로 보았으며, 새로운 자격, 새로운 직업프로필 등에 대한 혁신적 제안을 함으로써 구성국가 직업훈련의 혁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구성국가는 국경을 초월한 다자간 협동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국경을 초월한 이동에 기여하였고, 진정한 훈련전략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직업훈련분야를 통합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위원회가 유럽전체에서 이용하고 전파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프로젝트의 결과는 전파되지 않았고, 프로그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절차가 다소 부담스러운 단점이 있었다. 국가 보고서 및 외부평가보고서 및 경험에 따른 교훈을 기초로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안이 있게 되었다.

나. 레오나르도 다 빈치Ⅱ 프로그램³⁸⁶⁾

레오나르도 다 빈치Ⅱ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의 증진 및 직업훈련영역의 참가자 사이의 공동체수준의 계속적 협동을 통한 유럽교육지구의 창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⁸⁷⁾ 이 프로그램은 첫 번째 프로그램의 경험 및 “지식 유럽을 향하여”(Towards a Europe of Knowledge)라는 보고서에서 위원회가 설정한 목표를 중심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386) 아래의 내용은 <<http://europa.eu/scadplus/leg/en/cha/c11025.htm>>을 정리한 것이다.

387) 1999/382/EC.

한 목표는 첫째, 국민, 특히 청소년의 경쟁력과 기술을 강화하고, 둘째, 지속적인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고 자격 및 기술의 평생 취득을 향상시키며, 셋째, 경쟁력과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혁신과정에서 직업훈련시스템의 기여를 증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실현을 위하여 ① 유럽의 직업훈련을 경험한 사람 및 훈련조직자(training organisers)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을 지원하고, ② 직업훈련의 혁신 및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경을 초월한 연대에 근거한 시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③ 광범하게 사용되고 교육되지 않는 언어를 포함한 언어기술을 증진하고, 직업훈련의 내용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④ 경험 및 좋은 실천방안의 교환을 촉진하는 국경을 초월한 협동네트워크의 개발을 지원하고, ⑤ 공동체 참고자료 및 비교자료를 개발하고 최신화하며, ⑥ 다른 공동체 프로그램과의 공동활동을 개발하고, ⑦ 수반조치를 계획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대중, 사법인 및 사설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학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훈련기관, 연구소 및 연구기관,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업계단체, 지방 내지 지역 기관 및 단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구성국가와 협동하여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2003년 12월과 2007년 6월까지 제출된 보고서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유럽의회, 평의회, 그리고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³⁸⁸⁾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 II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³⁸⁹⁾에 의하면 시행 첫 4년 동안 예산의 80%를 이동 및 시험적 프로젝트에 할당하여 성공적

388) 4번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제1 중간보고서는 2002년 6월 30일까지의 프로그램의 최초 기능적 이행에 관한 것이었고, 제2 중간보고서는 2004년 6월 30일까지의 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것이었으며, 제3 중간보고서는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최종보고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것이다.

389) COM (2004) 152.

이었지만, 기타의 활동, 예를 들면 언어능력,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 참고자료, 공동활동의 경우에는 취약성이 드러났다. 취약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이 평생학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평생학습프로그램³⁹⁰⁾

가. 목적 및 목표

2002년 6월에 제출된 유럽위원회의 중간보고서³⁹¹⁾에 의하면 유럽을 세계적인 경쟁력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사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 평생학습의 역할을 확신함으로써 ‘리스본유럽평의회’(Lisbon European Council)는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추가하였다.³⁹²⁾ 유럽평생학습지구(European area of life-long learning)는 프로그램 내의 모든 활동의 지도원칙이 되었고,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목표는 첫째, 학습을 최적화하고 학습기간, 자격 그리고 학위의 상호인정을 보장할 것, 둘째, 새로운 형태의 학습 및 교육을 증진하고 직업 교육 및 훈련의 기본기술을 배양할 것, 셋째, 지침을 개선하고 경험 및 기준을 교환하여 협의할 것 등 3가지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에 기초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Lifelong Learning Programme) 2007-2013’은 평생학습에 관한 모든 유럽프로그램을 포괄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상호교환, 협동, 그리고 이동을 개발하고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및 훈련시스템은 리스본 전략에 따르고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① 질 좋은 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높은 성과, 혁신, 그리고 시스템과 실천방안에 있어서 유럽적 차원을 향상시킬 것, ② 유럽평생학습지구의 실현을 지원

390) 아래의 내용은 <<http://europa.eu/scadplus/leg/en/cha/c11082.htm>>을 정리한 것이다.

391) COM (2002) 315.

392) <<http://europa.eu/scadplus/leg/en/cha/c10242.htm>>.

할 것, ③ 평생학습을 위한 기회의 질, 매력, 그리고 접근가능성을 개선할 것, ④ 사회적 일체성, 능동적 시민권, 문화간(intercultural) 대화, 양성평등(gender equality),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것, ⑤ 창조성, 경쟁성, 고용가능성, 그리고 기업가적 기질의 성장을 촉진할 것, ⑥ 특별 요구 및 불우한 집단을 포함한 모든 연령의 국민이 평생학습에의 참여를 증대하는 데 기여할 것, ⑦ 언어학습 및 언어적 다양성을 증진할 것, ⑧ 정보통신기술 기반 자원의 개발을 지원할 것, ⑨ 유럽적 가치와 관용의 존중 및 다른 나라 국민과 문화에 대한 존중에 근거한 유럽적 시민권의 의미를 만드는 역할을 강화할 것, ⑩ 모든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 질을 보장하기 위한 협동을 증진할 것, □ 결과, 혁신적 성과, 그리고 절차를 최고로 이용하고, 좋은 실천방안의 교환을 장려하여 그 질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활동

목적실현을 위한 활동으로는 ① 평생학습부문에서 국민의 이동, ② 양자 및 다자간 연대, ③ 국경을 초월한 혁신을 이전하여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질을 증진하려는 자를 포함한 단독적, 국가적 또는 다국가간 프로젝트, ④ 다자간 네트워크, ⑤ 평생학습과 그 구성요소의 분야에서 정책 및 시스템 연구·조사, ⑥ 기관 또는 협회가 부담하는 경영 및 집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보조금, ⑦ 수반조치, 즉, 프로그램의 목적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제안, ⑧ 이러한 활동을 위한 준비행동, ⑨ 프로그램 감시와 평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정보, 출판 및 전과 활동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세미나, 회합, 전문가회의와 같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의 인식을 증대하기 위한 활동의 조직 등 8가지이다. 이 프로그램은 구성국가에만 개방된 것이 아니라 유럽자유무역협회(Europe Free Trade Association) 국가, 스위스, 유럽연합후보국가 및 서부발칸반도의 후보국가에도 개방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는 제3국가 및

국제기구 - 유럽평의회 또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와도 협동하도록 하고 있다.

다. 분야별 프로그램

활동프로그램은 6개의 하위프로그램으로 나뉜다.

1) 코메니우스 프로그램

코메니우스(Comenius) 프로그램은 중등교육말까지의 취학전 교육 및 학교교육, 그리고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를 망라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2개의 특수한 목적이 있는데, 첫째, 청소년과 교육계 직원 가운데 다양한 유럽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고, 둘째, 청소년이 자기개발, 장래 고용, 그리고 능동적 유럽시민권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기술과 능력을 취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 질적 양적으로 보다 나은 이동, ㉡ 3백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구성국가의 학교간 보다 나은 연대, ㉢ 외국어 학습 장려, ㉣ 혁신적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내용, 서비스, 교수법 및 실천방안의 개발, ㉤ 보다 나은 교원의 훈련, ㉥ 교육학적 접근 및 학교경영 개선의 지지 등을 그 운영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 학생 및 직원, 학교이동, 교원을 위한 훈련과정 등의 교환 등과 같은 이동, ㉧ 공동학습프로젝트를 위한 학교의 “코메니우스 학교 연대” 또는 학교교육에 책임있는 기관의 “코메니우스-레지오 연대”와 같은 연대, ㉨ 최상의 실천방안을 전파하고 증진하며, 경험을 교환하거나 새로운 과정 또는 과정 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다자간 프로젝트, ㉩ 교육개발, 좋은 실천방안 및 혁신의 전파, 연대 및 프로젝트의 지원, 그리고 수요분석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네트워크, ㉪ 수반조치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진다.³⁹³⁾

393) 이 활동 중 이동 및 연대 활동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예산의 80%를 계상하고 있다.

2)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은 과정 또는 자격의 연한을 불문하고 박사과정을 포함한 제3 수준의 공식적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이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프로그램에 의한다. 이 프로그램은 첫째, ‘유럽고등교육지구’(European Area of Higher Education)의 완성을 지원하고, 둘째, 혁신과정에서 고등교육 및 향상직업교육의 기여를 강화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 2012년까지 3백만명의 이동, ㉡ 고등교육기관 사이 그리고 고등교육기관과 기업 사이의 협동의 양, ㉢ 자격의 투명성 및 적합성, ㉣ 혁신적 실천방안 및 국가 사이의 교환, ㉤ 혁신적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내용, 서비스, 교수법 및 실천방안의 개발을 그 운영목표로 한다.

에라스무스프로그램은 ㉠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교원, 기타 직원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직원 이동, ㉡ 혁신, 경험 그리고 좋은 실천방안의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프로젝트, ㉢ 고등교육기관 콘소시엄이 운영하고 훈련 또는 학제간 영역을 대표하는 “에라스무스 주제 네트워크”(Erasmus thematic networks)와 같은 다자간 네트워크, ㉣ 수반조치 등 4가지 활동을 지원한다.

3)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

직업교육 및 훈련을 강조하는 이 프로그램은 첫째, 자기개발, 고용가능성, 그리고 유럽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 기술, 그리고 자격의 취득 및 이용에 참여하는 자를 지원하고, 둘째, 질과 혁신의 개선을 지원하며, 셋째, 직업교육 및 훈련, 그리고 이동의 매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매년 8만개의 기업에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직업교육

및 계속적 훈련을 위한 이동, ㉠ 다양한 활동가 사이의 협동의 양, ㉡ 혁신적 실천방안의 개발 및 국가 사이의 교환, ㉢ 비형식적이고 비공식적인 학습을 통하여 취득한 것을 포함한 자격 및 능력의 투명성과 인정, ㉣ 언어학습, ㉤ 혁신적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내용, 서비스, 교수법 및 실천방안의 개발을 그 운영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활동으로는 ㉦ 준비과정을 포함한 이동, ㉧ 상호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 ㉨ 국가적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혁신 교환을 통하여 또는 혁신적이고 좋은 실천방안의 개발을 통한 훈련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자간 프로젝트, ㉩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계된 특수문제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단체의 주제 네트워크, ㉪ 수반조치 등이 있다.³⁹⁴⁾

4) 그룬트비 프로그램

그룬트비(Grundvig) 프로그램은 모든 형태의 성인교육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유럽 노령인구의 교육적 도전에 응하고, 둘째, 지식 및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로를 성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매년 7천명 이상의 지원을 예상한 이동의 질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 협동(질과 양)을 개선하며, ㉨ 은혜를 입지 못하고 취약한 사람을 위한 대안을 지원하고 모색하며, ㉩ 혁신적 실천방안의 개발 및 국가 사이의 교환을 지원하고, ㉪ 혁신적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내용, 서비스, 교수법 및 실천방안의 개발을 지원하며, ㉫ 교육학적 접근 및 성인교육기관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운영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 적절한 준비, 감독 그리고 지원을 포함한 개인의 이동, ㉧ 상호이익을 가진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룬트비 학습 연대’(Grundvig learning partnership), ㉨ 혁신적이고 좋은 실천방안의 개

394) 이동과 연대 활동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의 예산 60% 이상을 계상하고 있다.

발 및 교환을 통한 성인교육시스템을 개선할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프로젝트, ㉔ 전문가 및 단체의 주제네트워크인 ‘그룬트비 네트워크’, ㉕ 수반조치 등과 같은 활동을 지원한다.³⁹⁵⁾

5) 횡단프로그램

횡단프로그램(Tranversal Programme)은 분야별 프로그램의 한계를 넘는 활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학습의 분야 중 4개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정책협조 및 혁신, 둘째, 언어학습의 증진, 셋째, 혁신적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내용, 서비스, 교수법 및 실천방안의 개발, 넷째, 당해 프로그램 또는 이전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된 활동 결과의 전파 및 이용, 그리고 좋은 실천방안의 교환 등 4가지 활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2 이상의 분야별 프로그램을 망라하는 영역에서 유럽적 협동을 증진하고, 구성국가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질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 프로그램은 ㉖ 리스본 과정, 교육 및 훈련 2010 작업프로그램(Education and Training 2010 Work Programme), 볼로냐 및 코펜하겐과정과 그 계승 과정의 내용에 있어서 유럽평생학습수준에 적합한 정책 개발 및 협동을 지원하고, ㉗ 목적과 목표 지향 과정을 감독하고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영역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교할만한 자료, 통계, 그리고 분석의 공급을 보장하며, ㉘ 언어학습을 증진하고 구성국가의 언어적 다양성을 지원하고, ㉙ 혁신적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내용, 서비스, 교수법 및 실천방안의 개발을 지원하며, ㉚ 프로그램의 결과를 광고, 전파, 그리고 고려하는 것을 보장하는 등 5가지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395) 이동 및 연대 활동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의 예산 55% 이상을 계상하고 있다.

6) 잔 모네 프로그램

잔 모네(Jean Monnet) 프로그램은 학문세계의 유럽적 통합을 목표로 유럽수준의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인 기관과 협회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통합연구의 분야에서 교육, 연구, 그리고 반영활동을 장려하고, 유럽통합 관련 문제와 유럽의 장래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절한 범위의 기관과 협회의 생존을 지원한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 제3국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이 프로그램의 예산 중 16% 이상을 계상하고, ㉡ 유럽적 이익을 목표로 계획된 기관³⁹⁶⁾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며, ㉢ 예산의 19% 이상을 계상한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 기타 유럽의 기관 및 협회에 운영교부금(operating subsidies)을 지급하는 등의 주요 활동을 보장한다.

제 5 절 유럽연합의 교육정책이 영국의 교육법제에 미친 영향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하여 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점차 국경 없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이다. 다양한 언어와 민족이 경제적 통합에 국한하지 않고 인적 통합을 위하여 유럽공동체에서 유럽연합으로 확대된지 15년이 지났다. 인

396) 여기에는 ‘유럽대학’(College of Europe), ‘플로랑스 유럽대학연구소’(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in Florence), ‘마스트리히트 유럽행정연구소’(Europ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Maastricht: ‘EIPA’), ‘트리어 유럽법연구소’(Academy of European Law in Trier), ‘미델파르트 유럽특수수요교육개발청’(European Agency for Development in Special Needs Education in Middelfart), ‘니스 국제유럽훈련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European Training in Nice)가 있고, 예산의 65% 이상을 보조금으로 계상한다.

적 통합의 수단을 모색하던 중 ‘교육’은 경제와 상호보완적 관련성이 있고, 교육문제를 해결하면 효과적으로 통합이 가능하게 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은 민족주의적 가치체계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 및 교육기관 사이의 협동, 그리고 그 주변에는 언어교육이 필수적이었다.

영국의 경우 2002년 교육법을 통하여 키 스테이지 1-4까지 정보통신과목을 기초과목으로 지정하고, 키 스테이지 3, 4에서 외국어를 기초과목 또는 개론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것은 1995년부터 시행된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영국은 일반국가직업자격과정 및 국가직업자격과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격검정과정은 블로냐과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3년에 도입된 자격검정구조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또한 고등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유럽연합이 구축하고 실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즉, 1992년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 집행되고 있다.

이미 1940년대부터 성인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고 있는 영국의 교육법제는 그룬트비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유럽연합과는 그 시간적 격차가 있다. 1988년의 교육개혁을 통하여 직업교육을 체계화한 영국은 유럽연합이 1995년 이후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계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은 인적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배려를 위한 프로그램을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영국은 1944년의 교육법을 통하여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열악한 지역의 공립학교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8년의 학교기준법을 통하여 ‘교육개혁특구’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다.

제 6 장 종합정리 및 결론

영국에서 교육 제공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이며, 이를 확고히 한 것은 1888년의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의 제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지방정부가 성립되어 이들에게 교육 제공의 책임을 맡기면서부터이다. 영국 지방자치의 특색은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통합되어 교육자치가 실시된다는 점이다. 각 지방은 해당 지역 주민의 교육 수요에 맞도록 교육기관을 편제하고 교육내용을 구성함으로써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물론 중앙정부도 각종 교육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였지만 교육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은 통제보다는 감독이며, 지방정부가 하는 일을 뒤집거나 앞서서 간섭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협동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한 브라이스(J. Bryce)의 의견에 입각하고 있는 듯하다.³⁹⁷⁾

영국의 교육정책은 정치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즉 정치적 이념이 서로 다른 노동당과 보수당이 각각 집권하면서 ‘국가 중심의 대중교육’ 대 ‘자율적 엘리트 교육’, ‘교육의 효율성’ 대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양축을 왕복하고 있다. 전후 영국교육제도의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된 1944년의 교육법은 의무교육학령을 확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지방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분권화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학교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지방정부마다 각기 고유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통일된 교육의 실시가 불가능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학교

397) Bryce Report, “Royal Commission on Secondary Education,” 1895, p. 257; 최봉섭, “영국의 학제개혁동향,” 3쪽, <<http://www.brcu.com/indexk.htm>>.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복지 증진을 목표로 ‘지역 간 교육 균형’을 위하여 노동당과 보수당은 1979년까지 지속된 ‘대타협’을 통하여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는 교육기관과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이를 보충하면서 교육형태나 학제는 유지하면서 1988년의 교육개혁법 및 1992년의 교육법을 통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학제 차이는 많이 감소되었다.

단위학교의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담당하는데 1986년의 교육법과 1988년의 교육개혁법에 의하여 학교경영주체가 된 이후 1997년의 교육법에서는 그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다. 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고, 국가교육과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학교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원의 임용과 선발에 관여한다.

1988년의 교육개혁법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생간, 학교간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통제강화, 그리고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도입하여 의무교육학령아동이 교육받아야 할 교과목, 교육내용, 연령별 성취 수준 및 평가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교육의 실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강력한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 교육체계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학습수준의 향상 및 사회적 일체성을 계속 강조하였다. 1998년의 학교기준법은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기준을 증대하고, 교육활동영역을 설정하며, 교육기준국에 의한 학교감사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학교는 그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지방교육청과 교육기준국에 의한 감사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위하여 공립

학교의 시설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육개혁특구를 설치하였다.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을 인식하여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학생이나 가족 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시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 교육법을 개정하게 된다. 이 법은 보육문제를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해결하려고 하였고, 지방교육청 및 학교에 새로운 재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학교책임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감사제도를 개혁한 2005년의 교육법은 자기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근거한 학교감사를 시행하였다. 이와 아울러 ‘교원교육훈령청’을 ‘학교 교육훈련 및 개발청’으로 그 구조를 개혁하여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 및 복지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의무학령학생의 학부모에 대하여 의무교육학령 아동의 강제출석을 의무화하였다.

노동당 정권에 의한 교육개혁은 두 가지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 양상은 1997년부터 교육시스템의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원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사기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다. 두 번째 양상은 진행 중인 기준의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이 있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경쟁력은 강화되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 ‘교육 및 감사법’을 제정하여 학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원하는 것을 어디서든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으며, 학부모의 선택이 가능하고,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학습 프로그램이 마련된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변화시켰다.

영국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통제’와 ‘자율’이라는 양축에서 교육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특히 국가의 발전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만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오면서 각종 제도를 완비하여 왔

제 6 장 종합정리 및 결론

다. 매년 새로운 교육제도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교육제도를 정비해 가고 있는 영국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참 고 문 헌

- 강영혜, “영국의 교육개혁과 교육입법,” 교육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3).
- 이남국 외 1인,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2001).
- 이상묵, “영국 교육 제도의 관점에서 본 영국인의 정체성,” 영미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영미연구소) 제9집 (2003).
- 조명래, “영국의 중앙-지방정부관계,” 지방자치(현대사회연구소) 제103호, 1997. 4.
- 최봉섭, “영국의 학제개혁동향,” <<http://www.brcu.com/indexk.htm>>.
- Brock, Colin (*et al.*)(*ed.*), Education in a Single Europe (Routledge, 2000).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Excellence in Schools, Cm 3681 (TSO, 1997).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Schools Causing Concern (TSO, 2005).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s For All, Cm 6677 (TSO, 2006).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Further Education: Raising Skills, Improving Chances, Cm 6768 (TSO, 2006).
- Ford, John (*et al.*), Education Law and Practice (Jordans, 2005).
- Fowler, John (*et al.*), Digest of the Education Act 2005 (NFER, 2005).
- Harris, Neville, Law, and Education: Regulation, Consumerism, and the Education System (Sweet and Maxwell, 1993).

참 고 문 헌

Harris, Neville, Education, Law and Diversity(Hart Publishing, 2007).

Hofman, R.H. (*et al.*)(*ed.*), Institutional Context of Education Systems in Europe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

Parliament, House of Lords: Reform, Cm 7027 (TSO, 2007).

Ruff, Anne, Education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Butterworth, 2002).

Secretary of State for School Security, Opportunity for All: Tackl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Cm 4445 (TSO, 1999).

平尾節子, “イングランドの外国語教育・国家戦略 - The National Languages Strategy for Englandの視点から,” 言語と文化(愛知大学) No. 10, 2004. 1.